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91호
2017. 1. 19.(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3526호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제3527호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7
제3528호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8
제3529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29
제353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1
제353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5
제3532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4
제3533호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75
제3534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6
제3535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02
제3536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2
제3537호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13
제353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6
제3539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17
제3540호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35
제354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138

◆ 고 시

제2017-15호 토지세목(변경) 고시	145
제2017-16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고시	150
제2017-17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180
제2017-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12
제2017-19호 천마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17
제2017-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228

◆ 공 고

제2017-8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234
제2017-81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234
제2017-82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235

제2017-88호 남산2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236
제2017-10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237

◆ 구 고 시

제2017-5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중구)	239
제2017-6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용산구)	246
제2017-7호 동자동구역 및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산구)	248
제2017-1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성북구)	253
제2017-7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마포구)	259

◆ 구 공 고

제2017-37호 도시관리계획(군자역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광진구)	260
제2017-5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은평구) ...	261
제2017-48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마포구)	262
제2017-55호 도시계획시설(철도:공덕정거장)사업 공사완료 공고(마포구)	263
제2017-97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강남구)	264
제2017-99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올림픽공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정정)(송파구)	264

◆ 사업소고시

제2017-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66
제2017-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66

◆ 사업소공고

제2017-1호 소방시설관리업등록 공고(구로소방서)	267
------------------------------------	-----

◆ 기 타

제2017-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68
--	-----

자 치 법 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3526호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인권센터에”를 “인권부서의 장에게”로, “사람을”을 “사람 또는 단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시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한한”을 “한정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을)”을 “(우편 및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로, “인권센터의 장에게(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를 “인권부서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되, 그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중전의 제3항) 중 “구술로”를 “방문하여 상담을”로,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의 구술”을 “신청”으로, “작성한 후”를 “작성하고 접수담당자가”로, “확인하고”를 “확인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민원 관련 부서에 접수된 민원이 인권침해사항에 해당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조례 제18조에 및 제20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이라 한다)에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중 “신청인은”을 “신청인들은”으로, “수”를 “수 있고, 신청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인권부서의 장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접수증명원 등의 송달)”을 “(접수증명원 등의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센터장”을 “인권부서의 장”으로,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접수증명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센터장”을 “인권부서의 장”으로, “접수 후”를 “접수일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후”를 “날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장”을 “인권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신청의 각하·기각 및 조사중 해결)”을 “(신청의 기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관은 접수한 신청”을 “구제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그”로, “해당할 경우”를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를 “기각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구제위원회는 신청을 기각한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권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권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조사 중 해결) 상임 보호관은 조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이를 명시한 후 사건을 종결하고 구제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호관이 조사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를 “구제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의결하기 전까지 문서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호관이”를 “상임 보호관이”로, “서면 취하서를 제출함이 없이 구두 또는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을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신청 취하의사”를 “취하 의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처리기간) ① 신청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상임 보호관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연장 사실과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조사결과와 통지)”를 “(사건의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상임 보호관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복수로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신청으로 접수된 사건을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다.
- ② 상임 보호관이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요구한다.

제11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상임 보호관은 신청인, 피해자(제3자 신청의 경우), 피신청인,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따라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으나, 간단한 사실 확인 외의 구체적 진술은 그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근거자료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상임 보호관은 규칙 제9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제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하 또는 조사 중 해결의 경우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다.
- ⑤ 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관한 자료를 입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⑥ 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인력(이하 “보호관 등”이라 한다)은 직무수행에 있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⑦ 보호관 등은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신청인 등이 절차진행 및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조사중지) ① 상임 보호관은 신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구제위원회의 의결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된 신청사건은 사건종결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건처리결과와 통지) ① 구제위원회의 의결로써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할 경우에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시정권고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신청인 등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한 문서가 3회 이상 반송(전자우편을 수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될 경우, 이를 기재한 사건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조사기록 및 이관) ① 상임 보호관은 조사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사건별로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자신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제출 서류를 반환하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일체는 사건 종결 후 인권부서에 이관하여 보존 관리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인권부서의 장은 신청이 기각되거나 시정권고가 이뤄진 경우 신청인, 피해자 및 피신청인에게 의결내용과 함께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피해자 및 피신청인이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권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내용을 등재하고, 당해 사건을 담당하지 않은 상임 보호관이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구제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인권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구제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서

(총2면중 1면)

접수일	년	월	일	접수번호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				
이 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및 이메일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				
이 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및 이메일				
신청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				
이 름	소 속			
연락처				
피해자가 입은 인권의 침해 또는 차별 내용에 관하여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기관 및 사건번호 () · 서울특별시(인권담당관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진정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누구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총2면중 2면)

피해자가 입은 인권의 침해 또는 차별 내용			
일 시		장 소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_____) ☐ 없음			
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_____년 월 일			
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서는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항목에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2호서식]

대표자 선정 신고서

(총2면중 1면)

(접수번호 :)						
대 표 자	성 명	①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성 명	①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성 명	①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위 사람을 인권침해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서울특별시장						
붙임 : 신청인 명단 1부.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신청인 명단(대표자 선정 동의서)

(총2면중 2면)

일련 번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서명날인 또는 지장	사건과의 관 계

※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담당관 및 시민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 접수증명원

접수번호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접 수 일		년 월 일
접 수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133-6378~9 팩스 02-2133-0797 전자우편 sangdam@seoul.g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인권담당관

210mm×148mm(보존용지(2종) 54g/㎡)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 접수대상

[illegible]297 mm×210 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5호서식]

보존 연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
년	

사 건 번 호 (접수번호)		사건명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성별		전화번호	
	주 소					
처 리	처 리 사 항	처 리 일	내 용		비 고	
	종 결 일					

종결 확인	시 민 인 권 보 호 관		
	담 당	팀 장	과 장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신청서 보완요구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보완할 신청서 내용						
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 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결 정 통 지 서			
의 안 번 호		사 건 번 호	
사건명			
결정통지 대상자	☐ 신청인 ☐ 조사대상기관장		
	성 명	주 소	
결정내용	☐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조사중해결 ☐ 시정권고결정		
결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0조와 제23조, 동 조례시행 규칙 제7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신청 취하서

사 건 번 호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 호 수 신 제 목 자료제출요구	
사건번호(접수번호)	
사 건 명	
자료 제출 대상	기관(부서)또는 시설·단체명 주 소
자료제출의 이 유	
제출해야 할 자료	
제출해야할 기간	. . 까지
제출해야할 장소	
비 고	
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사건 [사건번호 (접수번호 :)]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니
서울특별시청 내 인권담당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 자료
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1.
- 2.
- 3.

출석하실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전화번호 :)에게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위와 직명)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직) (성명)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답 :
문 :
답 :

(후면)

문 : 추가할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은 문답내용을 진술인에게 열람토록 하거나 또는 읽어 들려주었던바 진술한 내용과 틀림이 없다고 확인함으로 간인 후 서명(날인)함.

20 년 월 일

진술자	직	성명	(인)
시민인권보호관	직	성명	(인)
임회자	직	성명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질 문 서

제 목		
질 문 사 항 20 년 월 일 귀하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성명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사 항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귀하 기관명 : 직 성명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의안번호 제 호]

사 건 조 사 결 과 서			
사건제목 (사건번호)			
신 청 인			
피 해 자			
피신청인		접수일	

1. 신청요지(신명태명조 13포인트, 굵게)
 본문(신명태명조 13포인트)
2. 조사방법과 경과
 가. 날짜 : 조사방법과 경과(신명태명조 13포인트)
3. 쟁점
4. 관련 규정
5. 당사자 등의 주장
6. 인정사실 및 판단
 - i) 단일 쟁점일 경우
 - 가. 인정사실
 - 나. 판단
 - ii) 복합 쟁점일 경우
 - 가. 쟁점
 - 1) 인정사실
 - 2) 판단
7. 전문가 의견
8. 결론
 - 가. 적용법규
 - 나. 이유
 - 다. 주문

<붙임>

조사자 시민인권보호관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조 사 기 록 목 록

[illegible]

※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작성되는 목록은 작성자(제출자) 서명을 생략함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15호서식]

조사기록관리대장

연 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접수번호)	신청인	성별	각하 또는 기각 결정				시정권고 결정			담당 시민인권 보호관	비 고
					일 자	처 리 내 용	이의신청 일 자	이의신청 결과 처 리 내 용	일 자	처 리 내 용	이의신청 결과 처 리 내 용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16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							
이의 신청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통지받은 날 짜		년 월 일					
통지받은 사 항		☐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이의신청 내 용		※ 필요시 별지작성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17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대장

[illegible]297 mm×210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18호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의안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이의신청인			
결정내용			
결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존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청의 기각, 조사중 해결, 신청의 취하 등 사건처리절차를 보완함(안 제7조~제9조)
- 나. 신청의 처리기간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 다. 사건 조사에 따른 상임 보호관의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구제위원회 상정 의무를 규정(안 제11조)
- 라. 신청인 소재 불명 등의 경우 조사중지 규정 신설(제12조)
- 마. 조사기록에 대한 보존관리 및 이관절차 규정(제14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3527호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영상물심의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촉 위원은 영상물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디자인심의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촉 위원은 디자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영상물(또는 디자인)심의소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 홍보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전검토제 실시와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구성 위원 수를 확대(안 제6조 제2항, 안 제7조 제2항)

나. 소위원회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 당연직 위원을 홍보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안 제6조 제2항~제3항, 안 제7조 제2항~제3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3528호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2조제2항 중 “최초년도”를 “최초 연도”로, “다음년도”를 “다음 연도”로,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업성과의 세부평가 및 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7명이내”를 “7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오류 및 일본 어투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수정하여 시민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책임운영기관 평가를 시 성과관리체계로 편입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수정 (안 제3조, 제5조, 제6조)
 - 나. 띄어쓰기, 일본어투 표현 등을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수정 (안 제1조, 제2조, 제5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3529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별표]

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제5조 관련)

☐ 시민소통기획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민봉사 담당관	1. 여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 신청접수 나.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다. 여권 등의 교부 라.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마. 여권의 반납명령에 따른 직접 회수 바. 수수료 징수	○ 「여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구청장
	2. 수수료 금액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직접사용	○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청장

☐ 평생교육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청 소 년 담당관	1.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관계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허가(목적·명칭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외)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다.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구청장

☐ 경제진흥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융합 경제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 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직권말소 마.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사.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체납처분 포함) 아.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 실시 자. 법 제41조 1항 제7호·제9호 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제6호의 자에 대한 같은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 같은법 제30조제2항 ○ 같은법 제31조제1항 ○ 같은법 제31조제2항 ○ 같은법 제33조제1항 ○ 같은법 제33조제2항 ○ 같은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 같은법 제36조 ○ 같은법 제41조제1항제7호, 제9호 및 같은조 제2항제4호, 제6호 및 같은조 제3항	구청장
민생경제과	1.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가.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다.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 가목·나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물가안정예관한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 ○ 「물가안정예관한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제4호·제5호)	구청장

주 관 부 서	사 무 명	근거 법령	수 입 기 관
민생경제과	라.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품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소비자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구청장
	2. 수입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원산지 표시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한 검사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제3호)	
	나.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 제기의 접수 및 통보	○ 「대외무역법」 제59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제5호)	
	다.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제4호)	구청장
	3. 양곡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여양곡의 상환유예	○ 「양곡관리법」 (’05.3.31, 법7432호) 부칙 제4조	
	나. 교환양곡의 납부기한유예 및 양곡대금의 반환 처분		
	다. 교환양곡 및 대여양곡의 수납		구청장
	4. 농수산물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	
	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가공시설 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점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주 관 부 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생경제과	다.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라. 법 제114조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마.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5.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 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라.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마.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바.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사.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조제2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4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규정 제4조제8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규정 제4조제9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규정 제4조제10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규정 제4조제11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규정 제4조제12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생경제과	아.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자.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차.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카.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타.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나.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다. 의견 청구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관한 사무 중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사항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4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5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7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9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8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제20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구청장 구청장

□ 복지본부

주 관 부 서	사 무 명	근거 법령	수 입 기 관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 다. 감사의 추천 라.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2.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한 사무 가. 지역사회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나. 종교·민간단체 등과의 결연·후원 추진 다. 북한이탈주민의 무연고 사망 사후처리	○ 같은 법 제18조 제5항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같은 법 제18조 제6항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같은 법 제24조(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구청장

☐ 도시교통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버스정책과	1. 차령의 연장 (차령연장에 관한 고시는 제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제31호·제53호·제54호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청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6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버스정책과 주차계획과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관할구역내 시내버스 보유차고 설치기준의 적합성 등 조사·확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구청장
택시물류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6조·제17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택시물류과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접수 및 자격심사		
	2.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운송부대시설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 한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	구청장
	3.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구청장
	4.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이 규칙에 의하여 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재위임 받은 사무에 대한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같은조 같은항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한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및 신고의 수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	구청장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9호)	구청장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	구청장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4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제4호)	구청장
	9.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처분 및 그 징수 (다만,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6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83조 위반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한하고,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7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구청장
	1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 운전 신고수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구청장
	12.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구청장
	12-2.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대행자 및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구청장
	12-3. 내압용기 검사 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14 제3항)	구청장
	13.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구청장
	13-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의2)	구청장
	14.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14-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의3호)	구청장
	15.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 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 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15-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16. 택시미터의 수리에 관한 검정업무 중 검정신청 접수·검정 의뢰 등 검정과 관련한 모든 제반사무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구청장
	17.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의 실시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품질시험 소장
	18. 택시미터 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과 이에 대한 개선명령·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구청장
	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허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나. 변경허가	○ 같은 법 제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다. 허가기준에 관한 항의 신고	○ 같은 법 제3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라.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호)	
	마. 운송가맹점으로 상호변경 신고	○ 같은 법 제11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바.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구청장
	아. 상속의 신고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자.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명령	○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차.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1호)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타. 허가취소 청문	○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3호)	
	파.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하. 화물운송종사 자격에 대한 청문	○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3호)	
	2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호)	
	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 같은 법 제2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다.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7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라.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마. 운송가맹점으로 상호변경 신고 바. 개선명령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아. 상속의 신고 자.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차. 허가취소 청문 21.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일반택시·운송사업·화물) 가.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취소 및 청문	○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호)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호)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2호)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3호) ○ 「교통안전법」 제54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구청장

☐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다.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 같은 규칙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 같은 규칙 제1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문화예술과	1. 출판문화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그 밖에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다.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같은 규칙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같은 규칙 제1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구청장409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역사 문화재과	1. 국가지정문화재의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단,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제외)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구청장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정책과	1.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나.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허가 및 취소 다. 개선부담금의 강제 징수 라. 개선부담금의 조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8조 제1항제3호 ○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28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녹색에너지과	1. 석유판매업(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 제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관한 품질검사 및 공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제2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대기관리과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 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다. 개선명령 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마.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바.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사. 과징금의 부과·징수 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자.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차. 보고명령 및 검사 등 카. 허가의 취소나 폐쇄명령 등의 청문 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82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94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대기관리과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제4항(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구청장
	3.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44조 제7항 및 법 제45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다. 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라. 법 제8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마.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4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다목) ○ 같은 법 제44조 제7항 및 제45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라목) ○ 같은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마목) ○ 같은 법 제8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바목) ○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5호)	구청장
	4.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사무 중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을 제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5호)	구청장
	5.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 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49조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시설과)	1.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다. 표지판의 설치 라.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마. 자료제출의 요구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제17조)	구청장
자원순환과	1.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사목)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나. 반응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지급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가. 설치승인(신고수리포함, 이하 같음) 및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등 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4.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 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제31조 제4항,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다목)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49조	구청장 구청장
생활환경과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징수 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마.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관시설과 재활용 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명령 사.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차.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카. 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 ○ 같은 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6호) ○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 ○ 같은 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8호) ○ 같은 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9호) ○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0호) ○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1호)	
	2.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 명령	○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9조	

☐ 행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치행정과	1.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중 구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구청장
	2.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를 위한 다음의 사무 가.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 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구청장
	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구청장
	4.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	○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1항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금고의 정관변경 인가	○ 같은 법 제1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다. 금고의 합병인가	○ 같은 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라. 금고에 대한 명령	○ 같은 법 제74조 제3항 내지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마. 청문	○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 재 무 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산관리과	1. 국유의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관 리	○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나. 대 부	○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다. 매 각	○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라. 등기·등록	○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마. 은닉재산 등의 신고접수	○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및 제4항)	
	바. 은닉무주재산 환수	○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호)	

☐ 관광체육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진흥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접수 및 시 전달 나. 서울시 소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및 시 전달 다. 자치구 소관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법인 명칭의 변경, 관할 시·도 및 자치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기본재산 관련사항(처분 및 편입 또는 증액)의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이외의 정관변경 사항 라. 법인관련 지도·감독 - 설립후 재산이전 신고 접수 - 법인등기부등본 신고 접수 -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30조제1항) ○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30조제1항) ○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 「민법」 제37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구청장

□ 시민건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의료 정책과	1. 「의료기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무	○ 「의료기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구청장
	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6조제1항	
	나.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항	
	다. 폐업·휴업·재개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4조 및 제16조제4항	
	라. 보고명령·출입·검사·질문 및 수거	○ 같은 법 제32조	
	마. 검사명령	○ 같은 법 제33조	
	바. 회수·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합·봉인 등의 처분	○ 같은 법 제34조	
	사.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과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아. 신고수리서 갱신	○ 같은 법 제49조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6조	
	2.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사무	○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구청장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 업자 또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나. 승인 결과 서울시로 통보	○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제3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생활보건과	1.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나.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구청장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술심사 담당관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 및 그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구청장

☐ 안전총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설안전과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구청장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다.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호	
	라.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마.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바. 시정명령·지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사.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아.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의2호	
	자.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차.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호	
	카. 청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하.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의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3호	
도로계획과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승인(도로 및 구거에 한함) 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도로의 사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 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허가 나.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허가 3.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도로부지에 한한다)	○ 「국유재산법」 제4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 「국유재산법」 제3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 같은 법 제35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 주택건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기획과	1.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축사업신고수리·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 수리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 「건축사법」 제23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4호) ○ 같은 법 제28조·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6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라. 보고 및 검사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외) 바. 건축사사망신고 수리 사. 처분내용의 통지 2. 「항공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항공 장애등 및 주간장애 표시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비행장 표점으로 부터 반지름 15km외의 지역에 한함) 3. 승강기 검사업무 가. 승강기 검사의 연기	○ 같은 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7호) ○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8호) ○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10호) ○ 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 「항공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구청장 구청장
공동주택과	1.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호)	구청장

□ 푸른도시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연생태과	1. 조림비 및 임도시설비의 반환 조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구청장
산지방재과	1. 사망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사방지의 지정	○ 「사방사업법」 제4조	
	나.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의 시행	○ 「사방사업법」 제6조	
	다.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 「사방사업법」 제20조	
	라. 사방사업의 시행	○ 「사방사업법」 제5조	
	마.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 「사방사업법」 제7조의 2	
	바. 공무원의 조사 등	○ 「사방사업법」 제9조	
	사. 손실보상 및 보상금의 결정	○ 「사방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	
	아. 수익의 귀속	○ 「사방사업법」 제17조	
	자. 공부의 비치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물 재 생 시 설 과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호)	
물 재 생 시 설 과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변경신고 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같은 법 제33조 제1항·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	
	다. 법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3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및 같은조 제4항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마.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의 회색 처리에 관한 인정 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아. 법 제41조에 따른 부과금 (폐수종말 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자.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차.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카. 법 제44조(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타.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에 보고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 파.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하.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거.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너.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조업 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더. 법 제68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보고명령·자료제출 요구·출입·채취·검사	○ 같은 법 제37조 제1항·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5호) ○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8호)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9호) ○ 같은 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0호) ○ 같은 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1호) ○ 같은 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2호) ○ 같은 법 제44조·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3호) ○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4호) ○ 같은 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5호) ○ 같은 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6호) ○ 같은 법 제6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7호) ○ 같은 법 제6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8호) ○ 같은 법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3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러.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 의뢰 머. 법 제72조 각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버.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서.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어.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저.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접수 처.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커.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터. 배출시설의 인정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사무 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의 접수 나. 이행여부의 확인 다. 이행명령 라. 사업장 등에의 출입·조사	○ 같은 법 제6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4호) ○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5호) ○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81조 제1항 제2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81조 제1항 제28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9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1조 제1항 제30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1조 제1항 제3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제81조 제1항 제32호)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제1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제15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제15조의2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마. 자료 및 조사결과 의 공표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3.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 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49조	구청장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나. 하천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 다.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라.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마. 과오납금의 반환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부과한 것에 한함) 바.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 「하천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가목)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나목)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다목) ○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라목) ○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바목) ○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사목)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 본부장)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 본부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천관리과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아. 하천관리원의 임명 자. 보고 및 출입 등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차.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카. 원상회복명령, 원상 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타. 허가수수료의 징수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하는 사항에 한함) 파.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2.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폐천부지 등의 교환 나. 폐천부지 등의 양여	○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아목) ○ 같은 법 제72조 ○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타목) ○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차목) ○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마목) ○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카목) ○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파목) ○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하목, 거목) ○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2호)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 방 과	1.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소방서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 소방용 기계·기구의 수거·폐기 또는 교체명령에 관한 사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소방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임 근거 법제명 변경하고 부서간 기능조정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및 위임사무명 정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위임 법제명 변경
나. 부서간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주관부서를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위임사무명 정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353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3항의 도시브랜드담당관 및 뉴미디어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5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 14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14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악 활성화 및 국악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제8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의 관리·운영

제14조제10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역사박물관·시립미술관 운영의 지도·감독

제14조제1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제20호로 하며, 제18호 및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9.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제5항제15호 중 “운영에”를 “지도·감독에”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녹색기술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0항제8호 및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제17조제4항제8호 중 “위탁 관리·개발에”를 “위탁 관리에”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민건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보건연구관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식품안전과장·생활보건과장·동물보호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20조의2제5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관한 사항

제23조제5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서울로 7017 운영에 관한 사항

제67조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67조제7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본부 공사장 품질관리 업무 총괄

제68조제4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84조제2항 중 “광나루·잠실·잠원·반포·이촌·양화·망원·난지 및 강서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 주사·지방녹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를 “반포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광나루·잠실·잠원·이촌·양화·망원·난지 및 강서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녹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로 한다.

제1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동물복지1과장은 식물원, 어린이놀이터를 잇는 선 남쪽에 속하는 동물사를 관리하며, 동물복지2과장은 식물원, 어린이놀이터를 잇는 선 북쪽에 속하는 동물사를 관리한다.

제1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동물복지1과장 및 동물복지2과장은 제3항에 따른 각 소관 관리 동물사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 동물사의 동물복지 관련 업무 총괄
2. 관리 동물의 사육·증식 및 관람에 관한 사항
3. 관리 동물의 보육·순치에 관한 사항
4. 관리 동물사의 운영관리
5. 관리 동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리 동물의 탈출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
7. 관리 동물사 내 관람객 질서유지 관리
8. 해당분야 (준)공무직 관리

제121조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야생동물 증식 및 보전사업
2. 종보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서식지 조사·연구
4. 증식된 개체의 복원에 대한 연구
5. 동물의 임상진료 및 병력관리
6. 동물의 임상병리검사 및 시험
7. 동물의 방역 및 예방접종
8. 폐사동물 부검 및 처리
9. 야생조수 2차 진료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수입·교환 등으로 인한 신규 동물 건강관리
11. 다른 기관 동물진료 의뢰에 관한 사항
12. 해당분야 (준)공무직 관리

제123조제1항 중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를 “서울숲공원지원과”로 하고, “서울숲공원관리사무 소장”을 “서울숲공원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장”을 “서울숲공원지원과장”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원 민간위탁 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공원 민간위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원 민간위탁 지도·감독·평가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의 보호
5. 공원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7. 각종 공원사업의 설계·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8.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위탁사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원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127조제1항 중 “환경보전과 및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를 두고,”를 “환경보전과·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및 서울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를 두고,”로 하고,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공원여과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를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서울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공원여과과장 및 서울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서울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공원시설의 위탁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3. 공원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의 보호
5. 공원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7. 각종 공원사업의 설계·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8.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0. 상용·일용인부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업소 부서 신설 및 부서간 업무 조정 등 기구조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가. 개장 예정 서울문화비축기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내 서울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를 신설
 - 나. 지역보건의료 행정계획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의 역할 성격을 고려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행정·기술 복수직렬 지정
 - 다. 행정환경과 수요변화를 고려한 부서(기관) 간 소관 업무 조정사항 등 반영

◆ 서울특별시규칙 제353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5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여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같은 표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계	17,521	4,052	300	7,839	5,180	150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9,772	3,888	294	401	5,039	150
-------	-------	-------	-----	-----	-------	-----

같은 표 4급 소계란, 서기관란, 기술서기관란,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소계	226	136	16	7	63	4
서기관	89	67	6	6	9	1
기술서기관	56	19			37	
서기관또는 기술서기관	68	50			15	3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녹지란, 수의란, 의무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행정또는공업란, 행정·녹지또는시설란, 보건또는보건연구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244	778	44	53	341	28
행정	545	367	42	22	91	23

공업	56	28			27	1
녹지	22	13			9	
수의	5	4			1	
의무	62	3		4	55	

시설	174	103			70	1
방송통신	24	14		1	9	

행정또는공업	14	13			1	
--------	----	----	--	--	---	--

행정·녹지 또는시설	2	1			1	
---------------	---	---	--	--	---	--

보건또는 보건연구관	4			4		
---------------	---	--	--	---	--	--

같은 표 5급 직렬란 중 농업또는수의란 다음에 환경또는환경연구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환경또는 환경연구관	1			1		
---------------	---	--	--	---	--	--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사서란, 공업란, 녹지란, 보건진료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위생란, 시설관리란, 행정또는보건란, 행정또는환경란,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 방재안전또는시설란, 환경또는환경연구사란, 보건또는보건연구사란, 토목운영란, 통신운영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105	1,579	90	102	1,254	80
행정	1,127	721	68	39	246	53

사회복지	17	14			3	
사서	15			6	9	

공업	322	96	6	4	214	2
----	-----	----	---	---	-----	---

녹지	56	28			28	
----	----	----	--	--	----	--

보건진료	18	3			15	
------	----	---	--	--	----	--

시설	493	252	1	2	221	17
방송통신	58	29	2	3	24	
위생	18	11		1	6	

시설관리	34	5			29	
행정또는보건	10	4			6	
행정또는환경	3	2			1	
행정또는 학예연구사	24	15			9	
방재안전 또는시설	16	14			2	
환경또는 환경연구사	1			1		
보건또는 보건연구사	2			2		
토목운영	2	1			1	
통신운영	18	5	1	4	8	
전기운영	53			1	52	
기계운영	82				82	
사무운영	16	5	1		9	1

같은 표 6급 직렬란 중 시설란 다음에 방재안전란을, 보건또는환경란 다음에 환경또는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재안전	1	1				
------	---	---	--	--	--	--

환경또는시설	1	1				
--------	---	---	--	--	--	--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전산란, 방호란, 공업란, 녹지란, 수의란, 환경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행정또는녹지란,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 방재안전또는시설란, 토목운영란, 건축운영란, 통신운영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농림운영란,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090	1,078	87	145	1,744	36
행정	1,104	538	61	57	423	25

전산	110	66	2	8	33	1
----	-----	----	---	---	----	---

방호	29	6	2	4	17	
공업	384	27	5	12	338	2

녹지	72	13		2	57	
수의	4	1			3	

환경	37	5		19	13	
시설	448	158	1	4	279	6
방송통신	55	23	3	12	17	

행정또는녹지	8	2			6	
--------	---	---	--	--	---	--

행정또는 학예연구사	18	4			14	
---------------	----	---	--	--	----	--

방재안전 또는시설	16	13			3	
토목운영	3				3	
건축운영	2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0	3			57	
기계운영	91	5	1		85	
농림운영	3				3	
사무운영	79	6	2	1	70	

같은 표 7급 직렬란 중 공업또는시설란 다음에 공업또는방송통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업또는 방송통신	1				1	
--------------	---	--	--	--	---	--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전산란, 방호란, 공업란, 녹지란, 환경란, 위생란, 간호조무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토목운영란, 건축운영란, 통신운영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762	236	48	84	1,393	1
행정	217	40	15	15	147	
전산	35	14		6	15	

방호	104	31	6	5	62	
공업	68	8	1	3	56	
녹지	14				14	

환경	26	3		5	18	
----	----	---	--	---	----	--

위생	34	9	1	5	19	
----	----	---	---	---	----	--

간호조무	13				13	
시설관리	162	23			139	
운전	125	23	3	15	84	

토목운영	6	1			5	
건축운영	5	1			4	
통신운영	16	6		2	8	
전기운영	113	2	1	1	109	
기계운영	258	3	2	1	252	

사무운영	186	50	13	17	105	1
------	-----	----	----	----	-----	---

같은 표 9급 소계란, 사서란, 전기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186	7	4	4	171	
-------	-----	---	---	---	-----	--

사서	6				6	
----	---	--	--	--	---	--

전기운영	26	1			25	
------	----	---	--	--	----	--

같은 표 연구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직 계	338	11		186	141	
-------	-----	----	--	-----	-----	--

같은 표 연구사 소계란, 보건연구란, 환경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사 소계	285	10		154	121	
--------	-----	----	--	-----	-----	--

보건연구	102			94	8	
------	-----	--	--	----	---	--

환경연구	71			56	15	
------	----	--	--	----	----	--

같은 표 소방공무원 계란, 소방경란, 소방위란, 소방장란, 소방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 계	6,865	128		6,737		
---------	-------	-----	--	-------	--	--

소방경	378	21		357		
-----	-----	----	--	-----	--	--

소방위	345	33		312		
-----	-----	----	--	-----	--	--

소방장	723	35		688		
-----	-----	----	--	-----	--	--

소방사	3,631	8		3,623		
-----	-------	---	--	-------	--	--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15			1	14	
일반직 계	15			1	14	
8급 소계	1				1	
간호	1				1	
9급 소계	14			1	13	
행정	9				9	
공업	1				1	
시설	3				3	
방송통신	1			1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행정수요 증가 및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정원을 17,471명에서 17,521명으로 50명 증원하고, 인력 재배치를 위한 직급조정 실시
2. 주요내용
 - 가. 감염병 관리기능 및 소방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총 정원 50명 증원(일반직 +1, 연구직 +4, 소방공무원 +45)
 - 나.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한 직급·직렬 조정 및 관리기관간 정원 이체
 - 실무사무관 직위 확대 지정에 따른 정원 조정
 - '16년도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 전직에 따른 정원 조정
 - 지휘체계 확립 및 책임성 향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직급 조정 등

◆ 서울특별시규칙 제3532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이하 “지역개발기금”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제6조제1항제2호”를 “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로, “지역개발기금을”을 “기금을”로,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자”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자가 지역개발기금”을 “시장이 기금”으로, “각호”를 “각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관리자가”를 “시장이”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개발채권”을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운용방식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기금 용자에 관한 법적근거를 조례 제4조로 명시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안 제2조, 제3조)

나.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 조례로 이관하고 규칙에서 삭제(안 제7조)

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매출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례 제8조로 명시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안 제8조)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관리자 규정 삭제(안 제20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3533호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19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료수집

제2조(자료구입절차) ①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고 한다)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5. 평가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6. 구입대상과 자료가격의 최종심의

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려면 그 사항을 일간지 또는 서울시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매도신청)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1. 자료매도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 자료 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자료사진 1매(또는 디지털 파일)
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 1부
5.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6.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 할 수 있다.

1.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공동 소장자료로 판단될 때
4. 구입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4조(경매, 현지구입 등 절차) 제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3. 평가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4.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5조(현지조사) ① 시장은 개별 박물관 및 건립 중인 박물관의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국내외 현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 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구입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기증)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을 받는 경우 자료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증 신청 자료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자료기탁)**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자료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기탁 신청 자료가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④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⑤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자료를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자료 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반환받지 않을 경우 기탁자에게 반환받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수집실무위원회 및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 제9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 합의로 심의·의결한다.
- ③ 의결서 작성·관리 등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개별 박물관의 경우 자료관리관이,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 등의 평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 ② 평가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자료평가서 작성·관리 등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개별 박물관의 경우 자료관리관이,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장 자료의 관리

제1절 자료의 관리

- 제11조(분납자료관리관 지정 등)** 시장은 개별 박물관에 분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② 분임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출납공무원은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에 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자료출납) ① 자료관리관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자료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수집한 자료를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 또는 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자료관리관 및 자료출납공무원의 부재 중 자료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 하에 출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관리관은 사후에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박물관 소유의 자료 외에 대여·이관·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자료의 경우에도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의 보존환경을 점검하고 필요시 소독 등의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자료가 외부로부터 박물관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에는 방충, 방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자료관리관 등의 재정보증)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5조(자료의 수리·복원) ①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를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 수리·복원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자료 수리·복원계획서에는 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부분과 그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수리·복원 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에서 수리 및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리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인수·인계) 자료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자료를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는 자료대장에 등록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수장고

제17조(수장고 출입제한) ①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자료관리관이나 자료출납공무원 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
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에 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④ 자료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자료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자료의 확인 및 일시보관)** ① 자료관리관은 수장고에 반입·반출되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입이나 기증의 심의·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자료보관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 ② 자료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보관의뢰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료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9조(수장고 열쇠관리)** ①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제작·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시장과 자료관리관이 연대 봉인 후 비상용으로 시장이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자료출납시 사용하기 위해 자료관리관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개폐가 열쇠가 아닌 경우에는 시장이 열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 ② 자료관리관은 열쇠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13호서식에 따라 수장고 열쇠출납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자료의 대여

- 제20조(대여의 대상기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소장자료를 대여해 줄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공립 및 사립 과학관
3.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등

- 제21조(대여신청 등)** ① 소장자료를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여 기관
2. 대여 자료의 명칭 및 목록
3. 대여 목적
4. 대여 자료의 보관장소 및 전시장소의 시설 현황

- ② 시장은 대여를 허가하는 경우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절 자료의 열람

- 제22조(열람허가)** ① 시장은 교육·학술·공무상의 목적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장 자료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열람을 허가하는 경우 자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열람시간 등을 열람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열람허가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열람허가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관리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의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시장은 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 횟수, 열람 자료 수량, 열람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제한한 사항을 열람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절 자료의 복제

제24조(자료복제신청) ① 자료를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갖추어 자료관리관에게 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이 보도·홍보 또는 그 밖에 공무의 목적을 위하여 공문서로 자료 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자료복제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복제허가) ① 시장은 교육·학술·공무상의 목적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 자료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복제허가 시 복제허가서와 함께 자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준수사항) 자료를 복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정한 장소에서 자료를 복제할 것
2. 소장품 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3. 소장품 복제 자료의 사용 장소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할 것

제27조(복제의 연기) 시장은 복제 허가 후 자료의 분실·훼손의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복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28조(복제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제5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역사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 료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E-mail)	

매도신청자료 목록

연번	명칭	수량 (점)	매도신청액 (원)	비고
계				

1.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매도를 신청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 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관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 료 기 증 신 청 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증자료목록

연번	명칭 (소유자 부여)	수량(점)	시대 (소유자추 정)	크기(cm,가 로×세로×높 이)	특징	출처

1.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기증을 신청합니다.

2. 위 기증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 료 기 증 증 서

○ ○ ○ 귀하

귀하께서 서울시에 기증해주신 소중한 자료를 전시, 학술연구, 문화예술발전에
적극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기증자료 등 건 점

사진

년 월 일

○○○○시장(관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자 료 기 탁 신 청 서

기탁자 인적사항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특이사항				
기탁자료목록				
명칭	수량	특징		출처
기탁기간				
기탁사유				
사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시장(관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수탁증서

기탁자 인적사항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탁기간						
기탁자료목록						
명칭	수량	형상	사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기탁 의뢰한 자료를 정히 보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관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자 료 반 환 증

수령자 인적사항	주 소			전 화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사유			구분	구입 ☐	기증 ☐	기탁 ☐

반 환 자 료 목 록

연번	접수번호	명칭	크기	수량	비고

위 자료를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제5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시장(관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자 료 평 가 서

자료번호 :

대 상 유 물	명 칭			수량	
	크기 (cm)			재질	
	소유자	이름			
		주소			
평 가 사 항	시 대			사 진	
	작 자				
	보존상태				
	수집가치				
	평가금액				
	평가의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자료평가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시장(관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illegible]

[별지 제10호서식]

수 장 고 관 리 일 지

년 월 일 요일		담 당 자	자료출납원	자료관리관
출 입 내 역				
수장실명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사유	비고
특기사항				

[별지 제11호서식]

자 료 보 관 의 퇴 서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E-mail)	
보관의뢰기간			보관의뢰사유		
연번	자료번호	명칭	수량	형상	비고
계					
위 자료를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관 의뢰자:		(서명 또는 인)	
○○○○시장(관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자 료 보 관 증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E-mail)	
보관예정기간					
연번	자료번호	명칭	수량	형상	비고
계					
위 자료를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관장) 인					
※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별지 제13호서식]

수 장 고 열 쇠 출 납 부

[illegible]

[별지 제14호서식]

자 료 열 램 신 청 서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연 락 처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자 료 번 호		자 료 명 칭	자 료 수 량	비 고
일 시			열람인원수	
목 적				
기타 참고 사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소장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관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자 료 복 제 신 청 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소속)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생년월일	
자료번호	자료명칭	자료수량	복제수량	비고
복제일시				
복제목적				
복제내역				
복제장비				
기타참고사항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기관명 : 근무부서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관장) 귀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박물관 자료수집의 근거를 제공하고, 박물관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의 제정목적(안 제1조)

-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박물관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8조)

- 자료구입 및 기증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며, 수집대상 제한
- 자료구입 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경매, 현지구입 절차 명시

다. 자료수집실무위원회 및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라. 박물관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6조)

-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자료관리관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 자료의 출납 및 자료의 수리복원에 관한 사항

마. 수장고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9조)

- 수장고 자료 확인 및 출입 등 보안에 관한 사항 규정

바. 자료의 대여, 열람, 복제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8조)

사. 시행일 및 다른 규칙의 폐지(부칙 제1조~제2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3534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을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조례 제4조제6항”을 “조례 제4조제7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2항”을 “영 제5조”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르고 허가조건은 별지 제9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제28조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32조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별지 제33호 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의2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행정재산(시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신청면적(m ²)					
	실제이용상태					
	점유자					
	신청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

- 붙임 : 1. 용도폐지 대상지를 표시한 도면
 2. 현황사진
 3.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위임구청 : 구청)

수수료

없음

[별지 제9호서식]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조(사용·수익목적) ① 서울특별시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사용인”은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제2항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기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기간(이하 사용허가기간이라 한다)은 ○○○○년 ○○월 ○○일(사용·수익허가 개시일)로부터 ○○○○년 ○○월 ○○일(사용·수익허가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최초연도 사용료는 금○○○○○원(₩0000원)으로 하고, 다음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수별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 365일 × 사용일수

2. 시간별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 (365일 × 24시간) × 사용시간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4조의2(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개시일 전까지 「시행령」 제14조제8항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와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른 이자를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회차	사용료(원)		납부기한
	분납금	이자	
1		납입고지서 발행일 현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2		위와 같음	
3		위와 같음	
4		위와 같음	

제5조(사용료의 반환) 서울특별시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 이후의 잔여 미사용 사용허가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을 “사용인”에게 반환한다.

제5조의2(보증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반환)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완납하였을 때는 “사용인”의 반환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보증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허가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사용인”은 허가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 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는 언제든지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한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수익허가 개시일까지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때
8.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제11조(청문) 서울특별시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 취소시의 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허가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서울특별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후 계속해서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서울특별시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인”에게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수익허가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에서 명시한 사용허가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허가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 주: 각 재산관리관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법령 및 조례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이 있는 일부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부채납의 근거법령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규정(안 제6조제1항제5호, 제13조제1항)

나. 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용도폐지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 서식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15조제3항, 별지 제9호 서식)

◆ 서울특별시규칙 제3535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같은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행사업

제4조제4호마목 중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계약심사"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심사"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 청 기 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	
공사금액	· 총 공 사 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이 설 비 : 천원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이 설 비 : 천원	
예산내역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천 원)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역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원	·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성자	· 담당부서 : · 작성자 : (전화번호 :)		
예산내역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 용역개요 :			
○ 첨부서류 1.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1부 2. 설계내역서(용역원가 계산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물품 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구 매 예정일자		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	
예정원가 작성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예산내역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천원)
○ 구매개요			
○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4호서식】

물품 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조(수리)기간		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	
예정원가 작성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예산내역	세 부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 제조(수리)개요			
○ 첨부서류 1. 제조원가 계산서 1부 2. 제조(수리) 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5호서식】

인쇄물 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구매예정일		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	
예정원가 작성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예산내역	세부 사업명	예 산 과 목	예산액(천원)

○ 인쇄물 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 시에는 내역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서식】

인쇄물 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 청 기 관	
산출금액	원		
구 매 예 정 일		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	
예정원가 작성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예산내역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천 원)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 타(특수 작업 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 청 기 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	
계약금액 (최초계약 금액)	()			
예산내역	세부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공사개요				
설 계 자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발 주 자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설계변경내역서, 도면, 지방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8호서식】

민간위탁 심사요청서

사 업 명			요 청 기 관	
수탁자	· 명 칭 : · 위 치 : · 대표자 : (전화번호 :)		민간위탁 유형	
위탁기간			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	
위탁비용	· 총 위 탁 비 : 천원 - 인 건 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사 업 비 : 천원		· 금회(당해연도)위탁비 : 천원 - 인 건 비 : 천원 - 운영비(경비) : 천원 - 사 업 비 : 천원	
예산내역	세부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예정원가 작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민간위탁 개요(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서류 1. 원가계산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산출근거자료 포함)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방침서, 수탁자 선정관련 서류 등)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7년부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가 대행사무로 전환되는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 규칙 중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정가격”, “추정금액” 용어 정의 추가로 심사 제외대상 명확화(안 제2조)

나.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을 계약심사대상에 포함하여 비용심사 근거 마련(안 제3조)

다. 계약심사문서의 정보공개 시점에 맞게 별지 심사요청서식에 “입찰종료 예정일” 기재란 추가(안 별지1~8)

◆ 서울특별시규칙 제3536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합신청의 허가)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등”이라 한다)을 허가함에 있어 같은 장소에 2명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하천 점용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 객관적, 합리적으로 처리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같은 장소에 2명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하천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순위에 의거 허가 (안 제2조제1항)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 등 정비

◆ 서울특별시규칙 제3537호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2조”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조”로, “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서울종합방재센터”로 한다.

제2조 중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조례 다른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통제단”이란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긴급구조통제단을 말한다.

제3조제4호 중 “서울특별시항공대”를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별법령”을 “개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신고된”을 “신고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대책본부 등과의 관계)”를 “(통제단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책

본부 등”을 “통제단”으로, “대책본부 등”을 “통제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책본부 등”을 “통제단”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6호 중 “자치구 재난종합상황실 및 소방서”를 “소방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대책본부 등”을 “통제단”으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각 구청·소방서 및 그 밖의 시 소속 행정기관”을 “소방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종합상황실을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73조”를 “종합상황실을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54조”로 한다.

제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조의 2(상황기록 등의 보존 및 통제) ① 재난상황의 신고·접수·출동관제 처리 및 유·무선 녹음 내용(이하 “상황기록 등”이라 한다)은 정보처리시스템에 3년간 저장·관리한다.
- ② 상황기록 등은 소방업무, 감사, 소송, 수사 등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료제공 절차, 정보공개 거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취명후”를 “울림 후”로, “취명”을 “울림”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명하도록”을 “울림을 실시하도록”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취명된”을 “잘못 울림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취명”을 “울림”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훈련취명”을 “훈련울림”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신설되거나소방력이”를 “신설되거나 소방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통신 및 유관기관”을 “케이티(KT Corporation) 및 유관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은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상황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및 통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황관리 효율성 및 기준을 정함.
- 나.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관련 조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황처리 기록물 보존기간 및 통제 기준 구체화 (안 제15조의 2 신설)
 - (보존기간) 유·무선 녹음내용은 정보처리시스템에 3년간 보존
 - (통제) 소방업무·감사·소송·수사 등을 제외한 외부 유출 금지
- 나.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 이전에 따른 조항 정비
(안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 (정비)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본부 등, 자치구 재난 종합상황실, 구청 등 용어 삭제 및 정비

◆ 서울특별시규칙 제353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규칙”을 “이 규칙”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에스에이치(SH)공사사장(이하“공사사장””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이하“공사사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에스에이치(SH)공사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 및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과 내규 등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특별 회계조례”라”를 ““특별회계조례”라”로 한다.

제29조 중 “충용역비”를 “충 용역비”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1조제5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위임근거 없이 규칙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내용 삭제
- 에스에이치(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 변경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 **서울특별시규칙 제3539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와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에게”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6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6.2.>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 ¹⁾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 ²⁾ ,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 ³⁾ 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소극행정 ⁴⁾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⁵⁾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 ⁶⁾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3]과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⁷⁾ ,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⁸⁾ 라. 성매매 ⁹⁾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감봉 정직-감봉	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파 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 비교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3] <개정 2016.6.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마. (삭제) (삭제) (삭제)					○	○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경상해·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설·중대 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및 횡수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바.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아. 폭력, 가혹행위 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차. 기타 품위손상					○ ○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태만 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 ○ ○ ○	
	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5. (삭제) (삭제) (삭제) (삭제)							
	6. (삭제) (삭제) (삭제) (삭제)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사.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 행위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8.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9. 정보공개 불이행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다. 기타 위반사항					○ ○	○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2. 청렴의무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금품 · 향응수수 등 가. 100만원 미만 (1) 수동적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수동적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3) 능동적인 경우 나. 100만원 이상 (1)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2)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다. (삭제) 라. (삭제)	○	○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3. 문서 및 관 인관리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						
	나. 대외비 문서 분실				○			
	다. 관리 소홀						○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나. 예정가격 누설				○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5. 공사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	○ ○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 ○ ○ ○	○ ○ ○ ○ ○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나.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주요부재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등 유지관리소홀 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 ○ ○ ○ ○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 ○		
7. 소송업무	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 ○ ○	 ○ ○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 ○	 ○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	
8. 세무행정	1. 과세누락 또는 지연(고의 또는 중과실) 2. 과세물건의 조사 부당 3. 세무실사 위법·부당 4. 부당 과세 가. 과세표준액 부당적용 나. 세율계산 조작 5.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부당 지연 6. 체납처분 및 압류 태만 7. 압류 부당 해제 8. 과오납금 및 환불 부당처리 9. 결손처분 부당처리					○ ○ ○ ○ ○ ○ ○ ○ ○	 ○ ○ ○ ○ ○	
9. 보건환경	1. 각종 위생업소의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2. 의약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3.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 소홀					○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4. 업태위반, 무허가업소 등 감시단속 조치태만 5. 행정처분업소 위반사항 묵인 방치						○ ○	
	6.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 후 묵인 또는 경감 조치 7.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극물 취급자와 취급의료업소 및 약업소 등의 지도감독 태만 8. 응급환자 취급 부주의로 물의 야기 9.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및 구호지급 품 관리 부적정 10.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11.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12.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법·부당 처리 13.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소홀					○ ○ ○ ○	○ ○ ○ ○ ○ ○	
10. 산업경제	1. 시장 위법·부당 허가 2. 시장 및 연탄제조업소 지도감독 소홀 3. 중소기업자금 지원 부당처리 4. 불법·불량 계량기 단속 불철저 5. 각종 행정처분 태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위법·부당 허가 7. 전기용품 제조 및 전기공사업 등록 위법·부당 처리 8.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9.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 태만					○ ○ ○ ○ ○	○ ○ ○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10. 도시가스 안전관리 소홀 11. 부정도축 목인 방치 12. 정부 양곡 방출 지정 부당 13.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 부당					○	○ ○ ○	
	14. 도매시장 관리 부당 15. 동물병원 및 의약품상 지도감독 소홀 16. 정보화자료 무단유출 및 사적 이용 17. 주요 전산장비·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18. 자체개발 프로그램 외부 유출					○ ○ ○ ○	○ ○ ○	
11. 건설 및 도시행정	1. 환지처분의 위법·부당 2. 도로, 하천 구거 공작물 설치 허가 및 준공 검사 위법·부당 3. 보상금 지급 위법·부당 4. 도로, 하천 구거용지 점용허가 및 관리 위법·부당 5. 도로, 하천 등 점용 및 사용료 과징 위법·부당 6.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의 위법·부당 7. 도시계획 사업인가 및 준공 위법·부당 8. 개발행위허가의 위법·부당 9. 공공용지 용도폐지 위법·부당 10. 임야 개간허가 및 준공허가 위법·부당 11. 공원, 녹지, 그린벨트, 절개지 등 관리 소홀					○ ○ ○ ○ ○ ○ ○ ○ ○ ○ ○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12. 공원용지 사용허가 위법·부당					○		
	13. 토석채취 허가 위법·부당					○		
12. 건축 및 주택행정	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검사)							
	가. 구조의 안전 확인 소홀						○	
	나. 불안정한 대지상의 허가 및 준공						○	
	다.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						○	
	라. 주차시설 위반						○	
	마. 피난시설 소화설비 기준 위반						○	
	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내의 제한 규정 위반					○		
	사.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의 위법·부당					○		
	아. 건축선, 건축물 높이 위반					○		
	자. 용도지역 및 지구 위반					○		
	차. 건폐율, 용적률 위반					○		
	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 위반					○		
	타.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위법·부당 처리						○	
	파. 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업무 소홀						○	
	2.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가.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업무 소홀						○	
	나. 건축위원회 운영 소홀						○	
	다. 건축심의조건 미이행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능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3. 건축물 관리소홀 등							
	가. 위법 건축물의 조치 태만						○	
	나.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소홀						○	
	다. 위법건축사 조치위반					○		
	라. 건축사 지도감독 소홀						○	
	4. 주택사업 승인·인가							
	가.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					○		
	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사업승인 위법·부당					○		
	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	
	라. 조합설립인가업무 부당처리					○		
	마.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당처리					○		
	바.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업무 부당처리				○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부당처리						○		
아. 공동주택 관리업무 소홀 등						○		
	5. 무허가 건물 관리							
	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태만						○	
	나. 향측원도 조작 또는 관리 부실					○		
	다. 향측판독 건물 미철거 및 불완전 철거					○		
	라. 특정 건축물 등 부당처리						○	
	마. 지상촬영 적출 위법건물 조치 위반						○	
	6. 광고물 관리							
	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준공위법 부당처리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나. 광고물 행정 지도감독 소홀						○	
	7. 주택, 건축 질의회신 부당처리					○		
13. 교통행정	1. 법령 위반차량 지도단속 소홀						○	
	2.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소홀						○	
	3. 운수업체 면허 및 노선지정 부적정					○		
	4. 운수업체 및 조합감독 소홀						○	
	5. 차량등록 및 말소 부적정						○	
	6. 구조변경 및 차대, 원동기 재타각 부적정					○		
	7. 정류소 설치, 이전 및 차고지 인가 부적정					○		
	8. 대폐차 및 번호변경 인가 부적정					○		
	9. 증차 및 명의변경 부당처리					○		
	10. 자동차 검사·등록 부적정						○	
	11. 국내여행 알선업 위법·부당 허가					○		
14. 소방행정	1. 소방관련 건축 등의 업무							
	가. 소방시설 검토 누락 등 위법·부당 처리					○		
	나. 작동기능 불량 목인 등 완공검사 태만						○	
	2.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 위법·부당 처리					○		
	3. 업종구분, 면적확인 등 소방대상물 관리 태만							
	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	
	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 부당교부						○	
	4.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소홀로 대형화재 유발				○			
	5.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업무 소홀							
	가. 허위복명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나. 시정명령 미발부 등						○	
	6. 소방법 위반자 입건 유보					○		
	7. 기타 소방법 위반자 조치 태만						○	
15. 상수도	1. 검침 용역회사 지도감독 부적정					○		
	2. 관리 검침 소홀						○	
	3. 인정 조정 부당처리						○	
	4. 계량기 조작		○					
	5. 심사 부당						○	
	6. 계량기 부당 교체				○			
	7. 부정급수 단속 소홀						○	
	8. 무허가 급수업자 방치					○		
	9. 조례 위반사항 조치 부적정					○		
16.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행정자치부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별표의 징계기준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 개정사항 반영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의결시 강화조항 신설(안 제2조제2항)
 - 징계의 감경 제외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제8호)

- [별표 1] 징계기준 중 '1. 성실의무 위반' 유형으로 부작위, 소극행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신설
-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사항 반영
- [별표 1] 징계기준 중 '1. 성실의무 위반' 유형으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신설
- [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중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에서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삭제(별표1에 포함)하고,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신설,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의무 위반행위'로 개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3540호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자기진단제도에 의거하여”를 “자기진단제도와 시의 청렴자율준수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제9호의2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청렴자율준수제”란 서울특별시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구성원의 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관리, 감독, 교육 등의 내부 시스템을 말한다.

9의2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행정기구를 말한다.

가. 본청 내 실·본부·국, 보좌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다. 직속기관·사업소(다만, 4급 이하 공무원이 장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소관 실·본부·국에 포함한다)

13. “기관책임자”란 소속기관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자기진단제도”를 “자기진단제도, 청렴자율준수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서장”을 “부서장, 전문가”로, “5명”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안전행정부 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안 및 사후관리”를 “청렴자율준수제”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운영방향) ① 소속기관은 업무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청렴자율준수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이 실정에 맞는 청렴자율준수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제22조에 따른 청렴자율준수제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렴자율준수제를 도입한 기관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청렴자율준수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렴자율준수제 연간 운영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본 요건) 소속기관이 청렴자율준수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관책임자의 청렴자율준수제 도입을 위한 공개적 의지 표명 및 계획 수립
2.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지정
3. 청렴자율준수제를 위한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
4. 해당 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사항 발굴 및 집중 관리 방안 마련
5.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 2회 이상 자체 교육 실시
6. 청렴자율준수 관련 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포
7.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감독·점검 및 해당 점검결과를 기관책임자에게 연 2회 이상 보고
8. 구성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개선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제18조(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지정 및 역할) ① 청렴자율준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관책임자는 청렴자율준수제의 운영 총괄 관리자인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반부패 청렴대책의 기획 및 추진
2. 구성원에 대한 부패예방 교육, 부패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
3. 부패 위험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4. 기관책임자에게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현황 및 연간 운영 결과, 부패행위자 등 필요사항 보고
제19조(중전의 제16조) 앞에 “제6장 보안 및 사후관리”를 삽입한다.

제21조(중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렴자율준수제 : 계획수립의 적정성, 부패 위험요소의 발굴·모니터링·관리, 전담조직·인
력·예산 현황 등

제21조(중전의 제18조)제3항 중 “자율적 내부통제”를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 제도”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시장은 청렴자율준수제에서 우수하게 평가 받은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감사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중전의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소속기관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부패방지 자정노력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및 행정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서울형 청렴자율준수제’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형 청렴자율준수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정의에 청렴자율준수제 포함(안 제2조)
-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인원 변경(안 제4조)
- 청렴자율준수제 관련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안 제16조~제18조)
- 청렴자율준수제 인센티브 등 규정(안 제22조)

나. 기타 조문 현행화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등

◆ 서울특별시규칙 제354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2조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속 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명확히 거절한 공무원은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을 “시장이나 행동강령

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 준안에 따른다.

제12조의 제목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를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및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및 5만원 이내의 경조사비·선물 등
3.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제12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제13조의 제목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그 사실을 클린신고센터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제13조제1항제2호 중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제12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을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13조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를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이 강의·강연·토론·기고 또는 세미나·공청회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4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2.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한다.

제18조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제5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외부강의·회의 등을”을 “외부강의등을”로, “제3호 각 목의 구분”을 “각 호”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의 승인”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단서 중 “외부강의·회의 등에”를 “외부강의등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으로써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사례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제12조제1항제2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를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9호”로 한다.

제20조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시 장	부시장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0	400	300	200

- ▶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미포함
-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별지 제5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해,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우리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의 기조 유지를 위한 수수 허용 금품등의 상한액 하향 조정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세부처리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반영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안 제7조)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공무원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함.

나. 금품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안 제12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안 제13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공무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함.

라.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안 제18조)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외부강의등의 유형, 필요성과 그 밖의 신고제외 대상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하도록 함.
- 공무원은 기준초과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함.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호

토지세목(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74호(2015.09.17), 제2016-340호(2016.10.27)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토지세목 고시된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변경없음)
2. 사업개요(변경없음)
 - 가. 위 치 : 서울 양천구 신월동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 올림픽대로)
 - 나. 규 모 : 연장 7.53km, 왕복 4차로, 소형차전용
 - 다. 총사업비 : 4,546억원(2007.3.1. 불변가격 기준)
 - 라. 총투자비 : 7,130억원
 -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착수일 : 2015년 10월 16일)
 - 마.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변경없음)
 - 가. 사업시행자
 - (1) 성 명 : 서울터널주식회사 대표이사 강태구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 와이피센터 9층
 - (2) 성 명 : 서울특별시장(토지 등 보상업무 및 토지소유·사용권 취득)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나. 출자자 및 지분율(10개사)

KIAMCO도로투자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제6호	22.84%	지에스건설(주)	6.00%
KIAMCO도로투자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제7호	27.16%	현대엔지니어링(주)	5.55%
대림산업(주)	18.00%	롯데건설(주)	4.85%
금호산업(주)	6.20%	동광건설(주)	3.30%
현대건설(주)	6.1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참조(변경)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변경없음)
6.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도로계획과(02-2133-8072) 및 서울터널주식회사(070-4660-7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하, 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지하 심도(m)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 기준(m)		이해관계인			비고
		구동	지 번		구분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최심도	최고점	주소	성명	관리의 종류	
80	당초	양천구 목동	904-16	수		6	6	강남구 논현동 109-20	김귀철외1		-73.63	-54.18				
	변경	양천구 목동	904-16	수	인천방 향	6	6	강남구 논현동 109-20	김귀철외1	61.98	-73.63	-54.18				
81	당초	양천구 목동	904-18	수		399	392.7	영등포구 문해동4가 10	하영식외3		-74.29	-54.66				
	변경	양천구 목동	904-18	수	인천 방향	399	392.7	영등포구 문해동4가 10	하영식외3	62.46	-74.29	-54.66				
83	당초	양천구 목동	905-1	수		403	396.3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동60	윤정자외1		-74.48	-54.71				
	변경	양천구 목동	905-1	수	인천 방향	403	396.2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동60	윤정자외1	62.51	-74.48	-54.71				
87	당초	양천구 목동	913-5	수		2	2	경기도 안양시 인양동 462-36	박내양		-74.74	-53.5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임류	
	변경	양천구 목동	913-5	수	인천 방향	2	2	경기도 안양시 인양동 462-36	박내양	60.72	-74.74	-53.5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임류	
88	당초	양천구 목동	913-6	수		294	241.6	서울 성북구 장위동 84-2	최운오외3		-74.74	-53.51				
	변경	양천구 목동	913-6	수	인천 방향	294	241.6	서울 성북구 장위동 84-2	최운오외3	60.81	-74.74	-53.51				

연번	구분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지하 심도(m)	구분지상권면위 평균해수면 기준(m)			이해관계인			비고
		구동	지 번		구분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최심도	~	최고점	주소	성명	관리의 종류	
98	당초	양천구 목동	918-1	대		7,692.9	509.1	성남 분당구 정자동 206	주식회사 케이티		-74.74	~	-54.43				
	변경	양천구 목동	918-1	대	여의도 방향	7,692.9	503.3	성남 분당구 정자동 206	주식회사 케이티	62.82	-74.74	~	-54.43				
117	당초	영등포구 양평동3가	77-80	대		4,251.7	231.2	서울 중구 남대문로 47가45	대한제분 주식회사		-67.07	~	-46.52				
	변경	영등포구 양평동3가	77-80	대	인천 방향	4,251.7	231.0	서울 중구 남대문로 47가45	대한제분 주식회사	55.90	-67.07	~	-46.52				
124	당초	영등포구 양평동3가	69	대		8,529.4	255.5	종로구 평창동 489-14	양성현		-67.40	~	-47.00				
	변경	영등포구 양평동3가	69	대	여의도 방향	8,529.4	258.7	종로구 평창동 489-14	양성현	54.63	-67.40	~	-47.00				
154	당초	영등포구 당산동4가	93-1	대		8,377.4	662.3	당산동4가 93	주식회사 티씨씨동양		-65.41	~	-43.85		국민연금공 단외6	근저당 권	
	변경	영등포구 당산동4가	93-1	대	인천 방향	3,919.8	315.4	당산동4가 93	주식회사 티씨씨동양	51.96	-65.41	~	-43.85		국민연금공 단외6	근저당 권	
	변경	영등포구 당산동4가	93-5	대	인천 방향	1,266.9	224.8	당산동4가 93	주식회사 티씨씨동양	51.96	-65.41	~	-43.85				
	변경	영등포구 당산동4가	93-3	대	인천 방향	3,190.7	97.8	미래창조과학부	국	51.96	-65.41	~	-43.85				

연번	구분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지하 심도(m)	구분지상권면위 평균해수면 기준(m)			이해관계인			비고
		구동	지 번		구분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최심도	~	최고점	주소	성명	관리의 종류	
155	당초	영등포구 당산동4가	92-2	대		312.4	32.5	당산동4가 93	주식회사 티씨씨동양		-63.26	~	-43.85		국민연금공 단외6	근저당 권	
	변경	영등포구 당산동4가	92-2	대	인천 방향	312.4	29.1	당산동4가 93	주식회사 티씨씨동양	52.46	-63.26	~	-43.85		국민연금공 단외6	근저당 권	
156	당초	영등포구 당산동4가	92-5	대		353.2	154.4	서초구 양재동 64 중앙하이츠빌라402호	이시원외4		-63.26	~	-43.26				
	변경	영등포구 당산동4가	92-5	대	인천 방향	353.2	156.4	서초구 양재동 64 중앙하이츠빌라402호	이시원외4	51.88	-63.26	~	-43.26				
157	당초	영등포구 당산동4가	92-4	장		328	138	서울 양천구 목동 916 현대 하이페리온101-6906	장은지		-62.70	~	-42.73				
	변경	영등포구 당산동4가	92-4	장	인천 방향	328	139.7	서울 양천구 목동 916 현대 하이페리온101-6906	장은지	51.43	-62.70	~	-42.73				
158	당초	영등포구 당산동4가	92-3	장		661.4	282.1	서초구 방배동 988-1 신동아@3-705	김상현외1		-62.10	~	-41.36		주식회사조 흥은행	근저당 권	
	변경	영등포구 당산동4가	92-3	장	인천 방향	661.4	283.9	서초구 방배동 988-1 신동아@3-705	김상현외1	50.06	-62.10	~	-41.36		주식회사조 흥은행	근저당 권	
161	당초	영등포구 당산동4가	38-1	대		3,244.5	529.9	중구 태평로2가 150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60.77	~	-39.61				
	변경	영등포구 당산동4가	38-1	대	인천 방향	3,244.5	536.8	중구 태평로2가 150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48.52	-60.77	~	-39.6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고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시 소요되는 현장 출장 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가. 2017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 붙임

나. 현장 출장 경비

1)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 1,458,540원

2)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 458,930원

729,270원(외부전문가합동점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02-3462-6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 기간(일)	비고
성토용 흙	함수비	KS F 2306	건	17,170	4	
	입 도	KS F 2302	건	197,890	6	
	세립토비율	KS F 2309	건	38,220	4	
	밀도	KS F 2308	건	62,040	4	
	액성한계	KS F 2303	건	56,100	4	
	소성한계	KS F 2303	건	38,930	4	
	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건	307,440	10	
	다 짐	KS F 2312	건	185,570	4	
터파기	평판재하(시내)	KS F 2444	건	186,000	4	1건 추가시 147,430원
	평판재하(시외)	KS F 2444	건	221,880	4	1건 추가시 145,980원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되메우기및 구조물 뒷채움	다 짐	KS F 2312	건	164,400	4	
	현장밀도 (시내)	KS F 2311	건	125,480	4	1건 추가시 86,900원
	현장밀도 (시외)	KS F 2311	건	161,530	4	1건 추가시 86,900원
	평판재하 (성토체)(시내)	KS F 2310	건	186,000	4	1건 추가시 147,430원
	평판재하(성토체) (시외)	KS F 2310	건	221,880	4	1건 추가시 141,730원
	입 도	KS F 2302	건	197,890	6	
	함수비	KS F 2306	건	17,170	4	
	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건	307,440	10	
	세립토비율	KS F 2309	건	38,220	4	
	밀도	KS F 2308	건	62,040	4	
	액성한계	KS F 2303	건	56,100	4	
	소성한계	KS F 2303	건	38,930	4	
노체	다 짐	KS F 2312	건	146,790	4	
	함수비	KS F 2306	건	16,450	4	
	현장밀도 (시내)	KS F 2311	건	105,000	4	1건 추가시 66,430원
	현장밀도 (시외)	KS F 2311	건	141,060	4	1건 추가시 66,430원
	평판재하 (시내)	KS F 2310	건	186,000	4	1건 추가시 147,430원
	평판재하 (시외)	KS F 2310	건	221,880	4	1건 추가시 147,430원
	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건	307,440	10	
	입 도	KS F 2302	건	197,890	6	
	세립토비율	KS F 2309	건	38,220	4	
	밀도	KS F 2308	건	62,040	4	
	액성한계	KS F 2303	건	56,100	4	
	소성한계	KS F 2303	건	38,93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노상	다 짐	KS F 2312	건	145,650	4	
	함수비	KS F 2306	건	16,270	4	
	현장밀도 (시내)	KS F 2311	건	104,050	4	1건 추가시 65,470원
	현장밀도 (시외)	KS F 2311	건	140,110	4	1건 추가시 65,470원
	평판재하 (시내)	KS F 2310	건	186,000	4	1건 추가시 147,430원
	평판재하 (시외)	KS F 2310	건	221,880	4	1건 추가시 147,430원
	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건	307,440	10	
	입 도	KS F 2302	건	197,890	6	
	세립토비율	KS F 2309	건	38,220	4	
	밀도	KS F 2308	건	62,040	4	
	액성한계	KS F 2303	건	56,100	4	
	소성한계	KS F 2303	건	38,930	4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건	25,790	4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건	37,190	4	
	마 모	KS F 2508	건	41,910	4	
	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건	257,560	10	
	다 짐	KS F 2312	건	142,790	4	
	체가름	KS F 2502	건	153,420	4	
	함수비	KS F 2306	건	16,270	4	
	현장밀도 (시내)	KS F 2311	건	104,050	4	1건 추가시 65,470원
	현장밀도 (시외)	KS F 2311	건	140,110	4	1건 추가시 65,470원
	평판재하 (시내)	KS F 2310	건	186,000	4	1건 추가시 147,430원
	평판재하 (시외)	KS F 2310	건	221,880	4	1건 추가시 147,430원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입도조정기층	밀도(흙)	KS F 2308	건	35,970	4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건	37,680	4	
	마 모	KS F 2508	건	41,060	4	
	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건	257,560	10	
	다 짐	KS F 2312	건	142,790	4	
	체가름	KS F 2502	건	158,550	4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건	21,580	4	
	함수비	KS F 2306	건	16,270	4	
	안정성	KS F 2507	건	101,300	14	
	현장밀도 (시내)	KS F 2311	건	104,050	4	1건 추가시 65,470원
	현장밀도 (시외)	KS F 2311	건	140,110	4	1건 추가시 65,470원
	평판재하 (시내)	KS F 2310	건	186,000	4	1건 추가시 147,430원
	평판재하 (시외)	KS F 2310	건	221,880	4	1건 추가시 147,430원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중간층용)	다짐횟수 (마샬)	KS F 2337	건	36,300	4	
	안정도	KS F 2337	건	69,560	4	
	흐름값	KS F 2337	건	68,990	4	
	공극률	KS F 2364	건	78,530	4	
	포화도	SPS-AI0002-F 2349-5687	건	77,020	4	
	아스팔트함유량	KS F 2354	건	122,210	5	
	체가름	KS F 2502	건	120,020	5	
	간접인장강도	KS F 2382	건	37,620	5	‘17.5.1.이후 시험가능
	변형강도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건	23,650	4	‘17.5.1.이후 시험가능
	다짐횟수(선회)	KS F 2377	건	41,450	5	‘17.5.1.이후 시험가능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다짐횟수(마샬)	KS F 2337	건	37,270	4	
	안정도	KS F 2337	건	69,560	4	
	흐름값	KS F 2337	건	68,990	4	
	공극률	KS F 2364	건	78,530	4	
	포화도	SPS-KAI0002-F2349-5687	건	77,020	4	
	동적안정도	KS F 2374	건	264,930	10	
	아스팔트함유량	KS F 2354	건	122,210	5	
	체가름	KS F 2502	건	120,020	5	
	간접인장강도	KS F 2382	건	37,290	5	'17.5.1.이후 시험가능
	변형강도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건	23,650	4	'17.5.1.이후 시험가능
	간접인장강도비(TSR)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건	177,230	30	'17.5.1.이후 시험가능
	다짐횟수(선회)	KS F 2377	건	42,420	5	'17.5.1.이후 시험가능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다짐횟수(마샬)	KS F 2337	건	37,270	4	
	안정도	KS F 2337	건	67,810	4	
	흐름값	KS F 2337	건	67,240	4	
	공극률	KS F 2364	건	75,620	4	
	동적안정도	KS F 2374	건	264,930	10	
	투수계수	KS F 2494	건	110,720	4	
	칸타브로손실률	KS F 2492	건	40,310	4	
	아스팔트함유량	KS F 2354	건	122,210	5	
	체가름	KS F 2502	건	120,020	5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도로보수용 상온역청 혼합물	다점헛수	KS F 2337	건	34,160	4	
	안정도	KS F 2337	건	69,560	4	
	흐름값	KS F 2337	건	68,990	4	
	공극률	KS F 2364	건	78,570	4	
	수침잔류안정도	KS F 2369	건	73,100	6	
아스팔트 포설	코아채취 (시내)	KS F 2350	건	158,080	4	1건 추가시 120,090원
	코아채취 (시외)	KS F 2350	건	193,810	4	1건 추가시 120,090원
	밀 도(코아)	KS F 2353	건	28,760	4	
	두께(코아)	KS F 2367	건	7,830	4	
준설토	함수비(준설토)	KS F 2306	건	54,830	4	
굳은 콘크리트 (레미콘 포함)	압축강도	KS F 2405	조	13,290	실소요일	
콘크리트 경계블럭 (보차도용)	치수	KS F 4006	조	9,270	4	
	휨강도	KS F 4006	조	28,550	5	
	흡수율	KS F 4006	조	44,060	7	
호안용블록 (콘크리트 및 모르터)	치수	시방서	조	9,270	4	
	휨강도	시방서	조	30,760	5	
	압축강도	시방서	조	23,890	5	
	흡수율	시방서	조	47,220	7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치수	KS F 4001	조	13,720	4	
	유색충두께	KS F 4001	조	7,670	4	
	휨강도	KS F 4001	조	17,150	5	
	흡수율	KS F 4001	조	36,770	7	
	미끄럼저항 시험	KS F 2375	조	14,65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오나멘트 타일	치수	시방서	조	9,110	4	
	꺾임강도	시방서	조	18,900	5	
	흡수율	시방서	조	38,800	7	
점토벽돌	치수	KS L 4201	조	8,950	4	
	압축강도	KS L 4201	조	44,680	5	
	흡수율	KS L 4201	조	71,020	7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치수	KS F 4419	조	9,270	4	
	유색층두께	KS F 4419	조	7,670	4	
	휨강도	KS F 4419	조	29,280	5	
	흡수율	KS F 4419	조	48,110	7	
	미끄럼저항 시험	KS F 2375	조	14,650	4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투수성)	치수	KS F 4419	조	9,270	4	
	유색층두께	KS F 4419	조	7,670	4	
	휨강도	KS F 4419	조	29,330	5	
	투수계수	KS F 4419	조	63,740	7	
	미끄럼저항 시험	KS F 2375	조	14,650	4	
속빈 콘크리트 블록	치수	KS F 4002	조	9,280	4	
	압축강도	KS F 4002	조	21,590	5	
	흡수율	KS F 4002	조	70,970	7	
콘크리트 벽돌	치수	KS F 4004	조	8,950	4	
	압축강도	KS F 4004	조	25,020	5	
	흡수율	KS F 4004	조	81,390	7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외압강도	KS F 4403	개	16,280	4	폐기물(시험잔재)처리 및 지게차 동원은 의뢰자가 별도부담
테라조 타일	치수	KS F 4035	조	9,130	4	
	꺾임강도	KS F 4035	조	18,900	5	
암석	압축강도	KS F 2519	조	61,540	5	
	밀도 및 흡수율	KS F 2518	조	58,450	7	
	탄성과 속도	시방서	조	37,890	5	
석재	압축강도	KS F 2530	조	61,540	5	
	밀도 및 흡수율	KS F 2530	조	58,450	7	
	미끄럼저항 시험	KS F 2375	조	14,650	4	
콘크리트 교아	압축강도	KS F 2422	조	23,880	5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및틀	정하중	SPS-KFCA-M2 01-1639	조	59,020	4	
케이블트 로프	휨강도	KS F 4011	조	28,550	5	
콘크리트용 골재	입도	KS F 2502	건	40,280	4	
	절대건조밀도 및흡수율	KSF2503 KSF2504	건	41,860	7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건	12,020	5	
	0.08mm체통과량	KS F 2511	건	24,810	4	
	굵은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건	43,560	4	
	점토덩어리	KS F 2512	건	33,440	7	
	안정성	KS F 2507	건	101,300	14	
	염화물함유량	KS F 2515	건	23,960	4	
	유기불순물	KS F 2510	건	24,06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입도	KS F 2502	건	40,270	4	
	절대건조밀도 및흡수율	KSF2503 KSF2504	건	41,030	7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건	12,020	5	
	0.08mm체통과량	KS F 2511	건	24,810	4	
	굵은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건	43,560	4	
	점토덩어리	KS F 2512	건	33,440	7	
	안정성	KS F 2507	건	101,300	14	
골재	입도	KS F 2502	건	40,280	4	
	절대건조밀도 및흡수율	KSF2503 KSF2504	건	41,860	7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건	12,020	5	
	0.08mm체통과량	KS F 2511	건	24,810	4	
	굵은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건	41,020	4	
	점토덩어리	KS F 2512	건	33,440	7	
	안정성	KS F 2507	건	101,300	14	
	염화물함유량	KS F 2515	건	23,960	4	
	유기불순물	KS F 2510	건	24,060	4	
부순골재	입도	KS F 2502	건	40,270	4	
	절대건조밀도 및 흡수율	KSF2503 KSF2504	건	41,030	7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건	12,020	5	
	0.08mm체통과량	KS F 2511	건	24,810	4	
	굵은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건	41,020	4	
	안정성	KS F 2507	건	101,300	14	
	점토덩어리	KS F 2512	건	33,440	7	
	동적수침후파복을	아스팔트혼합물 생산및시공지침 부속서 III-4	건	454,940	10	
	편장석률	KS F 2575	건	29,440	5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도자기질 타 일	치수	KS L 1001	조	9,130	4	
	치수의불규칙도	KS L 1001	조	7,690	4	
	뒤틀림	KS L 1001	조	7,730	4	
	꺾임강도	KS L 1001	조	18,900	5	
	흡수율	KS L 1001	조	38,800	7	
	내균열성	KS L 1001	조	19,850	7	
	내마모성	KS L 1001	조	17,930	7	
	동결융해	KS L 1001	조	244,960	10	
	내약품성	KS L 1001	조	40,350	7	
보차도 포장용 판석	치수	KS F 2530-1	조	9,270	4	
	휨강도	KS F 2530-1	조	30,800	5	
	흡수율	KS F 2530-1	조	45,580	7	
	미끄럼저항 시험	KS F 2375	조	14,650	4	
점토바닥 벽돌	치수	SPS-KCBIC 0002-1569 : 2009	조	8,950	4	
	휨강도	SPS-KCBIC 0002-1569 : 2009	조	29,280	5	
	흡수율	SPS-KCBIC 0002-1569 : 2009	조	71,020	7	
	미끄럼저항 시험	KS F 2375	조	14,650	4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치수	KS F 4561	조	9,270	4	
	유색충두께	KS F 4561	조	7,670	4	
	휨강도	KS F 4561	조	29,280	5	
	흡수율	KS F 4561	조	48,110	7	
	미끄럼저항 시험	KS F 2375	조	14,65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강관말뚝	항복강도, 인장강도및연신율	KS B 0802	개	43,57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18,290	5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18,290	5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18,290	5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18,290	5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18,290	5	
	화학적분 (니오브 Nb)	KS D 1652	건	18,290	5	
	화학적분 (바나듐 V)	KS D 1652	건	18,290	5	
	탄소당량	KS D 1652	건	28,500	5	
H형강 말뚝	항복강도, 인장강도및연신율	KS B 0802	개	24,34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16,700	5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16,700	5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16,700	5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16,700	5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16,700	5	
	화학적분 (구리 Cu)	KS D 1652	건	16,700	5	
	탄소당량	KS D 1652	건	32,490	5	
열간압연강 널말뚝	항복강도, 인장강도및연신율	KS B 0802	개	24,34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16,700	5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16,700	5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16,700	5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16,700	5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16,700	5	
	화학적분 (구리 Cu)	KS D 1652	건	16,700	5	
	탄소당량	KS D 1652	건	32,490	5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용접용열간 압연강널말뚝	항복강도, 인장강도및연신율	KS B 0802	개	24,340	4	
	이음인장강도 (직선형강널말뚝)	KS B 0802	개	43,570	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락볼트)	항복강도	KS B 0802	개	31,46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31,170	4	
	연신율	KS B 0802	개	31,460	4	
	굽힘성	KS B 0804	개	19,170	4	
	겉모양	KS D 3504	개	4,960	6	
	무게	KS D 3504	개	5,160	6	
	치수	KS D 3504	개	6,280	6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12,830	5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12,830	5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12,830	5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12,830	5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12,830	5	
	화학적분 (질소 N)	KS D 1652	건	12,830	5	
	탄소당량	KS D 1652	건	32,500	5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항복강도	KS B 0802	개	31,46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31,170	4	
	연신율	KS B 0802	개	31,460	4	
	굽힘성	KS B 0804	개	19,170	4	
재생 강재	인장강도	KS B 0802	개	31,170	4	
	항복강도	KS B 0802	개	31,460	4	
	연신율	KS B 0802	개	31,460	4	
	굽힘성	KS B 0804	개	19,17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항복강도	KS B 0802	개	31,06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30,940	4	
	연신율	KS B 0802	개	31,060	4	
	굽힘성	KS B 0804	개	18,410	4	
PC강봉	0.2% 항복강도	KS B 0802	개	21,88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1,610	4	
	연신율	KS B 0802	개	21,880	4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13,460	5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13,460	5	
	화학적분 (구리 Cu)	KS D 1652	건	13,460	5	
용접철망및 철근격자	0.2% 항복강도	KS B 0802	개	21,32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1,260	4	
	연신율	KS B 0802	개	21,320	4	
	굽힘성	KS B 0804	개	16,430	4	
철근이음	가스압접이음 /인장시험(인장강도)	KS B 0802	개	41,830	4	
	기계적이음 /인장시험(인장강도)	KS B 0802	개	41,830	4	
	용접이음 /인장시험(인장강도)	KS B 0802	개	41,830	4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항복강도	KS B 0802	개	20,80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0,900	4	
	연신율	KS B 0802	개	21,150	4	
	굽힘성	KS B 0804	개	18,19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9,740	5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9,740	5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9,740	5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9,740	5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항복강도	KS B 0802	개	20,80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0,900	4	
	연신율	KS B 0802	개	21,15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9,740	5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9,740	5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9,740	5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9,740	5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9,740	5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KS D 1652	건	32,500	5	
용접구조용 내후성열간 압연강재	항복강도	KS B 0802	개	20,80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0,900	4	
	연신율	KS B 0802	개	21,15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9,740	5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9,740	5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9,740	5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9,740	5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9,740	5	
	화학적분 (구리 Cu)	KS D 1652	건	9,740	5	
	화학적분 (크롬 Cr)	KS D 1652	건	9,740	5	
	화학적분 (니켈 Ni)	KS D 1652	건	9,740	5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KS D 1652	건	32,500	5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항복강도	KS B 0802	개	21,69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0,900	4	
	연신율	KS B 0802	개	21,15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열간압연 연강판및 강대	인장강도	KS B 0802	개	20,510	4	
	연신율	KS B 0802	개	20,760	4	
	굽힘성	KS B 0804	개	18,15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9,660	5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인장강도	KS B 0802	개	20,610	4	
	항복강도	KS B 0802	개	20,760	4	
	연신율	KS B 0802	개	20,76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9,660	5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인장강도	KS B 0802	개	20,610	4	
	항복강도	KS B 0802	개	20,900	4	
	연신율	KS B 0802	개	20,76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9,660	5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인장강도	KS B 0802	개	20,610	4	
	항복강도	KS B 0802	개	20,900	4	
	연신율	KS B 0802	개	20,76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9,660	5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인장강도	KS B 0802	개	20,840	4	
	항복강도	KS B 0802	개	21,400	4	
	연신율	KS B 0802	개	21,21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9,810	5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9,810	5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9,810	5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9,810	5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9,810	5	
	화학적분 (질소 N)	KS D 1652	건	9,810	5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KS D 1652	건	32,580	5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항복강도	KS B 0802	개	21,21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0,840	4	
	연신율	KS B 0802	개	21,210	4	
용접구조용 원심력	항복강도	KS B 0802	개	21,40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주강관	인장강도	KS B 0802	개	20,840	4	
	연신율	KS B 0802	개	21,21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9,810	5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9,810	5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9,810	5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9,810	5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9,810	5	
	화학적분 (바나듐 V)	KS D 1652	건	9,810	5	
	화학적분 (크롬 Cr)	KS D 1652	건	9,810	5	
	화학적분 (몰리브덴 Mo)	KS D 1652	건	9,810	5	
	화학적분 (니켈 Ni)	KS D 1652	건	9,810	5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KS D 1652	건	32,580	5	
고내후성 압연강재	인장시험(인장강도, 연신율,항복강도)	KS B 0802	개	20,510	4	
	굽힘성	KS B 0804	개	18,03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구리 Cu)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크롬 Cr)	KS D 1652	건	9,660	5	
	화학적분 (니켈 Ni)	KS D 1652	건	9,660	5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조립용형강	인장강도	KS B 0802	개	21,230	4	
	항복강도	KS B 0802	개	21,790	4	
	0.2% 항복강도	KS B 0802	개	43,570	4	
	연신율	KS B 0802	개	21,790	4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	항복강도	KS B 0802	개	20,98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0,690	4	
	연신율	KS B 0802	개	20,98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10,000	5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10,000	5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10,000	5	
구조용고장력 탄소강및 저합금강 주강품	항복강도	KS B 0802	개	22,08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21,110	4	
	연신율	KS B 0802	개	22,080	4	
	화학적분 (탄소 C)	KS D 1652	건	10,020	5	
	화학적분 (규소 Si)	KS D 1652	건	10,020	5	
	화학적분 (망간 Mn)	KS D 1652	건	10,020	5	
	화학적분 (인 P)	KS D 1652	건	10,020	5	
	화학적분 (황 S)	KS D 1652	건	10,020	5	
	화학적분 (니켈 Ni)	KS D 1652	건	10,020	5	
	화학적분 (크롬 Cr)	KS D 1652	건	10,020	5	
	화학적분 (몰리브덴 Mo)	KS D 1652	건	10,020	5	
마찰접합용 고장력	항복강도	KS B 0802	개	22,08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6각볼트	인장강도	KS B 0802	개	22,080	4	
	연신율	KS B 0802	개	22,080	4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인장강도	KS B 0802	개	25,190	4	
	항복강도	KS B 0802	개	21,200	4	
	연신율	KS B 0802	개	21,200	4	
철선	인장시험(인장강도, 연신율,항복강도)	KS B 0802	개	19,370	4	
회주철품	인장강도	KS B 0802	개	19,100	4	
구상흑연 주철품	인장시험(인장강도, 연신율,항복강도)	KS B 0802	개	19,100	4	
	화학성분 (탄소 C)	KS D 1652	건	11,110	5	
	화학성분 (규소 Si)	KS D 1652	건	11,110	5	
	화학성분 (망간 Mn)	KS D 1652	건	11,110	5	
	화학성분 (인 P)	KS D 1652	건	11,110	5	
	화학성분 (황 S)	KS D 1652	건	11,110	5	
	화학성분 (마그네슘 Mg)	KS D 1652	건	11,110	5	
알루미늄 및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굽힘시험	KS B 0804	개	33,920	4	
	인장강도	KS B 0802	개	40,200	4	
	항복강도	KS B 0802	개	40,200	4	
	연신율	KS B 0802	개	40,200	4	
알루미늄 및알루미늄 합금봉 및선	인장강도	KS B 0802	개	40,200	4	
	항복강도	KS B 0802	개	40,200	4	
	연신율	KS B 0802	개	40,200	4	
	굽힘시험	KS B 0804	개	33,620	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 바탕에서골재	유기불순물	KS F 2510	건	24,06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구조용 경량골재	유기불순물	KS F 2510	건	24,060	4	
포틀랜드 시멘트	비중(르사트리에)	KS L 5110	건	39,210	4	
	분말도	KS L 5106	건	29,500	4	
	응결시간	KS L 5108	건	27,060	4	
	압축강도	KS L 5105	건	74,990	32	
	화학적분(강열감량)	KS L 5120	건	26,910	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분말도	KS L 5106	건	29,620	4	
	응결시간	KS L 5108	건	26,380	4	
	압축강도	KS L ISO 679	건	164,690	32	
	화학분석(강열감량)	KS L 5120	건	27,540	4	
고로 슬래그 시멘트	분말도	KS L 5106	건	31,030	4	
	응결시간	KS L 5108	건	27,300	4	
	압축강도	KS L ISO 679	건	197,300	32	
	화학분석(강열감량)	KS L 5120	건	27,540	4	
메이슨리 시멘트	분말도	KS L 5112	건	30,030	4	
	응결시간	KS L 5108	건	27,300	4	
	압축강도	KS L 5219	건	79,030	32	
플라이애시 시멘트	화학적분(강열감량)	KS L 5120	건	27,630	4	
	압축강도	KS L ISO 679	건	70,440	32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화학분석(강열감량)	KS L 5120	건	26,610	4	
	응결시간	KS L 5108	건	26,580	4	
	압축강도	KS L ISO 679	건	70,440	32	
여과재료	비중	KWWA F 100	건	30,820	4	
	강열감량	KWWA F 100	건	41,57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염산가용율	KWWA F 100	건	76,850	6	
	체가름(유효경,균등계수)	KWWA F 100	건	32,420	4	
	마모율	KWWA F 100	건	14,700	4	
	탁도	KWWA F 100	건	40,810	4	
물(수질검사)	수소이온농도(pH)	KS F 4009	건	16,050	4	
	증발잔유물	KS F 4009	건	79,390	4	
	염화물	KS F 4009	건	59,660	4	
	시멘트응결시간의 차	KS F 4009	건	34,590	4	
	압축강도의 비	KS F 4009	건	204,170	32	
	현탁물질의 양	KS F 4009	건	22,680	4	
	용해성증발잔유물의 양	KS F 4009	건	23,260	4	
연강선재	화학성분 (탄소 C)	KS D 1652	건	12,880	5	
	화학성분 (망간 Mn)	KS D 1652	건	12,880	5	
	화학성분 (인 P)	KS D 1652	건	12,880	5	
	화학성분 (황 S)	KS D 1652	건	12,880	5	
용접 구조용 주강품	화학성분 (탄소 C)	KS D 1652	건	10,170	5	
	화학성분 (규소 Si)	KS D 1652	건	10,170	5	
	화학성분 (망간 Mn)	KS D 1652	건	10,170	5	
	화학성분 (인 P)	KS D 1652	건	10,170	5	
	화학성분 (황 S)	KS D 1652	건	10,170	5	
	화학성분 (바나듐 V)	KS D 1652	건	10,170	5	
	화학성분 (크롬 Cr)	KS D 1652	건	10,170	5	
	화학성분 (몰리브덴 Mo)	KS D 1652	건	10,170	5	
	화학성분 (니켈 Ni)	KS D 1652	건	10,170	5	
	탄소당량	KS D 1652	건	32,940	5	
토목용 부직포 섬유	무게	KS K ISO 9864	건	12,060	3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두께	KS K ISO 9863-1	건	16,050	3	
	인장강도. 신도	KS K 0743	건	31,520	4	
	투수계수	KS K 2630	건	38,910	6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구재 아스팔트 함량	KS F 2354	건	122,210	5	
플랜트	골재의 체가름	KS F 2502	건	120,020	5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제	응결시간	KS L 5103	건	39,950	4	
	안정성	KS F 4925	건	88,550	30	
	압축강도	KS L 5105	건	274,310	31	
	물흡수계수	KS F 2609	건	317,840	24	
	투수비	KS F 4925	건	259,370	24	
	부착강도	KS F 4925	건	212,240	34	
건설용도막 방수제	인장성능(인장강도)	KS F 3211	건	82,120	5	시험편 제작시 7일 추가(액상 의뢰시)
	인장성능(신장률)	KS F 3211	건	82,120	5	
	인장성능(항장적)	KS F 3211	건	82,120	5	
	인열성능(인열강도)	KS F 3211	건	82,060	5	
	온도의존성/신장률(20℃)	KS F 3211	건	92,630	5	
	가열신축성상(신축률)	KS F 3211	건	113,850	12	
	열화후인장성능 가열처리(인장강도비)	KS F 3211	건	335,360	12	
	열화후인장성능 가열처리(신장률)	KS F 3211	건	335,360	12	
	열화후인장성능 알칼리처리(인장강도비)	KS F 3211	건	306,280	12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열화후인장성능 알칼리처리(신장률)	KS F 3211	건	306,280	12	
	열화후인장성능 산처리(인장강도비)	KS F 3211	건	306,140	12	
	열화후인장성능 산처리(신장률)	KS F 3211	건	306,140	12	
	신장시의 열화성상(가열처리)	KS F 3211	건	260,290	12	
	신장시의 열화성상(오존처리)	KS F 3211	건	432,970	12	
	고형분	KS F 3211	건	12,620	4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인장강도(무처리)	KS F 4911	건	24,210	5	
	인장강도비(가열 후)	KS F 4911	건	95,050	12	
	인장강도비(알칼리)	KS F 4911	건	25,240	12	
	신장률(무처리)	KS F 4911	건	24,210	5	
	신장률비(가열 후)	KS F 4911	건	95,050	12	
	신장률비(알칼리)	KS F 4911	건	25,240	12	
	인열강도(무처리)	KS F 4911	건	25,240	5	
	가열신축성상	KS F 4911	건	110,530	12	
	신장시 열화성상(가열처리)	KS F 4911	건	108,340	12	
	신장시 열화성상(오존처리)	KS F 4911	건	278,290	12	
	접합성상(무처리)	KS F 4911	건	23,230	5	
	접합성상(가열 후)	KS F 4911	건	156,670	12	
	접합성상(알칼리)	KS F 4911	건	25,620	12	
	치수	KS F 4911	건	8,410	5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인장강도(무처리)	KS F 4917	건	29,860	5	
	신장률(무처리)	KS F 4917	건	31,260	5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인장강도(가열 후)	KS F 4917	건	154,680	12	
	신장률(가열 후)	KS F 4917	건	189,610	12	
	인장강도(알칼리)	KS F 4917	건	31,690	12	
	신장률(알칼리)	KS F 4917	건	33,080	12	
	인열성능	KS F 4917	건	30,340	5	
	접합성능	KS F 4917	건	64,400	12	
	내열성능	KS F 4917	건	18,330	5	
	치수안정성	KS F 4917	건	150,790	16	
	내피로성능	KS F 4917	건	73,800	13	
	내움폭패임성능	KS F 4917	건	16,600	5	
	굴곡성능(무처리)	KS F 4917	건	30,870	5	
	굴곡성능(가열 후)	KS F 4917	건	101,320	12	
	치수(두께)	KS F 4917	건	9,610	5	
수팽창성벤토 나이트 방수시트	단위면적무게	KS M 3736	건	17,190	6	
	벤토나이트 혼합물 부피팽창률	KS M 3736	건	11,830	8	
	낙구충격성	KS M 3736	건	15,640	7	
	인장강도	KS M 3736	건	23,380	6	
	신장률	KS M 3736	건	23,380	6	
	인열강도	KS M 3736	건	23,380	6	
	누수(정수압)	KS M 3736	건	19,890	6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부착강도	KS F 4715	건	253,530	34	
	흡수량	KS F 4918	건	312,430	27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내잔갈림성	KS F 4918	건	263,930	18	
	압축강도	KS F 4918	건	182,320	18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밀도	KS M 3808	건	12,000	4	
	흡수량	KS M 3808	건	15,270	5	
	연소성	KS M 3808	건	100,980	12	
	압축강도	KS M ISO 844	건	16,950	4	
	초기열전도율	KS L 9016	건	39,440	5	
	굴곡강도	KS M 3808	건	21,700	4	
하수슬러지	발열량	KS E 3707	건	18,970	7	
내화뿔철재	밀도	KS F 2901	건	12,290	3	
	부착강도	KS F 2902	건	82,060	5	
	부착강도(현장시험)	KS F 2902	건	164,190	7	
	부착강도(현장시험 1지점 추가시)	KS F 2902	건	39,790	7	
수성도료	1,2종/냉동 안정성	KS M 6010	건	90,520	11	
	1종/적신도막은폐율	KS M 6010	건	52,980	5	
	1,2종/주도	KS M 5000-2122	건	12,150	6	
	1,2종/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3,990	4	
	1,2종/확산반사율	KS M 5000-3121	건	13,660	5	
	1,2종/광택	KS M ISO 2813	건	12,170	5	
	1,2종/은폐율	KS M ISO 2814	건	16,500	5	
	1,2종/내세척성	KS M 5000-3351	건	21,860	10	
	1,2종/내알칼리성	KS M 6010	건	21,120	18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2종(1급)/저장안정성	KS M 5000-2031	건	178,230	18	
	2종/냄새	KS M 5000-2041	건	7,340	3	
	1,2종/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7,430	3	
	3종/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3,830	4	
	3종/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7,430	3	
	3종/내수성	KS M 6010	건	10,210	8	
	3종/내알칼리성	KS M 6010	건	21,120	18	
유성도료	1종/광택	KS M ISO 2813	건	12,170	5	
	1종/은폐율	KS M ISO 2814	건	16,500	5	
	1종/확산반사율	KS M 5000-3121	건	14,140	5	
	1종/건조시간	KS M 5000-2511	건	9,110	4	
	1종/내굴곡성	KS M 5000-3331	건	7,330	5	
	2종/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3,980	4	
	2종/용기내상태	KS M 6020	건	7,430	3	
	2종/은폐율	KS M ISO 2814	건	16,500	5	
	2종/광택	KS M ISO 2813	건	12,170	5	
	2종/확산반사율	KS M 5000-3121	건	14,140	5	
	3종/내수성	KS M 6020	건	11,130	8	
	3종/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7,430	3	
	3종/광택	KS M ISO 2813	건	12,170	5	
	3종/은폐율	KS M ISO 2814	건	16,500	5	
	3종/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4,23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3종/내굴곡성	KS M 6020	건	7,330	5	
	4종/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5,250	4	
	4종/비휘발 전색제분	KS M 5000-2112	건	16,050	5	
	4종/은폐율	KS M ISO 2814	건	16,500	5	
	4종/광택	KS M ISO 2813	건	12,170	5	
	4종/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7,430	3	
	4종/재도장	KS M 5000-2511	건	7,370	5	
방청도료	1종/안료분	KS M 5000-2111	건	17,120	5	
	1종/비휘발전색제분	KS M 5000-2112	건	18,120	5	
	1종/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7,430	3	
	2종/내수성	KS M 6030	건	13,790	8	
	2종/안료분	KS M 5000-2111	건	17,120	5	
	2종/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6,020	4	
	2종/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7,430	3	
	3종/내수성	KS M 6030	건	13,790	8	
	3종/안료분	KS M 5000-2111	건	17,120	5	
	3종/비휘발전색제분	KS M 5000-2112	건	16,230	5	
	3종/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7,430	3	
	4종/내충격성	KS M 6030	건	8,690	9	
	4종/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4,130	4	
	4종/안료분	KS M 5000-2111	건	17,120	5	
	4종/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7,430	3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4종/가사시간	KS M 5000-2411	건	8,770	4	
	4종/내굴곡성	KS M 5000-3331	건	7,330	5	
	5종/내굴곡성	KS M 5000-3331	건	7,330	5	
	5종/안료분	KS M 5000-2111	건	17,120	5	
	5종/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4,130	4	
	5종/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7,430	3	
	6종/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7,430	3	
	6종/내굴곡성	KS M 5000-3331	건	7,330	5	
	6종/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4,130	4	
래커도료	1,2,3종/내충격성	KS M 6040	건	11,840	9	
	1,2,3종/내수성	KS M 6040	건	11,740	8	
	1,2,3종/내굴곡성	KS M 5000-3331	건	9,030	5	
	1,2,3종/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0,980	4	
	1,2,3종/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7,430	3	
	4,5종/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0,980	4	
	4,5종/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7,430	3	
	6,7종/가열 안정성	KS M 6040	건	26,640	8	
	6,7종/은폐율	KS M ISO 2814	건	13,760	5	
	6,7종/광택	KS M ISO 2813	건	10,300	5	
	6,7종/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0,980	4	
	6,7종/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7,430	3	
바니시	건조시간	KS M 5000-2511	건	8,800	4	
	인화점	KS M 5000-6011	건	26,380	4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스키닝	KS M 5000-2021	건	37,410	5	
	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4,130	4	
도료용 희석제	인화점	KS M 5000-6011	건	9,960	4	
	점적시험	KS M 5000-6051	건	7,290	4	
다채무늬도료	도료/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7,430	3	
	도료/주도(KU)	KS M 5000-2122	건	13,750	6	
	도료/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1,660	4	
	도막/내알칼리성	KS M ISO 2812-1	건	11,320	18	
	도막/내세척성	KS M 6090	건	17,840	10	
굵도리 모르타르면 페인트	주도(KU)	KS M 5000-2122	건	7,650	6	
	연화도	KS M 5000-2141	건	7,450	4	
	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1,200	4	
	붓 작업성	KS M 5000-2411	건	4,970	4	
	광택	KS M ISO 2813	건	9,220	5	
낙서방지용 페인트	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4,970	3	
	안료분(%)	KS M 5000-2111	건	17,860	5	
	주도(KU)	KS M 5000-2122	건	7,650	6	
	연화도(N.S)	KS M 5000-2141	건	7,450	4	
	비휘발분(%)	KS M ISO 3251	건	11,200	4	
	붓 작업성	KS M 5000-2411	건	4,970	4	
	광택(60°)	KS M ISO 2813	건	9,220	5	
반광택방청 에나멜	내수성	KS M 5962	건	17,900	8	
	내휘발유성	KS M 5962	건	18,820	13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 리 기간(일)	비고
	비휘발분	KS M 5000-2113	건	14,130	4	
	안료분	KS M 5000-2111	건	15,200	5	
	점도	KS M 5000-2123	건	13,660	4	
	비중	KS M 5000-2131	건	7,470	4	
	인화점	KS M 5000-6011	건	9,440	4	
	건조시간	KS M 5000-2511	건	9,880	4	
	광택	KS M 5000-3312	건	9,220	5	
	연화도	KS M 5000-2141	건	7,390	4	
	은폐율	KS M 5000-3111	건	10,760	5	
	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7,430	3	
	붓 작업성	KS M 5000-2411	건	7,440	4	
	냄새	KS M 5000-2041	건	7,430	3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내수성	KS M 5318	건	18,110	8	
	안료분	KS M 5000-2111	건	31,060	5	
	확산반사율	KS M 5000-3121	건	14,190	5	
	주도	KS M 5000-2122	건	18,390	6	
	연화도	KS M ISO 1524	건	13,170	4	
	용기내상태	KS M 5000-2011	건	10,040	3	
	내굴곡성 시험	KS M 5000-3331	건	11,870	5	
	은폐율	KS M ISO 2814	건	12,210	5	
아스팔트	공용성등급	KS F 2389	건	1,000,000	3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9호(2005.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43호(2005.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4호(2008.10.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8호(2009.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5호(2009.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0호(2010.1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호(2011.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2호(2011. 6.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4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3호(2012.3.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1호(2012.5.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4호(2012.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0호(2012.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6호(2013.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5호(2014.1.1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5호(2014.4.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9호(2014.5.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31호(2014.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5호(2015.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8호(2015.12.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3호(2016.3.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5호(2016.8.25.) 등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가재울 재정비촉진 지구	주거 지형	서대문구 남가좌동· 북가좌동 일대	1,077,769.39	증)1,235.80	1,079,005.19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북가좌동·남가좌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확정측량(가재울4재정비촉진구역)에 의한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없음

- 기준연도 : 2003년
- 목표연도 : 2019년

3. 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 없음
-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자족적 도시기능의 도입
 -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 친화 뉴타운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1) 주택건설용지 : 767,605.49m²

(2) 상업업무용지 : 98,600.00m²

(3) 공공시설용지 : 212,799.70m²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77,769.39	증)1,235.80	1,079,005.19	100.0	
주택건 설용지	소 계	768,215.69	감)610.20	767,605.49	71.2	
	단독주택	12,601.00	-	12,601.00	1.2	
	공동주택	687,777.19	감)629.20	687,147.99	63.7	
	근린생활	67,837.50	증)19.00	67,856.50	6.3	
상업업 무용지	소 계	98,600.00	-	98,600.00	9.1	
	상업업무복합	98,600.00	-	98,600.00	9.1	
공공시 설용지	소 계	210,953.70	증)1,846.00	212,799.70	19.7	
	도 로	103,128.65	증)1,652.95	104,781.60	9.7	
	공공청사	2,969.70	증)39.40	3,009.10	0.3	
	공원녹지	64,406.70	증)221.80	64,628.50	6.0	
	학 교	33,349.70	감)100.10	33,249.60	3.1	
	도 서 관	3,486.80	-	3,486.80	0.3	
	사회복지	2,200.00	-	2,200.00	0.2	
	공공공지	1,412.15	증)31.95	1,444.10	0.1	
	폐기물처리시설	(5,064.00)	증)44.50	(5,108.50)	(0.5)	

※ () 부분은 근린공원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면적임

2) 인구·주택수용 계획 : 46,705인/19,556세대 (변경)

구분	면적(㎡)		인구수 (인)	가구수	분양	임대
	기정	변경				
총계	1,077,769.39	1,079,005.19	46,705	19,556	16,368	3,188
가재울1재정비촉진구역	19,782.09		892	362	272	90
가재울2재정비촉진구역	26,116.50		1,138	473	373	100
가재울3재정비촉진구역	242,710.00		7,871	3,293	2,664	629
가재울4재정비촉진구역	283,401.70	284,637.50	10,277	4,300	3,550	750
가재울5재정비촉진구역	52,867.70		2,383	997	827	170
가재울6재정비촉진구역	48,084.40		2,419	1,047	869	178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78,640.00		3,240	1,350	1,080	270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13,248.00		654	283	237	46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58,318.00		3,099	1,287	1,287	-
준 치	254,601.00		14,732	6,164	5,209	955

3) 교육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3,418.35	감)28.75	43,389.6	
교육 시설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계	33,349.7	감)100.1	33,249.6	
	학교	초등학교	북가좌동 80-110 일원	7,438.0	-	7,438.0	
	학교	초등학교	남가좌동 164-1 일원	11,167.0	감)100.1	11,066.9	
	학교	중학교	북가좌동 145-106 일원	7,256.1	-	7,256.1	
	학교	고등학교	북가좌동 144-706 일원	7,488.6	-	7,488.6	
문화· 체육 시설등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계	10,068.65	증)71.35	10,140.0	
	공공청사	동사무소	북가좌동 144-343 일원	1,004.7	-	1,004.7	
	공공청사	동사무소	남가좌동 119-17 일원	935.0	감)0.2	934.8	
	공공청사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남가좌동 130-10 일원	1,030.0	증)39.6	1,069.6	
	도서관	공공도서관	북가좌동 119-3 일원	3,486.8	-	3,486.8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남가좌동 138-3 일원	1,601.0	-	1,601.0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남가좌동 184-10 일원	599.0	-	599.0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남가좌동 289-54 일원	-	-	-	가재울8구역 건축물 내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도 : 어린이집 -면적 : 500㎡이상 (전용면적+공용면적)
	공공공지	공공공지	남가좌동 378 일원	1,412.15	증)31.95	1,444.1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4,406.70	증)221.80	64,628.50	
생활권 공원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계	51,067.00	증)247.70	51,314.70	
	공원	근린공원	북가좌동 105-8 일원	15,421.20	증)44.50	15,465.7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75-5 일원	10,500.30	-	10,500.30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168-32 일원	6,652.80	-	6,652.8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379-3 일원	1,175.50	-	1,175.5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23 일원	9,385.00	증)123.00	9,508.00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72-126 일원	5,240.00	-	5,240.0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274-26 일원	1,643.20	증)123.10	1,766.30	
	공원	소공원	남가좌동 152-19 일원	1,049.00	감)42.90	1,006.10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계	13,339.70	감)25.90	13,313.80	
녹지	녹지	완충녹지	북가좌동 149-60 일원	4,480.60	-	4,480.60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124-215 일원	1,346.00	감)53.50	1,292.50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115-34 일원	418.00	감)6.40	411.60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76-145 일원	1,108.00	증)34.00	1,142.00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362-3 일원	1,318.30	-	1,318.30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100-45 일원	1,221.90	-	1,221.9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37-250 일원	681.40	-	681.4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41-49 일원	374.00	-	374.0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380-1 일원	936.50	-	936.5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77-4 일원	1,455.00	-	1,455.00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계	13,339.70	감)25.90	13,313.8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77-4 일원	1,455.00	-	1,455.00	

5)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변경 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도로	444	성산동 2-20	홍은동 3-17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1	20~26	보조간선도로	1,313	남가좌동 105-47	북가좌동 362-7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1	2	20~27	집산도로	1,207	수색로	남가좌동 352-27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1	62	20	집산도로	2,750	연희동 3-17	신사동	일반도로	-	건고2493 (96.6.21)	
기정	중로	2	1	20~21	집산도로	401	모래내길	남가좌동 275-32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77	수색로	중로(뉴) (2류-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5	21	집산도로	706	남가좌동 275-43	북가좌동 421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521	북가좌동 108-1	북가좌동 82-1	일반도로	-	서고2005-243 (2005.8.11)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160	남가좌동 169-2	남가좌동 235-345	일반도로	-	서고2008-374 (2008.10.23)	
기정	중로	2	8	17~19	집산도로	440	남가좌동 80-25	남가좌동 222-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240	북가좌동 144-53	북가좌동 149-23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3	1	12~12.5	집산도로	435	남가좌동 268-33	남가좌동 142-2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16	남가좌동 293-94	남가좌동 288-8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1	1	10~13	국지도로	128	남가좌동 268-3	남가좌동 288-4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71	남가좌동 152-59	남가좌동 152-58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99	남가좌동 267-1	남가좌동 산33-2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4	10	국지도로	150	남가좌동 256-21	남가좌동 260-410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5	11	집산도로	118	남가좌동 164-12	남가좌동 155-45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91	북가좌동 75-89	북가좌동 361-9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94	북가좌동 417	북가좌동 418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280	중로(뉴) (1류-3)	북가좌동 362-2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36	남가좌동 262-241	남가좌동 262-449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8	국지도로	288	북가좌동 304-37	북가좌동 301-2	일반도로	-	서고2012-144 (2012.6.7)	
기정	소로	3	245	6~8	국지도로	138	남가좌동 188	남가좌동 214-2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42	중로(뉴) (1류-3)	소로(뉴) (2류-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40	북가좌동 362-2도	응암로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4	남가좌동 115-60	남가좌동 137-5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3		6	국지도로	73	북가좌동 100-336	북가좌동 303-40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3	11	4	국지도로	10	남가좌동 76-19	남가좌동 116-4	일반도로	-	서고2015-305 (2015.10.1)	-
기정	소로	3	12	4	국지도로	19	남가좌동 124-607	남가좌동 124-609	일반도로	-	서고2015-305 (2015.10.1)	-

6) 경관계획 (변경 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㉓-8장, 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합계				764,850.39	766,086.19		
기정	주택 재개발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75번지 일대	19,782.09			
기정	주택 재개발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40번지 일대	26,116.50			
기정	주택 재개발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242,710.00			
변경	주택 재개발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283,401.70	284,637.50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기정	주택 재개발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52,867.70			
기정	주택 재개발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24번지 일대	48,084.40			
기정	주택 재개발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8,640.00			
기정	도시환경정 비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13,248.00			

8)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시행자	비고
					기정	변경		
사업방식			합계		764,850.39	766,086.19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75번지 일대	19,782.09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40번지 일대	26,116.5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242,710.00		민간(조합) 시행	
변경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283,401.70	284,637.5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52,867.7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24번지 일대	48,084.4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8,640.0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13,248.00		민간(조합) 시행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

(1) 용도지역계획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1,077,769.39	증)1,235.80	1,079,005.19	100.0	
주거지역	소계	1,051,329.39	증)1,235.80	1,052,565.19	97.5	
	제1종일반주거지역	21,439.00	-	21,439.00	2.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9,120.80	증)2,311.40	141,432.20	13.1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406,518.84	증)377.50	406,896.34	37.7	
	제3종일반주거지역	441,817.35	감)1,485.10	440,332.25	40.8	
	준주거지역	42,433.40	증)32.00	42,465.40	3.9	
상업지역	소계	26,440.00	-	26,440.00	2.5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6,440.00	-	26,440.00	2.5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2) 재정비촉진구역별 용도지역계획 (변경 없음)

- ① 가재울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② 가재울2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③ 가재울3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④ 가재울4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83,401.70	증)1,235.80	284,637.5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4,257.60	증)2,311.40	36,569.00	12.1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21,251.00	증)377.50	121,628.50	42.8	
제3종일반주거지역	126,506.70	감)1,485.10	125,021.60	44.6	
준주거지역	1,386.40	증)32.00	1,418.40	0.5	

- ⑤ 가재울5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⑥ 가재울6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⑦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⑧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구역명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기준	상한		평균층수/최고층수	최고높이(m)
기정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6층이하/20층이하	62이하
기정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6층이하/20층이하	62이하
기정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6층이하/35층이하	105.8이하
기정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7층이하/33층이하	102이하
기정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00	50	18층이하/25층이하	75이하
기정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00	50	18층이하/25층이하	75이하
기정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255	50	- / 26층이하	80이하
기정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오피스텔/판매시설	300(허용340)	400	60	- / 27층이하	85이하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1) 기반시설 확보율 (변경)

구역명	면적(㎡)	기반시설면적(㎡)					비고
		계획기반시설①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	
가재울1재정비촉진구역	19,782.09	5,043.90	-	-	-	5,043.90(25.50)	
가재울2재정비촉진구역	26,116.50	5,373.20	-	-	-	5,373.20(20.57)	
가재울3재정비촉진구역	242,710.00	74,800.30	23,172.10	14,469.40	-	37,158.80(15.31)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83,401.70	71,622.90	-	-	-	71,622.90(25.27)	
	변경 284,637.50	73,468.90				73,468.90(25.81)	
가재울5재정비촉진구역	52,867.70	10,902.50	2,336.60	1,562.90	599.00	6,404.00(12.11)	
가재울6재정비촉진구역	48,084.40	9,994.90	1,062.00	870.00	-	8,062.90(16.77)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78,640.00	21,026.00	3,172.00	5,963.00	-	11,891(15.12)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13,248.00	3,378.00	1,857.80			1,520.20(11.47)	
총계	기정 764,850.39	202,141.70	31,600.50	22,865.30	599.00	147,076.90(19.23)	
	변경 766,086.19	203,987.70				148,922.90(19.44)	

(2)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시 설 명			개소	규모	위치	비고
도로	대로3류		1	폭 : 25m, 연장 : 444m	성산동2-20~흥은동3-17	가재울 재정비 촉진 지구내
	중로1류		2	폭 : 20~27m, 연장 : 2,293m	모래내~응암로	
	중로2류		6	폭 : 15m, 연장 : 2,631m	수색로~북가좌동115-103	
	중로3류		1	폭 : 12~12.5m, 연장 : 380m	중로2류5~수색로	
	소로1류		1	폭 : 10~13m, 연장 : 158m	중로1류-1~남가좌동377-5	
	소로2류		10	폭 : 7~14m, 연장 : 1,649m	남가좌동152-58~남가좌동152-59	
	소로3류		6	폭 : 4~6m, 연장 : 357m	중로1류-3~소로2류-7	
공원 • 녹지	기정 변경	근린공원	1	15,421.2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15,465.70㎡		
	기정 변경	어린이공원	6	34,596.8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34,842.90㎡		
	기정 변경	소공원	1	1,049.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1,006.10㎡		
	경관녹지		6	5,987.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기정 변경	완충녹지	4	7,352.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7,326.70㎡			
학교	기정 변경	초등학교	2	18,605.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18,504.90㎡		
	중학교		1	7,256.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고등학교		1	7,488.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 시설	기정 변경	공공청사복합화 (동사무소)	2	1,939.7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1,939.50㎡		
	기정 변경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1	1,030.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1,069.60㎡		
	도서관		1	3,486.8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3	2,200.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정 변경	공공공지	3	1,412.15㎡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1,444.10㎡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 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㉓-15장, 임대주택 건설)에 명시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구역수	대상지역	비고
기정	1단계 (2004 ~ 2008년)	2개	가재울 1, 2촉진구역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함
기정	2단계 (2007 ~ 2015년)	3개	가재울 4, 5, 6촉진구역	
기정	3단계 (2010 ~ 2019년 이후)	2개	가재울 7,8촉진구역	자율정비구역 및 존치지역

14)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 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㉓-18장, 광고물 관리계획)에 명시

1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㉓-19장, 폐기물처리계획)에 명시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가.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없음

나.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없음

다.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없음

라.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서대문구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283,401.70	증)1,235.80	284,637.50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3,401.70	증)1,235.80	284,637.50	100.00	－
정비기반시설		71,622.90	증)1,846.00	73,468.90	25.81	－
	도로	37,065.55	증)1,652.95	38,718.50	13.60	－
	공원	17,141.20	증) 247.70	17,388.90	6.11	－
	녹지	2,872.00	감)25.90	2,846.10	1.00	－
	공공공지	1,412.15	증)31.95	1,444.10	0.51	－
	학교	11,167.00	감)100.10	11,066.90	3.89	－
	공공청사	1,965.0	증)39.40	2,004.40	0.70	－
	폐기물처리시설	5,064.00	증)44.50	(5,108.50)	(1.79)	－
택지(획지)		211,778.80	감)610.20	211,168.60	74.19	－
	택지1	114,242.80	감)222.60	114,020.20	40.06	공동주택
	택지2	61,138.00	증)25.40	61,163.40	21.49	공동주택
	택지3	14,612.80	증)47.90	14,660.70	5.15	공동주택
	택지4	8,346.00	감)460.70	7,885.30	2.77	공동주택
	택지5	3,307.00	감)19.20	3,287.80	1.16	공동주택
	택지6	623.00	감)2.20	620.80	0.22	종교부지
	택지7	457.00	증)6.30	463.30	0.16	종교부지
	택지8	555.00	감)39.70	515.30	0.18	보류지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택지9	2,065.00	증)84.00	2,149.00	0.75	종교부지
택지10	551.00	증)3.60	554.60	0.19	종교부지
택지11	1,101.00	증)109.20	1,210.20	0.43	종교부지
택지12	408.00	증)6.00	414.00	0.15	주유소
택지13	1,108.20	감)50.30	1,057.90	0.37	유치원
택지14	788.00	감)40.20	747.80	0.26	보류지
택지15	626.00	감)30.20	595.80	0.21	보류지
택지16	451.00	증)1.80	452.80	0.16	보류지
택지17	187.00	감)1.20	185.80	0.07	보류지
택지18	800.00	감)24.70	775.30	0.27	종교부지
택지19	412.00	감)3.40	408.60	0.14	보류지

나) 용도지역계획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83,401.70	증)1,235.80	284,637.5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4,257.60	증)2,311.40	36,569.00	12.9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21,251.00	증)377.50	121,628.50	42.7	-
제3종일반주거지역	126,506.70	감)1,485.10	125,021.60	43.9	-
준주거지역	1,386.40	증)32.00	1,418.40	0.5	-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 도로	444	성산동 2-20	홍은동 3-17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1	20~26	"	1,313 (736)	남가좌동 105-4	북가좌동 99-18	"	-	-	-
기정	중로	1	2	20	집산 도로	1,207 (544)	남가좌동 268-1	남가좌동 185-2	"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1	20~21	"	401	남가좌동 124-329	남가좌동 275-32	"	-	-	-
기정	중로	2	5	21	"	706 (127)	남가좌동 275-52	남가좌동 275-32	"	-	-	-
기정	중로	2	8	17~19	"	440 (2)	남가좌동 80-25	남가좌동 222-2	"	-	-	-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437 (38)	남가좌동 268-33	남가좌동 142-2	"	-	-	-
기정	중로	3	2	12	"	216 (43)	남가좌동 293-94	남가좌동 288-8	"	-	-	-
기정	소로	1	1	10	"	131 (105)	남가좌동 268-3	남가좌동 288-4	"	-	-	-
기정	소로	2	2	8	"	171 (14)	남가좌동 152-59	남가좌동 152-58	"	-	-	-
기정	소로	2	4	10	"	150	남가좌동 256-21	남가좌동 260-410	"	-	-	-
기정	소로	2	5	11	"	118	남가좌동 164-12	남가좌동 155-45	"	-	-	-
기정	소로	3	4	6	"	84	남가좌동 115-60	남가좌동 137-5	"	-	-	-
기정	소로	3	11	4	"	10	남가좌동 76-19	남가좌동 116-4	"	-	-	-
기정	소로	3	12	4	"	19	남가좌동 124-607	남가좌동 124-609	"	-	-	-

※ ()안의 사항은 가재울4구역내 사항임.

나) 공원 결정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근린공원	북가좌동 115-97 일원	5,064.00	증)44.50	5,108.50	-
변경	공원	어린이공원1	남가좌동 123 일원	9,385.00	증)123.00	9,508.00	-
변경	공원	어린이공원2	남가좌동 274-26 일원	1,643.20	증)123.10	1,766.30	-
변경	공원	소공원1	남가좌동 152-19 일원	1,049.00	감)42.90	1,006.10	-

다) 녹지 결정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녹지	완충녹지1	남가좌동 76-145일원	1,108.00	증) 34.00	1,142.00	-
변경	녹지	완충녹지2	남가좌동 115-34일원	418.00	감) 6.40	411.60	-
변경	녹지	완충녹지3	남가좌동 124-215일원	1,346.00	감) 53.50	1,292.50	-

라) 공공공지 결정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공지	공공공지1	남가좌동378 일원	1,056.40	증)32.00	1,088.40	
기정		공공공지2	남가좌동378 일원	330.00	-	330.00	
변경		공공공지3	남가좌동 116-4일원	25.75	감)0.05	25.70	

마) 학교 결정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초등학교	남가좌동 164-1 일원	11,167.00	감)100.10	11,066.90	-

바) 공공청사 결정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	동사무소	남가좌동 119-17 일원	935.00	감) 0.20	934.80	-
변경	공공청사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남가좌동 130-10 일원	1,030.00	증) 39.60	1,069.60	-

사)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북가좌동 115-97 일원	5,064.00	증)44.50	5,108.50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법적근거	면적(㎡)	비고
기정	근린생활시설	가재울4 재정비 촉진구역내	• 세대당 6㎡ 이하 • $4,300 \times 6 = 25,800$	13,859.248	적합
기정	관리사무소		• 50세대이상 설치 • $10 + (4,300 - 50) \times 0.05 = 222.5$ 이상	638.703	적합
기정	어린이놀이터		• 100세대이상 설치 • $300 + (4,300 - 100) \times 1 = 4,500$	5,835.000	적합
기정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이상 설치 • $300 + ((4,300 - 500) / 200) \times 150 = 2,729.25$	3,110.000	적합
기정	경로당		• 100세대이상 설치 • $40 + (4,300 - 150) \times 0.1 = 455$	689.490	적합
기정	주민공동시설		• 300세대이상 설치 • $50 + (4,300 - 300) \times 0.1 = 450$	6,664.240	적합
기정	보육시설		• 500세대이상 설치 • $4.29인 \times 40인 = 171.6$	573.188	적합
기정	문고시설		• 300세대이상 설치 • 33㎡이상	326.171	적합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계획(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변경									
변경	가재울4 재정비 촉진구역	283,401.7	284,637.5	-	-	서대문구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1,636	1	-	1,635	-	-

나) 건축시설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 치	면적(㎡)		건 축 계 획						
	명 칭	면적(㎡)				건폐율 (%)	상한용적률 (%)	층수 / 높이 (평균층수)	연면적(㎡)	주된용도				
		기전	변경											
변경	가 재 율 제 4 재 정 비 축 진 구 역	283,401.7	284,637.5	택지1	남가좌동 124-425	114,242.8	114,020.2	30이하	250이하	33층이하 102m이하	460,0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택지2	남가좌동 243-2	61,138.0	61,163.4	〃	230이하	29층이하 평균17층이하 89m이하	250,0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택지3	남가좌동 76-134	14,612.8	14,660.7	〃	195이하		60,0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택지4	남가좌동 289-73	8,346.0	7,885.3	40이하	185이하		30,0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택지5	남가좌동 274-1	3,307.0	3,287.8	〃	190이하		20,0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합계		201,646.6	201,017.4	30이하	235이하		-	760,000이하	-	
변경				택지6	남가좌동 258-8	623.0	620.8	해당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적용						종교부지
변경				택지7	남가좌동 288-29	457.0	463.3	〃						종교부지
변경				택지8	남가좌동 141-16	555.0	515.3	〃						보류지5
변경				택지9	남가좌동 124-139	2,065.0	2,149.0	〃						종교부지
변경				택지10	남가좌동 76-159	551.0	554.6	〃						종교부지
변경				택지11	남가좌동 80-55	1,101.0	1,210.2	〃						종교부지
변경				택지12	남가좌동 80-26	408.0	414.0	〃						주유소
변경				택지13	남가좌동 152-54	1,108.2	1,057.9	〃						유치원
변경				택지14	남가좌동 150-19	788.0	747.8	〃						보류지1
변경				택지15	남가좌동 141-12	626.0	595.8	〃						보류지2
변경				택지16	남가좌동 185-2	451.0	452.8	〃						보류지3
변경				택지17	남가좌동 185-2	187.0	185.8	〃						보류지4
변경				택지18	남가좌동 124-272	800.0	775.3	〃						종교부지
변경				택지19	남가좌동 80-26	412.0	408.6	〃						보류지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기정)				○ 건설비용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80%이상 : 87.27% 적용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합계		-		4,300		100.00%				
				전용면적 85㎡이하		39㎡		726		16.88%				
						49㎡		16		0.37%				
						59㎡		489		11.37%				
						84㎡		2,522		58.65%				
				전용면적 85㎡초과		120㎡		423		9.84%				
151㎡		64				1.49%								
176㎡		60				1.40%								
				- 임대주택 전세세대수의 17%이상 : 17.44%적용										
비 고				○ 상가건축계획(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수립된 사항이므로, 그 효력은 사업시행인가 후 발효 됨.										

(6)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	가재울뉴타운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가재울 4구역내	-	-	726세대(전체 16.88%)	(96.80%)	40㎡이하	
			16세대(전체 0.37%)	(2.13%)	40㎡~50㎡이하	
			8세대(전체 0.19%)	(1.07%)	50㎡~60㎡이하	
			전체 : 750세대(17.44%)		-	

마.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없음

바.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없음

사.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없음

아.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 없음

17)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서대문구 남가좌동 · 북가좌동 일대	1,077,769.39	증)1,235.80	1,079,005.19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1,077,769.39	증)1,235.80	1,079,005.19	100.0	
주거지역	소계	1,051,329.39	증)1,235.80	1,052,565.19	97.5	
	제1종일반주거지역	21,439.00	-	21,439.00	2.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9,120.80	증)2,311.40	141,432.20	13.1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406,518.84	증)377.50	406,896.34	37.7	
	제3종일반주거지역	441,817.35	감)1,485.10	440,332.25	40.8	
	준주거지역	42,433.40	증)32.00	42,465.40	3.9	
상업지역	소계	26,440.00	-	26,440.00	2.5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6,440.00	-	26,440.00	2.5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미관지구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일대	54,900	-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남가좌동104, 105번지 일대	58,318.0	서고제1997-25호 (1997.2.5)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시 설 명		개소	규모	위치	비고	
도로	대로3류		1	폭 : 25m, 연장 : 444m	성산동2-20~홍은동3-17	가재울 재정비 촉진 지구내
	중로1류		2	폭 : 20~27m, 연장 : 2,293m	모래내~응암로	
	중로2류		6	폭 : 15m, 연장 : 2,631m	수색로~북가좌동115-103	
	중로3류		1	폭 : 12~12.5m, 연장 : 380m	중로2류5~수색로	
	소로1류		1	폭 : 10~13m, 연장 : 158m	중로1류-1~남가좌동377-5	
	소로2류		10	폭 : 7~14m, 연장 : 1,649m	남가좌동152-58~남가좌동152-59	
	소로3류		6	폭 : 4~6m, 연장 : 357m	중로1류-3~소로2류-7	
공원 • 녹지	기정	근린공원	1	15,421.2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변경		15,465.70㎡			
	기정	어린이공원	6	34,596.8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변경		34,842.90㎡			
	기정	소공원	1	1,049.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변경		1,006.10㎡			
	경관녹지		6	5,987.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기정	완충녹지	4	7,352.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변경	7,326.70㎡					
학교	기정	초등학교	2	18,605.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변경		18,504.90㎡			
	중학교		1	7,256.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고등학교		1	7,488.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 시설	기정	공공청사복합화 (동사무소)	2	1,939.7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변경		1,939.50㎡			
	기정	소방파출소	1	1,030.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변경		1,069.60㎡			
	도서관		1	3,486.8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3	2,200.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정	공공공지	3	1,412.15㎡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4구역)	
	변경		1,444.10㎡			

(1)교통시설 (변경없음)

가)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 도로	444	성산동 2-20	홍은동 3-17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1	20~26	보조간선 도로	1,313	남가좌동 105-47	북가좌동 362-7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1	2	20~27	집산도로	1,207	수색로	남가좌동 352-27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1	62	20	집산도로	2,750 (115)	연희동 3-17	신사동	일반도로	-	건고2493 (96.6.21)	
기정	중로	2	1	20~21	집산도로	401	모래내길	남가좌동 275-32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77	수색로	중로(뉴) (2류-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5	21	집산도로	706	남가좌동 275-43	북가좌동 421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521	북가좌동 108-1	북가좌동 82-1	일반도로	-	서고2005-243 (2005.8.11)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160	남가좌동 169-2	남가좌동 235-345	일반도로	-	서고2008-374 (2008.10.23)	
기정	중로	2	8	17~19	집산도로	440 (2)	남가좌동 80-25	남가좌동 222-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240	북가좌동 144-53	북가좌동 149-23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3	1	12~12.5	집산도로	435 (38)	남가좌동 268-33	남가좌동 142-2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16 (43)	남가좌동 293-94	남가좌동 288-8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1	1	10~13	국지도로	128 (105)	남가좌동 268-3	남가좌동 288-4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71 (14)	남가좌동 152-59	남가좌동 152-58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99	남가좌동 267-1	남가좌동 산33-2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4	10	국지도로	150	남가좌동 256-21	남가좌동 260-410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5	11	집산도로	118	남가좌동 164-12	남가좌동 155-45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91	북가좌동 75-89	북가좌동 361-9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94	북가좌동 417	북가좌동 418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280	중로(뉴) (1류-3)	북가좌동 362-2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36	남가좌동 262-241	남가좌동 262-449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8	국지도로	288	북가좌동 304-37	북가좌동 301-2	일반도로	-	서고2012-144 (2012.6.7)	
기정	소로	3	245	6~8	국지도로	138	남가좌동 188	남가좌동 214-2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42	중로(뉴) (1류-3)	소로(뉴) (2류-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40	북가좌동 362-2도	응암로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4	남가좌동 115-60	남가좌동 137-5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3		6	국지도로	73	북가좌동 100-336	북가좌동 303-40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3	11	4	국지도로	10	남가좌동 76-19	남가좌동 116-4	일반도로	-	서고2015-305 (2015.10.1)	-
기정	소로	3	12	4	국지도로	19	남가좌동 124-607	남가좌동 124-609	일반도로	-	서고2015-305 (2015.10.1)	-

※ ()안의 사항은 가재울4구역내 사항임.

(2) 공간시설(변경)

가)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공원	근린공원	북가좌동 105-8 일원	15,421.20	증)44.50	15,465.7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 10,357.2㎡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 5,106.9㎡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5,106.9㎡)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75-5 일원	10,500.30	-	10,500.30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 114.0㎡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 2,987.8㎡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 5,854.7㎡ 존치구역(삼성APT기부채납) : 1,543.8㎡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168-32 일원	6,652.80	-	6,652.8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379-3 일원	1,175.50	-	1,175.5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 274.6㎡ 삼성레미안APT(존치) : 900.9㎡
변경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23 일원	9,385.00	증)123.00	9,508.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75-126 일원	5,240.00	-	5,240.00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변경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274-26 일원	1,643.20	증)123.10	1,766.3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변경	공원	소공원	남가좌동 152-19 일원	1,049.00	감)42.90	1,006.1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나) 녹지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녹지	완충녹지	북가좌동 149-60 일대	4,480.60	-	4,480.6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변경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124-215 일대	1,346.00	감)53.50	1,292.5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변경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115-34 일대	418.00	감)6.40	411.6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변경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76-145 일대	1,108.00	증)34.00	1,142.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362-3 일대	1,318.30	-	1,318.30	존치구역 : 1,318.3㎡
기정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100-45 일대	1,221.90	-	1,221.90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37-250 일대	681.40	-	681.40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41-49 일대	374.00	-	374.00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 308㎡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 66㎡
기정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380-1 일대	936.00	-	936.00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74-3 일대	1,455.00	-	1,455.00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다)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공공 공지	공공공지1	남가좌동378 일원	1,056.40	증)32.00	1,088.4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공공지2	남가좌동378 일원	330.00	-	330.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변경		공공공지3	남가좌동116-4 일원	25.75	감)0.05	25.7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학교	초등학교	북가좌동 80-110 일원	7,438.00	-	7,438.00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변경	학교	초등학교	남가좌동 164-1 일원	11,167.00	감)100.10	11,066.9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학교	중학교	북가좌동 145-106 일원	7,256.10	-	7,256.1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학교	고등학교	북가좌동 144-706 일원	7,488.60	-	7,488.6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공공청사	동사무소	북가좌동 144-343 일원	1,004.70	-	1,004.7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변경	공공청사	동사무소	남가좌동 119-17 일원	935.00	감) 0.20	934.8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변경	공공청사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남가좌동 130-10 일원	1,030.00	증) 39.60	1,069.6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다) 도서관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도서관	공공도서관	북가좌동 119-3 일원	3,486.8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라)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복지시설	-	남가좌동 138-3잡 일원	1,601.00	동방사회복지회
기정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남가좌동 184-6 일원	599.00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남가좌동 289-54 일원	-	가재울8구역 건축물내 공공시설(기부채납) - 용도 : 어린이집 - 면적 : 500㎡이상(전용면적+공용면적)

(4) 환경기초시설 (변경)

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분시설	북가좌동 115-97 일원	5,064.0	증)44.5	5,108.5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근린공원 지하에 중복결정

5. 변경사유

- 확정측량(가재울4재정비촉진구역)에 의한 면적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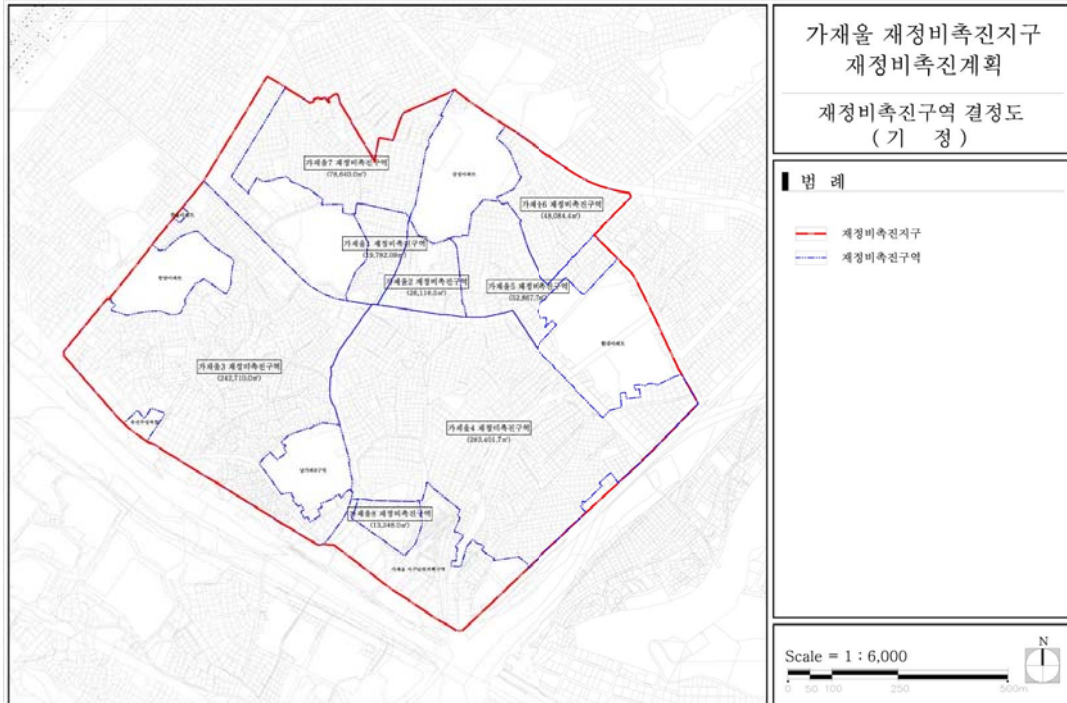
6. 관계도면 : 붙임참조(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계 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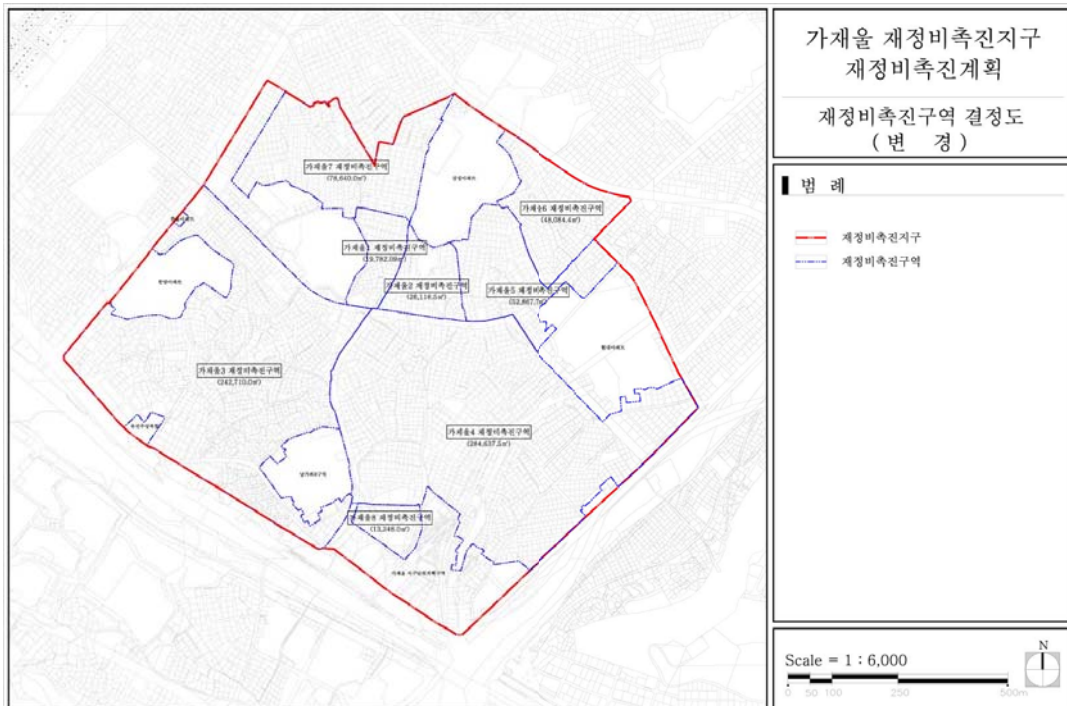
7. 관계도서 열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7) 및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02-330-1633)에 관계도서 비치 및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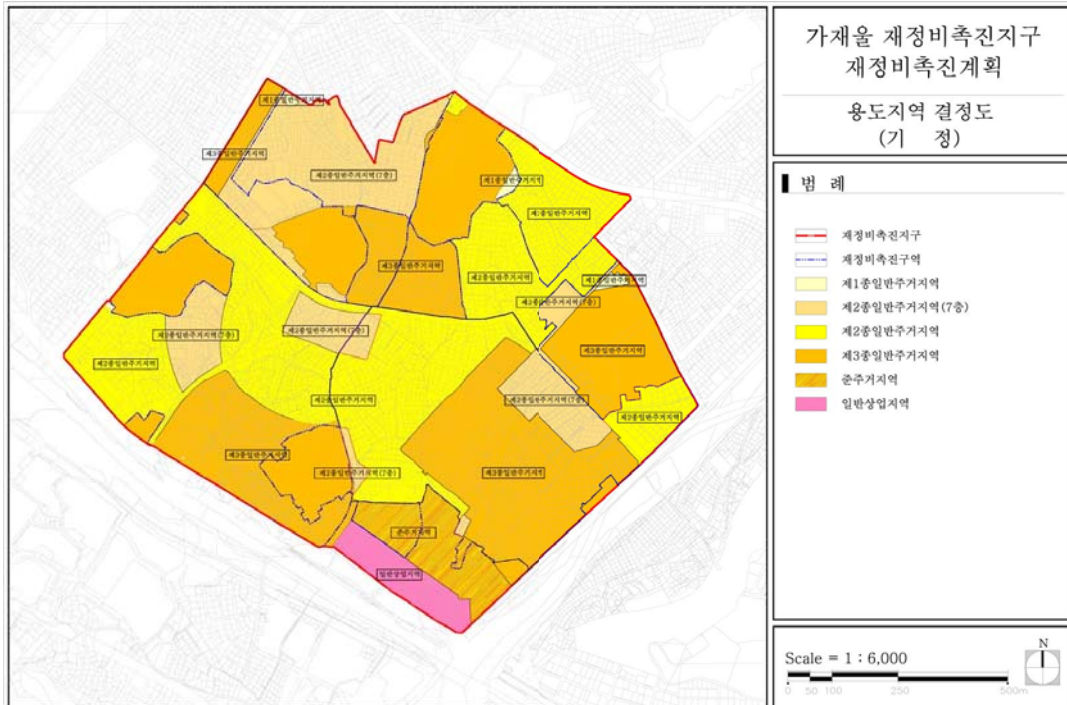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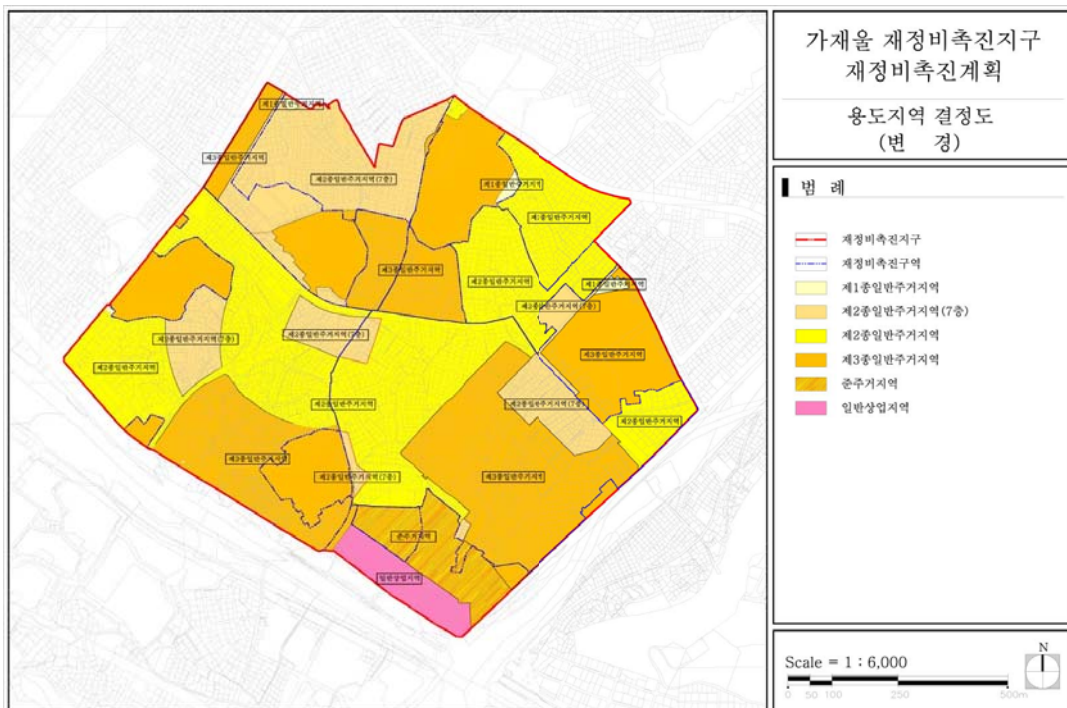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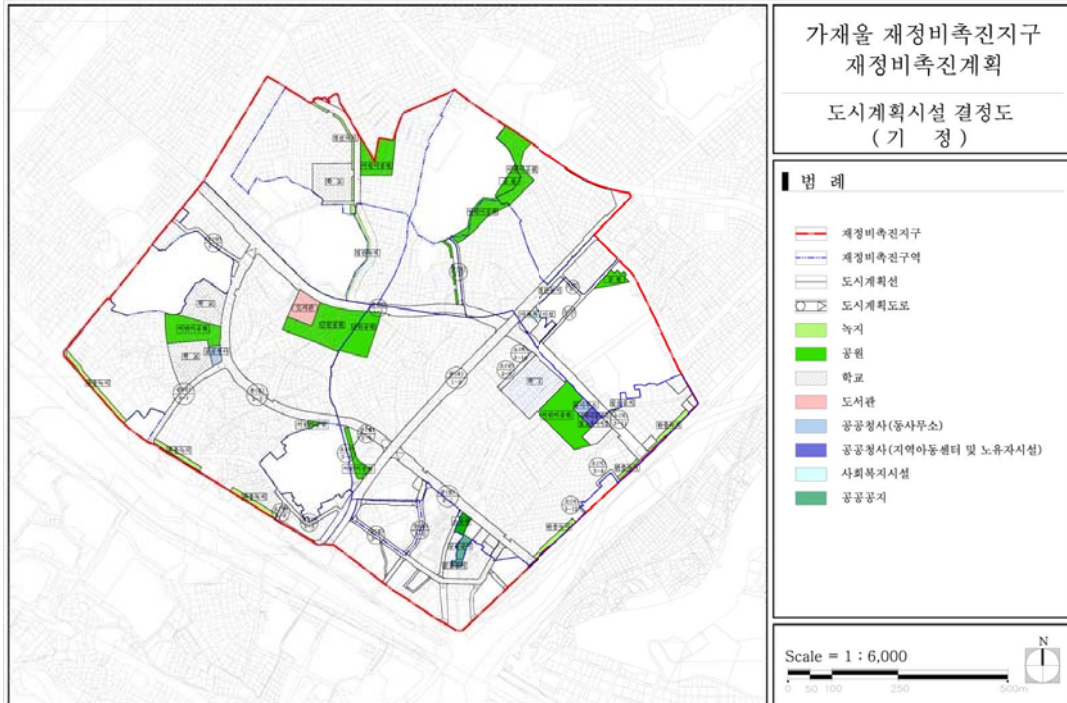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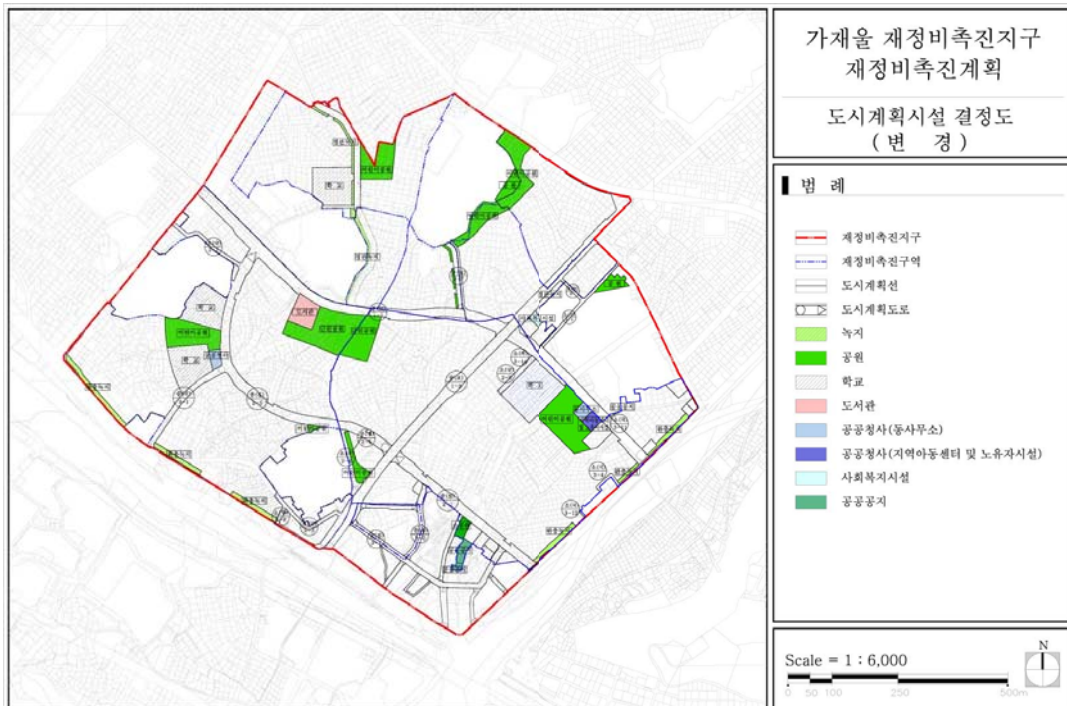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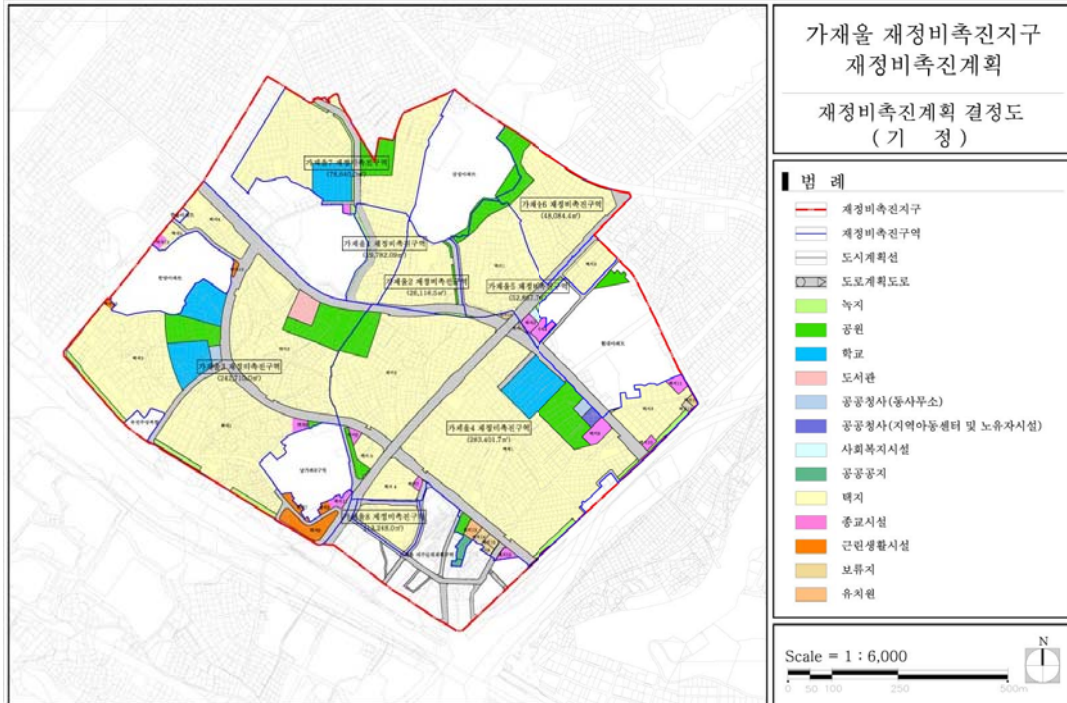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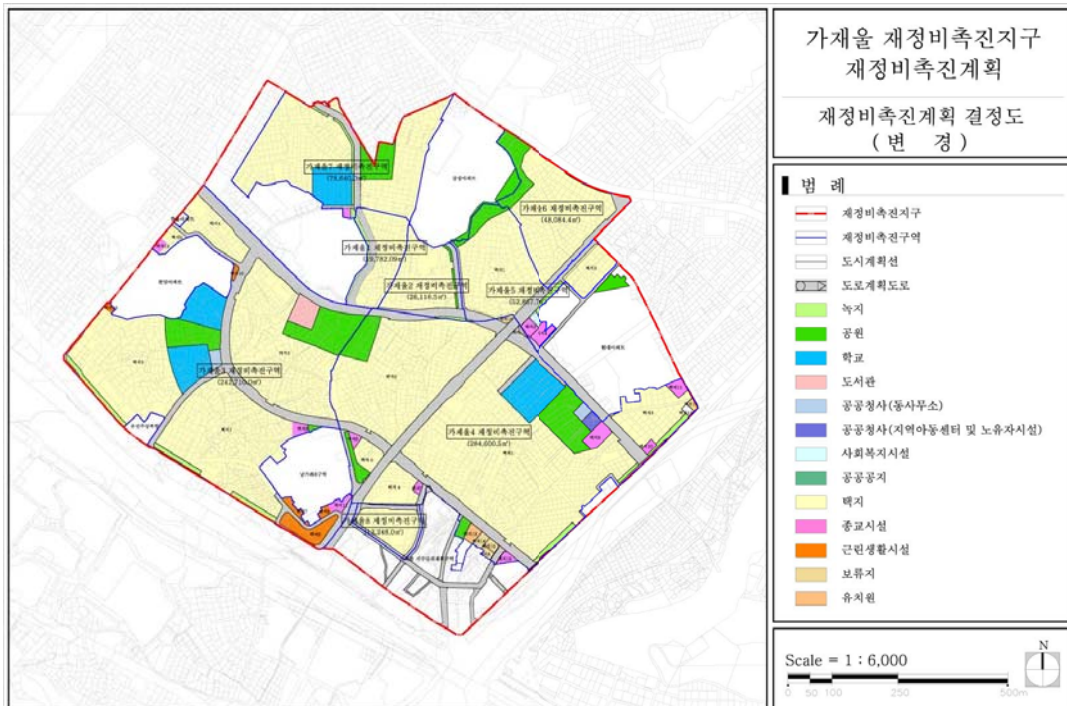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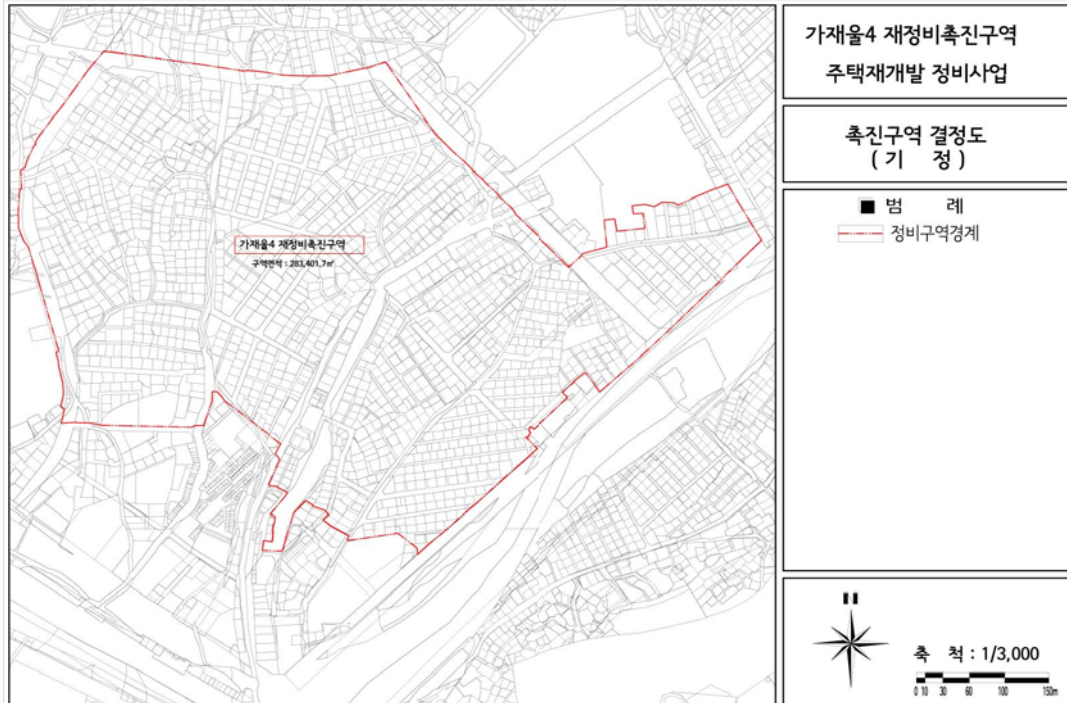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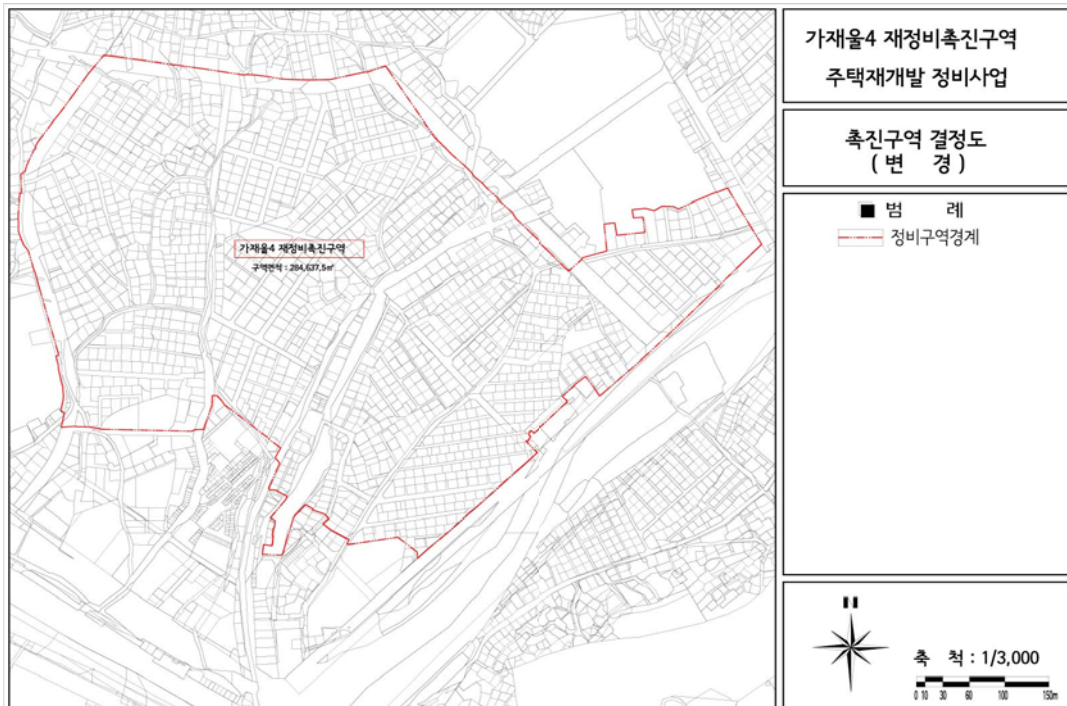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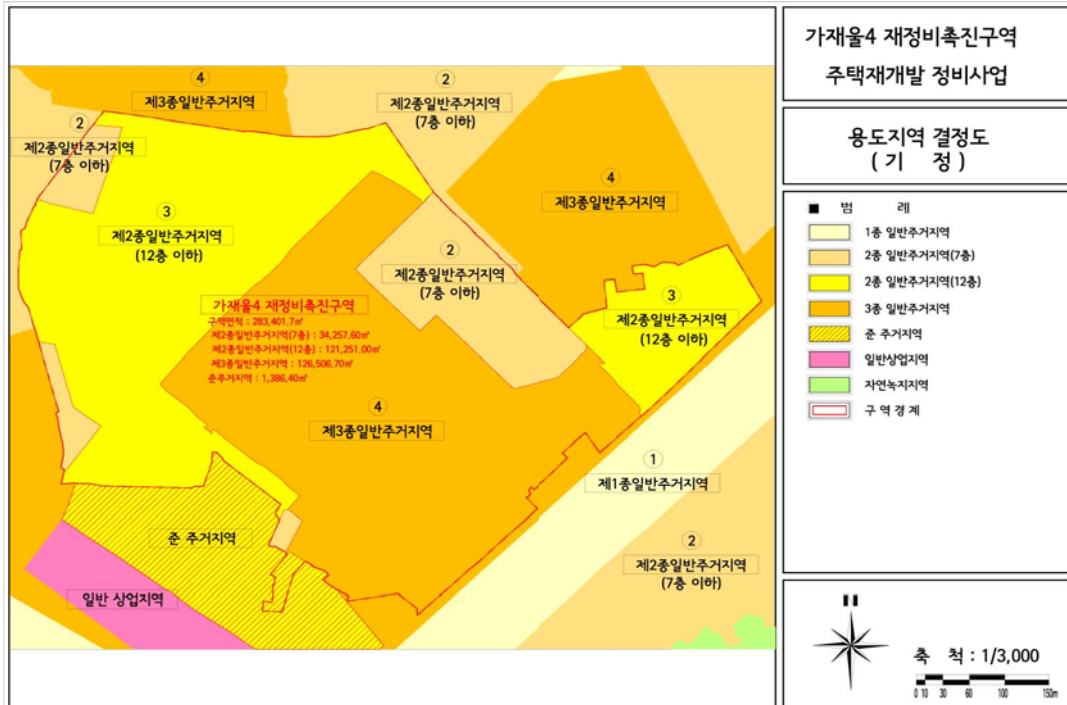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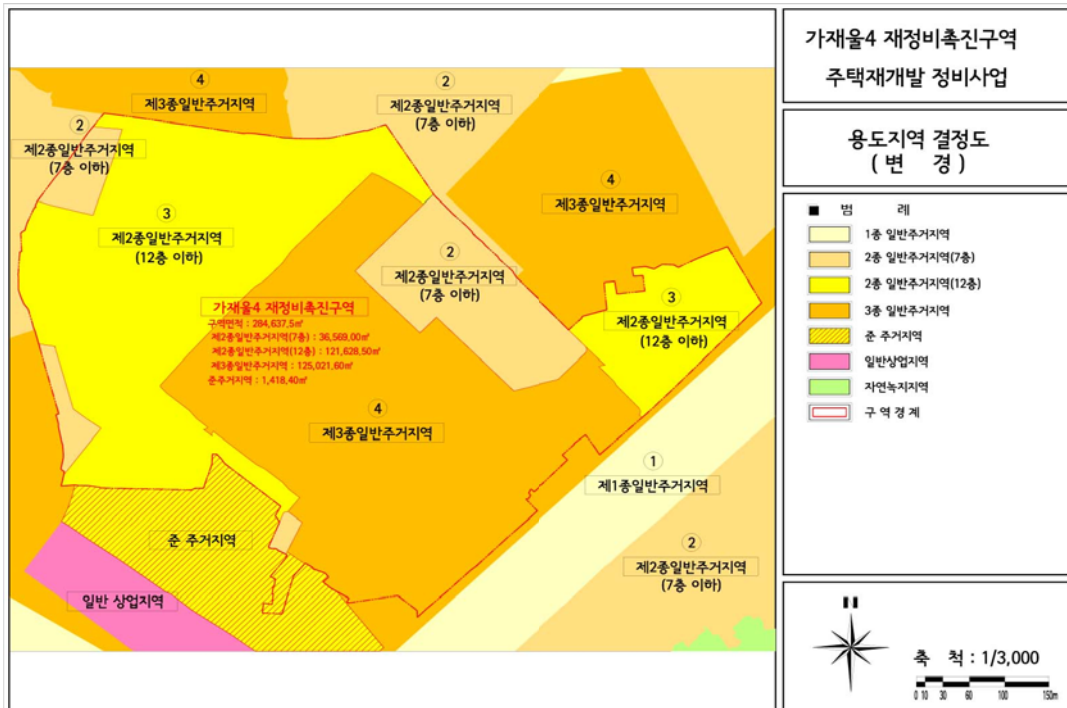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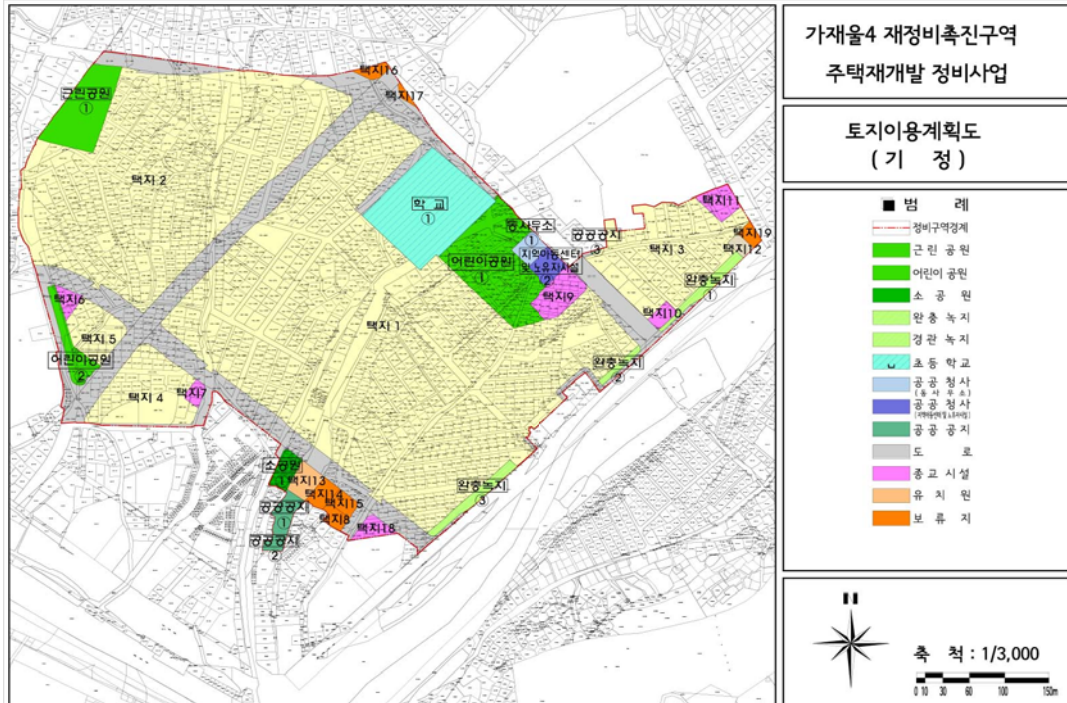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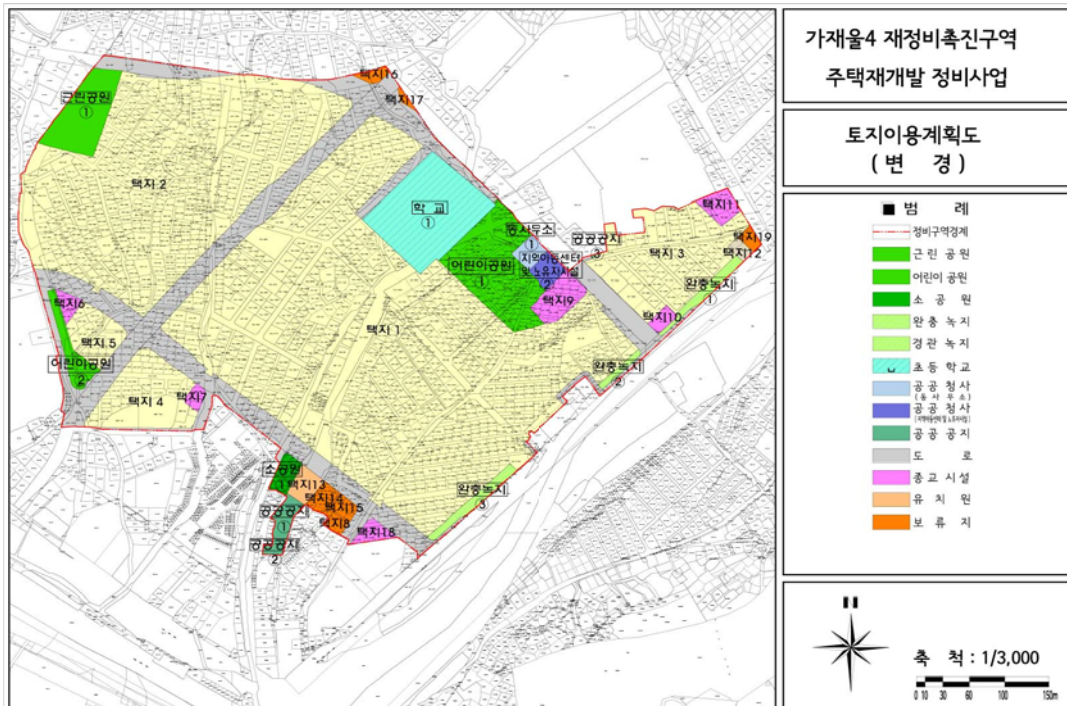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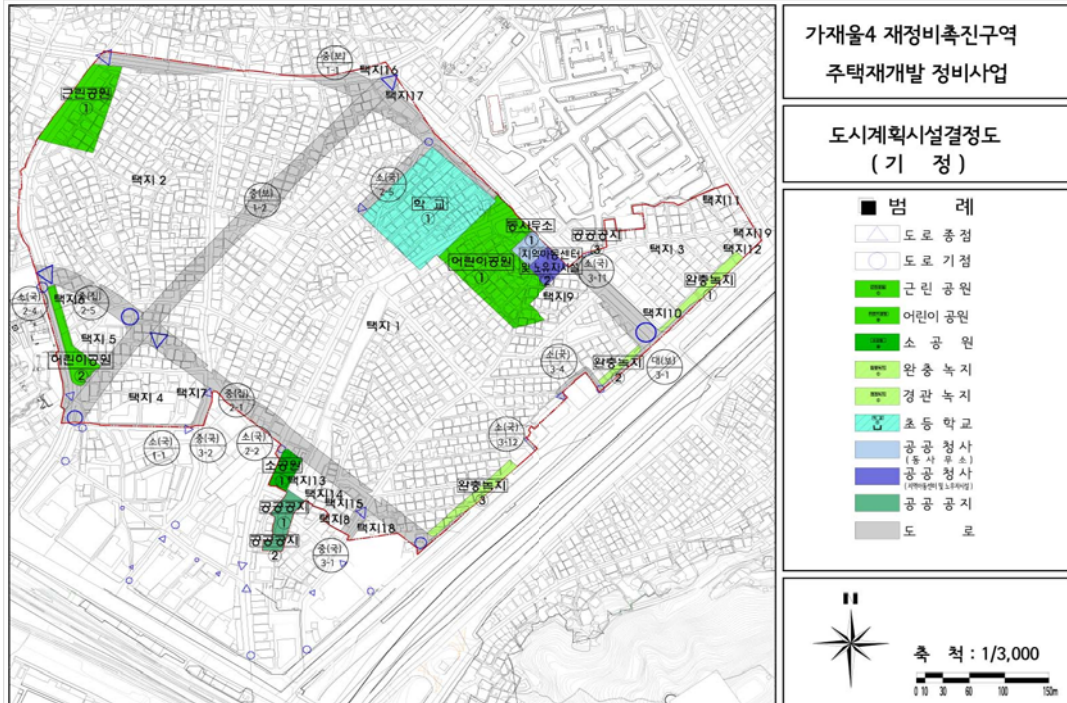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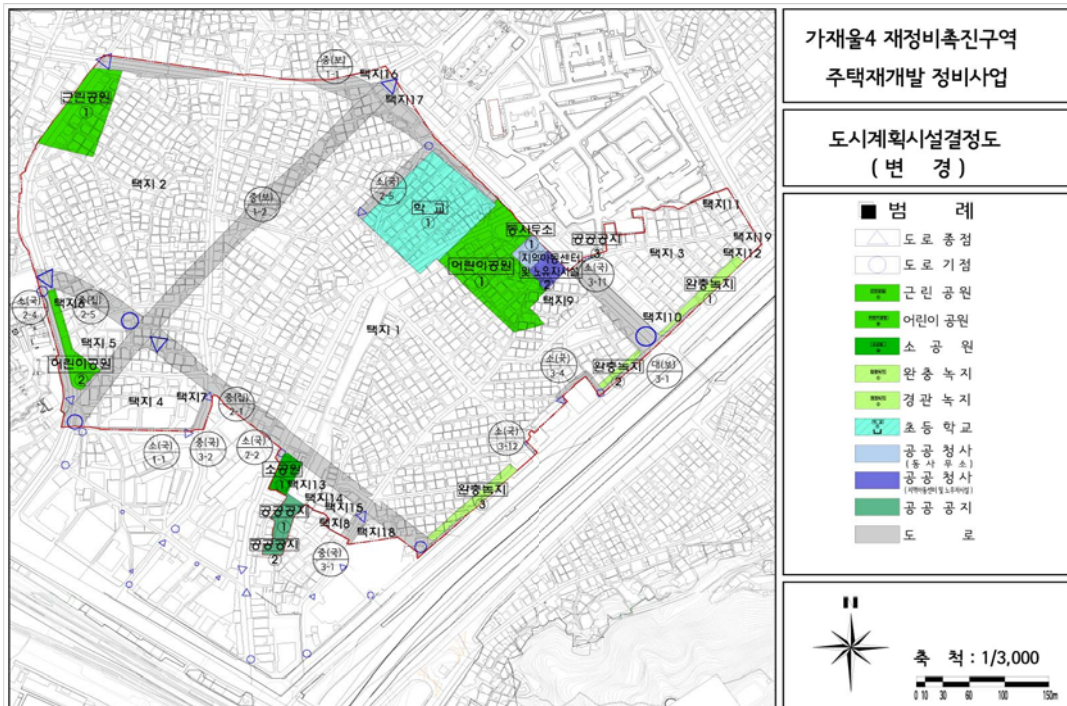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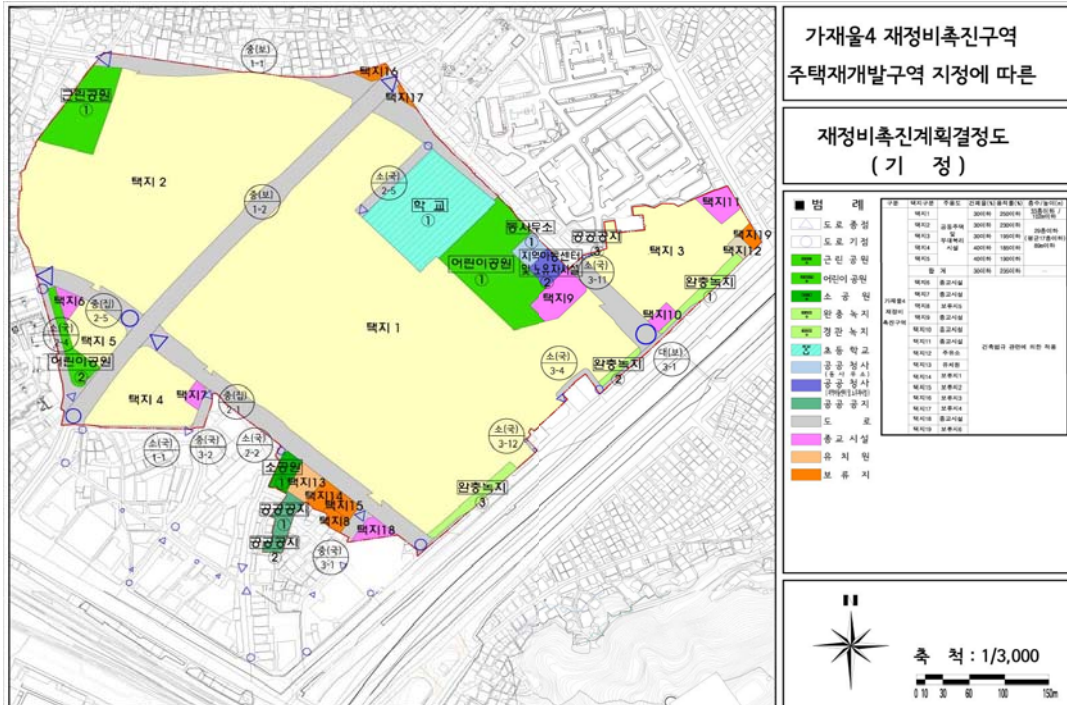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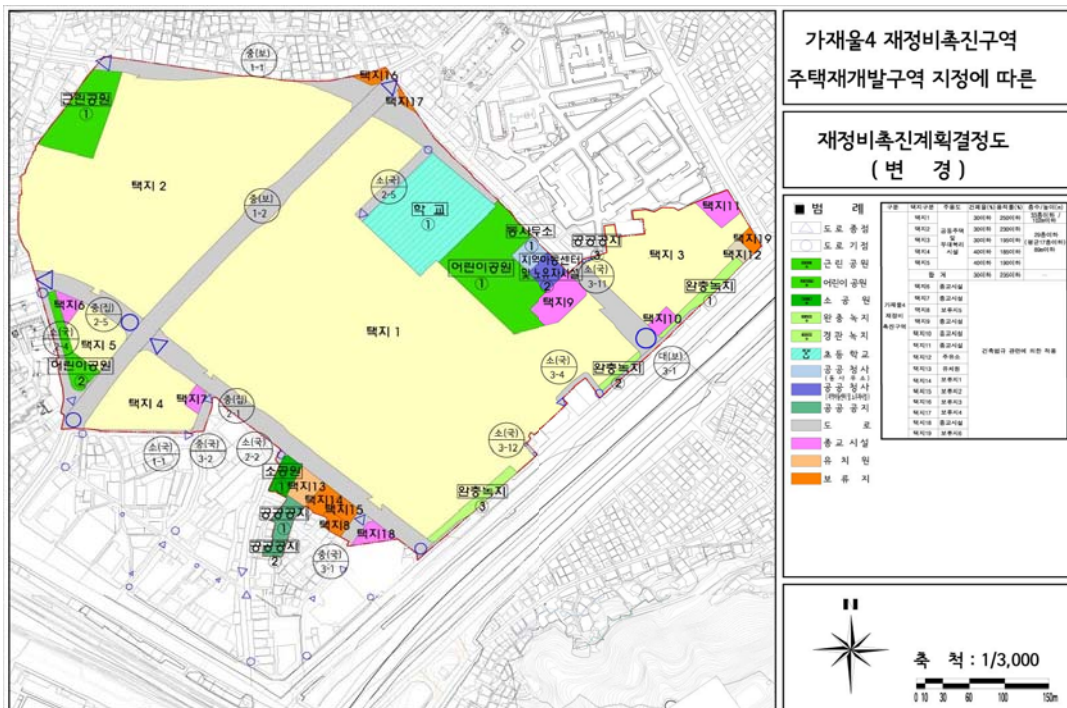
■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가재울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 가재울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제2롯데 교통개선대책으로 (주)롯데물산 외 2개사에서 추진 중인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376호(2016.12.8.)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며, 같은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또한, 같은법 제30조 5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지하차도 ~ 동부간선도로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92호선) 사업
- 명 칭 : 장지지하차도 ~ 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

- 동부간선도로 연결로 신설(교량)
 - 진입 연결로(Ramp-A) : L=638.22m, 1차로(B=6.0m)
 - 진출 연결로(Ramp-B) : L=455.53m, 1차로(B=6.0m)

라. 사업시행자 지정(성명 및 주소)

- 롯데물산(주) 노병용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신천동)
- 롯데쇼핑(주) 이원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1(소공동)
- (주)호텔롯데 송용덕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소공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92	27	주간선 도로	9,416	송파구 장지동 717	광진구 노유동 96-4	자동차 전용도로	-	서고1992-305 (1992.9.28)	
변경	대로	3	192	27~ 40	주간선 도로	9,416	송파구 장지동 717	광진구 노유동 96-4	자동차 전용도로	-		-일부구간 폭원확장 -중복결정 · 철도(고속철도):82㎡ · 녹지(완충녹지):47㎡ · 하천:2,510㎡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192호선	대로3-192호선	• 폭원변경 - 폭원 : 27m → 27~40m	•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연결로 신설에 따른 일 부구간 폭원 변경

사. 지형도면 고시도 : 별첨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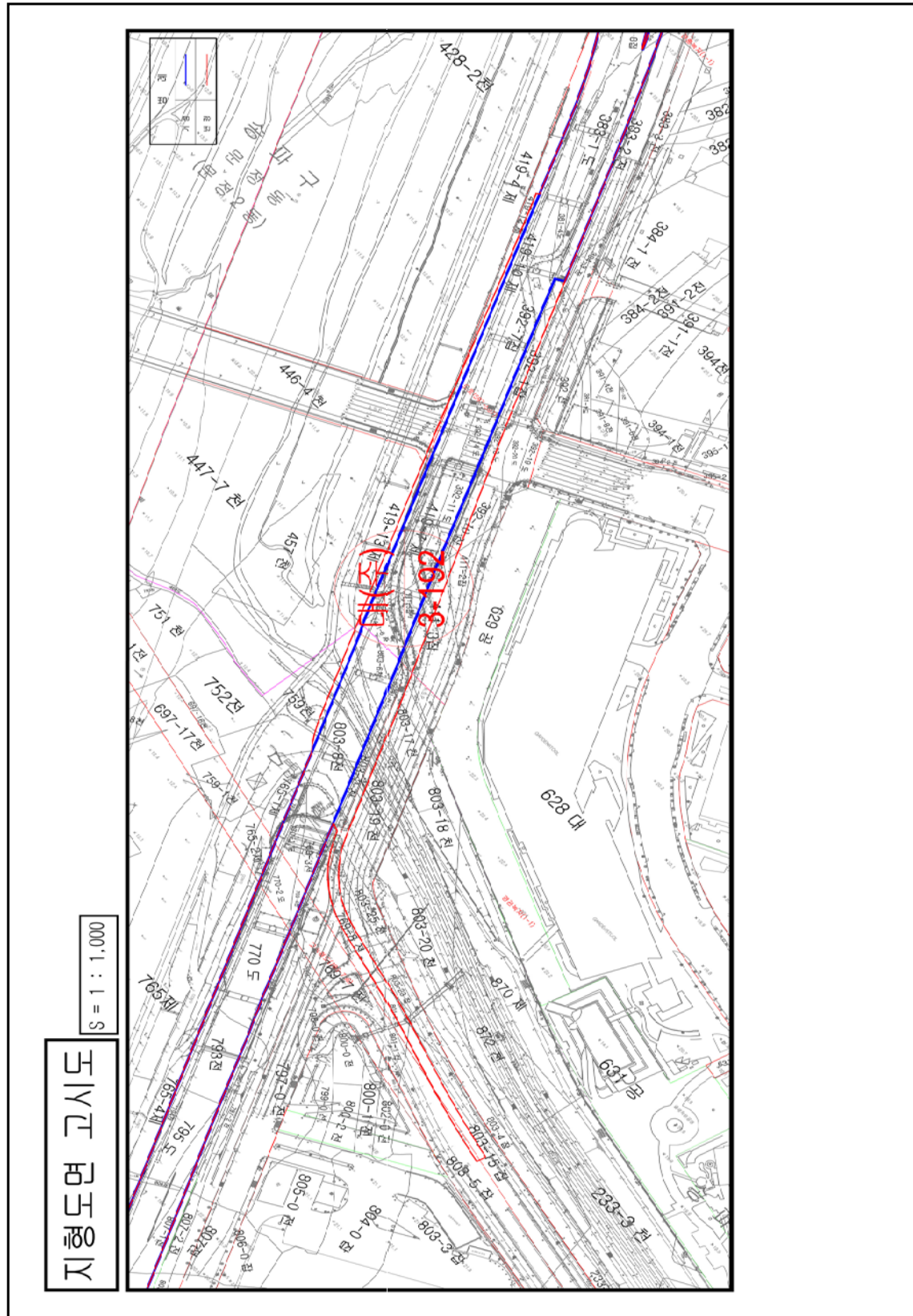
자.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도면 및 서류 등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2133-808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1	송파구 장지동 759	천	3,731	279	서울특별시						
2	송파구 장지동 803-12	천	1	1	서울특별시						
3	송파구 장지동 803-11	천	330	1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4	송파구 장지동 803-21	천	118	33	서울특별시						
5	송파구 장지동 803-17	천	1,037	137	서울특별시						
6	송파구 장지동 803-1	천	213	213	서울특별시						
7	송파구 장지동 803-19	천	2,163	293	서울특별시						
8	송파구 장지동 803-2	천	545	513	서울특별시						
9	송파구 장지동 803-25	천	752	37	서울특별시						
10	송파구 장지동 803-22	천	34	21	서울특별시						
11	송파구 장지동 769-6	전	140	34	송파구						
12	송파구 장지동 769-8	전	1,518	529	송파구						
13	송파구 장지동 803-16	잡	88	35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 (개포동)					
14	송파구 장지동 803-23	잡	989	6	서울특별시						
15	송파구 장지동 801	전	49	20	송파구						
16	송파구 장지동 801-2	전	259	146	송파구						
17	송파구 장지동 803-15	잡	2,404	496	서울특별시 외1인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18	송파구 장지동 803-5	잡	3,508	82	서울특별시 외인						
19	송파구 문정동 419-12	제	1,729	471	서울특별시						
20	송파구 문정동 419-4	제	5,368	2	서울특별시						
21	송파구 문정동 419-8	제	674	64	서울특별시						
22	송파구 문정동 419-13	제	1,901	337	서울특별시						
23	송파구 문정동 411-7	제	3	3	서울특별시						
24	송파구 문정동 447-7	천	17,188	3	서울특별시						
25	송파구 문정동 392-1	잡	856	488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개포동)					
26	송파구 문정동 392-16	전	690	31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개포동)					
27	송파구 문정동 381-7	도	284	52	국토해양부						
28	송파구 문정동 384-3	전	511	2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개포동)					
29	송파구 문정동 392-13	도	507	255	서울특별시						
30	송파구 문정동 392-10	잡	1,025	464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31	송파구 문정동 411-2	잡	1,211	62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32	송파구 문정동 447-3	천	8	8	서울특별시						
33	송파구 문정동 411-3	잡	1,764	597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개포동)					
34	송파구 문정동 411-14	제	38	38	서울특별시						
35	송파구 문정동 411-9	제	3	3	서울특별시						
36	송파구 문정동 411-4	제	1	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호

천마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06호(2016.10.06.)로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천마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천마근린공원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치유숲 공원으로 재조성 하고자 함.

2.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산2 일대

3. 면적 : 182,420㎡

4. 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4) 및 송파구 공원녹지과(☎ 2147-3391) 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천마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송파구 마천동 산2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82,420	34,844.5	3	1,008	2,905.81	57	182,420	39,968.26	3	1,008	2,905.81	81	시설면적: 증) 5,123.76㎡
기 반 시 설	소계	12,429.5	12,429.5					13,107.3	13,107.3					증) 677.8㎡
	도로	11,790.5	11,790.5					12,321.6	12,321.6					증) 531.1㎡
	광장	639.0	639.0					785.7	785.7					증) 146.7㎡
조 경 시 설		4,576.0	4,576.0				14	778.31	778.31				26	감) 3,797.69㎡
휴 양 시 설		8,095.0	8,095.0	1	172	274	4	8,315.42	8,315.42	1	172	274	19	증) 220.42㎡
유 회 시 설		407.0	407.0				1	340.43	340.43				1	감) 66.57㎡
운 동 시 설		2,532	2,532				9	7,347.17	7,347.17				6	증) 4,815.17㎡
교 양 시 설		4,434.0	4,434.0	1	775	2,545.81	26	7,668.53	7,668.53	1	775	2,545.81	26	증) 3,234.53㎡
편 의 시 설		2,291.0	2,291.0	1	61	86	3	2,331.1	2,331.1	1	61	86	3	증) 40.1㎡
관 리 시 설		80.0	80.0					80.0	80.0					
녹지 기타		147,575.5						142,451.74						감) 5,123.76㎡
시 설 율 (법정 40%)		(34,844.5 / 182,420) × 100 = 19.10%						(39,968.26 / 182,420) × 100 = 21.91%						
건 폐 율 (법정 20%)		(1,004 / 182,420) × 100 = 0.55%						(1,004 / 182,420) × 100 = 0.55%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바닥 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바닥 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합계			182,420	34,844.5			1,008	2,905.81	57			182,420	39,968.26			1,008	2,905.81	81	시설면적: 증) 5,123.76㎡	
		계	전지역	12,429.5	12,429.5							전지역	13,107.3	13,107.3						도로: 증) 531.1㎡ 광장: 증) 146.7㎡	
	도로		전지역	11,790.5	11,790.5							전지역	12,321.6	12,321.6						증) 531.1㎡	
	광장	가		639	639						가		785.7	785.7						증) 146.7㎡	
		가-1	산1-5공	(450)	(450)						가-1	산2공	(476.01)	(476.01)						증) 26.01㎡	
		가-2	산1-5공	(189)	(189)						가-2	산2공	(156.54)	(156.54)						감) 32.46㎡	
											가-3	68-3공	(153.15)	(153.15)						증) 153.15㎡	
	계			4,576.0	4,576.0					14			778.31	778.31					26	감) 3,797.69㎡	
	파고라	①	산8공	(243)	(243)	목재				12	①	산8공	(396.5)	(396.5)					21	증) 153.5㎡	
		①-1	산1-1공 외1	(20.25)	(20.25)	목재					(1)	①-1	산8공								삭제
조 경 시 설		①-2	산1-5공	(40.5)	(40.5)	목재				(2)	①-2	산2공	(40.5)	(40.5)	목재					(2)	
		①-3	산1-5공	(40.5)	(40.5)	목재				(2)	①-3	산2공	(40.5)	(40.5)	목재					(2)	
		①-4	산1-8공	(40.5)	(40.5)	목재				(2)	①-4	산2공	(60.75)	(60.75)	목재				(3)	증) 20.25㎡	
		①-5	산1-8공	(40.5)	(40.5)	목재				(2)	①-5	산2공	(40.5)	(40.5)	목재					(2)	
		①-6	산1-8공	(40.5)	(40.5)					(2)	①-6	산2공	(40.5)	(40.5)	목재					(2)	
		①-7	산1-8공	(20.25)	(20.25)					(1)	①-7	산2공	(40.5)	(40.5)	목재					(2)	증) 20.25㎡
											①-8	산2공	(20.25)	(20.25)	목재					(2)	증) 20.25㎡
											①-9	산2공	(20.25)	(20.25)	목재					(1)	증) 20.25㎡
											①-10	산2공	(20.25)	(20.25)	목재					(1)	증) 20.25㎡
											①-11	68-3공	(20.25)	(20.25)	목재					(1)	증) 20.25㎡
											①-12	68-3공	(20.25)	(20.25)	목재					(1)	증) 20.25㎡
											①-13	68-3공	(16)	(16)	목재					(1)	증) 16㎡
											①-14	산2공	(16)	(16)	목재					(1)	증) 16㎡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연못	나	산1-5공	207	207						나	산2공	438.97	438.97						중) 231.97㎡
											나-1	산2공	(189.73)	(189.73)						중) 189.73㎡
											나-2	산2공	(184.27)	(184.27)						중) 184.27㎡
											나-3	산2공	(64.97)	(64.97)						중) 64.97㎡
	잔디광장	다	산1-8공 외3	4,300	4,300															삭제
	식수대	④	산1-5공	(25.8)	(25.8)						④	산2공	(25.8)	(25.8)						
	임구화단		산1-5공	69	69						너	산2공	69	69						
	휴게마당										마	산2공	270.34	270.34						중) 270.34㎡
											마-1	산2공	(178.35)	(178.35)						중) 178.35㎡
											마-2	산2공	(91.99)	(91.99)						중) 91.99㎡
휴양시설	원형플랜터										터								3	
											터-1	산2공							(1)	
											터-2	산2공							(2)	
	조형마운틴										조	산2공							1	
	스탠드										형	산2공							1	
	계			8,095	8,095			172	274	4			8,315.42	8,315.42			172	274	19	중)220.42㎡
	쉼터	②		(64.8)	(64.8)					3	②		(64.8)	(64.8)					3	
		②-1	산2공외1	(21.6)	(21.6)	목재				(1)	②-1	산2공외1	(21.6)	(21.6)	목재				(1)	
		②-2	산2-1공	(21.6)	(21.6)	목재				(1)	②-2	산2공	(21.6)	(21.6)	목재				(1)	
		②-3	산1-8공	(21.6)	(21.6)	목재				(1)	②-3	산2공	(21.6)	(21.6)	목재				(1)	
장의자	③	전지역	(48)	(48)	목재				1	③	전지역	(48)	(48)	목재				16		
휴게소	라		922	922						라		1,826.79	1,826.79						중)904.79㎡	
	라-1	산2공외1	(99)	(99)					(1)	라-1	산2공	(69.26)	(69.26)					(1)	감)29.74㎡	
	라-2	산2공외1	(273)	(273)					(2)	라-2	산2공	(365.63)	(365.63)					(2)	중)92.63㎡	
	라-3	산2-1공	(92)	(92)					(1)	라-3	산2공	(105.85)	(105.85)					(1)	중)13.85㎡	
	라-4	산1-8공	(50)	(50)					(2)	라-4	산2공								삭제	

구분	시설명	변경						변경						비고						
		전			후			전			후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다 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다 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후안시설		라-5	산1-8공	(99)	(99)					(2)	라-5	산2공	(224.61)	(224.61)					(3)	증)125.61㎡
		라-6	산1-8공	(97)	(97)					(2)	라-6	산2공	(189.17)	(189.17)					(5)	증)92.17㎡
		라-7	산1-8공	(82)	(82)					(1)	라-7	산2공	(151.24)	(151.24)					(1)	증)69.24㎡
		라-8	산1-8공 외1	(96)	(96)					(1)	라-8	산2공								삭제
		라-9	68-3공	(34)	(34)						라-9	68-3공	(51.86)	(51.86)					(1)	증)17.86㎡
											라-10	산2공	(157.81)	(157.81)					(1)	증)157.81㎡
											라-11	68-3공	(89.53)	(89.53)					(1)	증)89.53㎡
											라-12	68-3공	(20.21)	(20.21)					(1)	증)20.21㎡
											라-13	산2공	(26.95)	(26.95)					(1)	증)26.95㎡
										라-14	산2공	(374.67)	(374.67)					(2)	증)374.67㎡	
	경로당	1	산2-1공 외1	643	643	조적조	2층	172	274		1	산2공	643	643	조적조	2층	172	274		
유회시설	산림욕장	마	산1-8공 외1	6,530	6,530						마	산2공	5,845.63	5,845.63						감) 684.37㎡
	계			407	407					1		산2공	340.43	340.43					1	감)66.57㎡
	모험놀이장										모	산2공	168.96	168.96						증)168.96㎡
	어린이놀이터	바	산2-1공 외1	407	407					1	바	산2공	171.47	171.47					1	감)235.53㎡
	조합놀이대	㉠	산2-1공 외1							(1)									(1)	
	계			2,532.0	2,532.0					6			7,347.17	7,347.17					6	증) 4,815.17㎡
	베드민턴장	사		826	826						사		827.34	827.34						증) 1.34㎡
		사-1	68-3공	(314)	(314)				2면											삭제
		사-2	산1-8공 외1	(512)	(512)				4면			사-2	산2공	(827.34)	(827.34)					증) 315.34㎡
안방시설	축구장																			증) 5,250㎡
	농구장	아	산1-8공	714	714				1면		아	산2공	675.83	675.83					1면	감) 38.17㎡
	게이트볼장	자	산2-1공 외1	536	536						자	산2공	594	594						증) 58㎡

구분	시설명	변경						변경						비고							
		전			후			전			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온탕시설	체육단변장	차	산1-1공 외1	301	301															삭제	
	평행봉		산1-5공																1		
	앞드러팔굽혀펴기		산2공																1		
	수평대		산2공																1		
	다리들어올리기		산2공																1		
	발목들어올리기		산1-5공																1		
	의자점팔굽혀펴기		산8공																1		
교양시설	계			4,434	4,434	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 지상4	775	2,545.81	26				7,668.53	7,668.53	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 지상4	775	2,545.81	26	증)3,234.53㎡
	자연학습장	카	산1-8공	268	268							카	산2공	707.59	707.59					증)439.59㎡	
	유아숲체험원											차	산2공	1,842.62	1,842.62					증)1,842.62㎡	
	아외교육장											야	산2공	952.32	952.32					증)952.32㎡	
												아-1		(416.81)	(416.81)					증)416.81㎡	
												아-2		(95.74)	(95.74)					증)95.74㎡	
												아-3		(439.77)	(439.77)					증)439.77㎡	
편의시설	어린이안전공원	하		2,916	2,916					25		하		2,916	2,916					25	
	어린이안전교육관	3	산1-5공	1,250	1,250	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 지상4	775	2,545.81	1		3	산2공	1,250	1,250	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 지상4	775	2,545.81	1	
	계			2,291	2,291					3				2,331.1	2,331.1					3	증) 40.1㎡
	음수대	⑤	광장가-1 내	(10.9)	(10.9)							⑤	산2공	(10.9)	(10.9)						
	주차장	타		1,878	1,878							타		1,918.1	1,918.1						증)40.1㎡
		타-1	68-3공	(297)	(297)							타-1	산2공	(279.9)	(279.9)						감)17.1㎡
		타-2	산2-1공	(448)	(448)							타-2	산2공	(440.6)	(440.6)						감)7.4㎡

구분	시설명	전						변						경						비고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다 면적	연면적								바다 면적	연면적		
편 의 시 설		타-3	산2-1공	(446)	(446)						타-3	산2공	(444.3)	(444.3)						감) 1.7㎡
		타-4	산1-5공	(687)	(687)						타-4	산2공	(753.3)	(753.3)						증) 66.3㎡
	화장실	2	산1-5공	393	393	조적조	1층	61	86	1	2	산2공	393	393	조적조	1층	61	86	1	
	자전거보관대	⑤	산1-5공	20	20					2	⑤	산2공	20	20					2	
관 리 시 설	계			80	80								80	80						
	약수터	파	산2공	80	80						파	산2공	80	80						
녹 지 및 기타	계			147,575.5									142,451.74							감) 5,123.76㎡
	녹지 및 기타			147,575.5									142,451.74							감) 5,123.76㎡

다.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 초	합 계				3,962	11,790.5				
변 경					4,929.2	12,321.6				
당 초	소 로	소 계			1,601	8,080				
변 경					1,301.8	6,025.9				
당 초		2류	1	9	358	3,222	진입로	산1-5공 남측진입부	주차장 카-5	
변 경				10	258	2,457	진입로	산2공 남측진입부	주차장 타-4	
당 초		2류	2	8	123	984	진입로	산2-2임 남측진입부	주차장 카-2	
변 경				8	132	986	진입로	산2공남서측진입부	주차장 타-2	
당 초		3류	1	6	13	78	진입로	68-4공 북서측진입부	주차장 카-1	
변 경				5	27	160.5	진입로	산2공 북서측진입부	주차장 타-1	
당 초		3류	2	4	153	612	진입로	쉼터파-1	소로3-6시점	
변 경				3.6	205	617.5	진입로	휴게광장 가-3	소로3-6	
당 초		3류	3	4	38	152	진입로	산2-1공 서측진입로	소로3-2	
변 경				3	36	121	진입로	산2공 서측진입로	소로3-2	
당 초		3류	4	4	34	136	진입로	산2-1공 서측진입로	소로3-2	
변 경				3	31	88	진입로	산2공 서측진입로	소로3-2	
당 초		3류	5	4	35	140	진입로	산2-1공 서측진입로	소로3-6	
변 경				3	30	88	진입로	산2공 서측진입로	소로3-2	
당 초		3류	6	5	41	205	연결로	소로3-2종점	산책로14종점	
변 경				1.5	31	41	연결로	소로3-2	산책로17	
당 초		3류	7	3	10	30	진입로	산2-1공 서측진입로	주차장카-2	
변 경				2	103	174.5	연결로	산2공 서측진입부	주차장 타-2	
당 초		3류	8	3	6	18	진입로	산2-1공 서측진입부	주차장 카-2	
변 경				2	3	7	연결로	산2공 서측진입부	주차장 타-3	
당 초		3류	9	6	134	804	진입로	산1-5공 남측진입부	소로2-2시점	
변 경				1.8	9.8	17.4	진입로	소로 3-13	소로 3-14	
당 초		3류	10	5	32	160	연결로	광장가-1	어린이 안전공원 타	
변 경				5	32	151	연결로	입구광장가-1	어린이 안전공원 하	
당 초		3류	11	4	129	516	진입로	55도 동측진입부	광장가-1	
변 경				3	157	479	진입로	산54-1임 동측진입부	입구광장가-1	
신 설		3류	12	3.8	50	96	진입로	산2공 동측진입부	소로 3-19	
신 설		3류	13	6	20	121	진입로	산2공 동측진입부	휴게소 라-5	
당 초		3류	14	2	46	92	연결로	소로3-11	산책로9시점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변 경				2	71	143	연결로	소로 3-9	휴게소 라-5	
폐 지		3류	15	2	75	150	연결로	소로2-1종점	소로3-18시점	
폐 지		3류	16	2	68	136	연결로	소로3-17종점	소로3-11시점	
폐 지		3류	17	2	72	144	연결로	주차장카-5	휴게소-6	
폐 지		3류	13	3	33	99	진입로	어린이안전교육장 북측진입부	어린이안전교육장동 측진입부	
당 초		3류	18	2	68	136	연결로	잔디광장	소로3-11시점	
변 경				3	50	166	연결로	산책로 8	휴게소 라-5	
당 초		3류	19	2	124	248	연결로	소로2-1	휴게소다-6	
변 경				2	56	112	연결로	소로3-9	소로3-12	
폐 지		3류	20	2	9	18	연결로	소로2-1	휴게소다-6	
당 초		소 계			2,361	3,710.5				
변 경					3,627.4	6,295.7				
당 초		산책로	1	1.5	236	354	산책로	쉼터파-1	소로3-6	
변 경				1.5	247	381	산책로	휴게광장 가-3	휴게소 라-8	
당 초		산책로	2	1.5	198	297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4	
변 경				1.5	182	276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4	
당 초		산책로	3	2	134	268	산책로	소로2-2	휴게소다-2	
변 경				1.5	116	168	산책로	산책로 18	휴게소 라-2	
당 초		산책로	4	1.5	256	384	산책로	휴게소다-2	휴게소다-1	
변 경				1.5	150.2	225.4	산책로	휴게소 라-4	휴게소 라-1	
당 초		산책로	5	1.5	182	273	산책로	휴게소다-1	산51-3임	
변 경				1.5	168.5	268.2	산책로	휴게소 라-1	산책로9	
폐 지		산책로	6	1.5	81	121.5	산책로	산책로9	산51-3임	
당 초		산책로	7	1.5	289	433.5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4	
변 경				1.5	330.5	507.3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20	
당 초		산책로	8	1.5	101	151.5	산책로	산책로10	소로3-18	
변 경				2.5	214	638.6	산책로	소로 3-11	휴게소 라-7	
당 초		산책로	9	1.5	293	439.5	산책로	소로3-16종점	산책로5	
변 경				1.5	405	633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14	
당 초		산책로	10	1.5	68	102	산책로	55도	휴게소다-6	
변 경				1.5	106.5	165.2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당 초		산책로	11	1.5	52	78	산책로	휴게소다-6	산책로12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변 경				1.5	101.4	157.2	산책로	산책로1	소로 3-2	
당 초		산책로	12	1.5	143	214.5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10	
변 경				1.5	69	103.5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3	
당 초		산책로	13	1.5	124	186	산책로	소로3-19	휴게소다-8	
변 경				1.5	66.5	101.1	산책로	소로3-2	산책로1	
당 초		산책로	14	2	98	196	산책로	휴게소다-3	소로3-6	
변 경				1.5	55.3	89	산책로	산책로 9	소로3-11	
당 초		산책로	15	2	52	104	산책로	산1-1공 남측진입부	휴게소다-2	
변 경				1.5	82.5	117.5	산책로	산2공 남측진입부	휴게소 라-2	
당 초		산책로	16	2	54	108	산책로	산책로10	소로 3-18	
변 경				2	70.7	142.4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17	
신 설		산책로	17	1.5	127.5	197.1	산책로	소로 3-2	휴게소 라-4	
신 설		산책로	18	1.5	174.6	397	산책로	소로 2-2	휴게소 라-3	
신 설		산책로	19	1.5	93.1	165.9	산책로	산2공 남측진입부	휴게소 라-2	
신 설		산책로	20	1.5	72.7	109.2	산책로	휴게소 라-2	휴게소 라-4	
신 설		산책로	21	1.5	80.3	119.7	산책로	소로 2-1	산책로 24	
신 설		산책로	22	1.5	64	85.7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24	
신 설		산책로	23	1.5	50.3	84.9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24	
신 설		산책로	24	2.3	100.6	264.2	산책로	소로 2-1	산책로 25	
신 설		산책로	25	1.5	98.5	161	산책로	소로 2-1	산책로 7	
신 설		산책로	26	1.3	56	72.2	산책로	산책로 14	산책로 14	
신 설		산책로	27	1.3	39.5	52.3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26	
신 설		산책로	28	3	75.2	115.7	산책로	소로 2-2	소로 2-2	
신 설		산책로	29	2	45.1	91.7	산책로	소로 3-2	소로 3-2	
신 설		산책로	30	2	49.7	100.9	산책로	소로 3-2	소로 3-2	
신 설		산책로	31	2	67.5	126.3	산책로	소로 3-2	소로 3-2	
신 설		산책로	32	2	27.5	50.6	산책로	소로 3-2	휴게소 라-12	
신 설		산책로	33	2.5	40.2	127.9	산책로	소로 3-12	휴게소 라-7	

천마근린공원 조성계획도(변경전)

천마근린공원



천마근린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천마근린공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0호(2016.9.1.)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505호(2016.12.29.)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위해 열람공고한 “서울역 7017 프로젝트”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광장) 실시계획 변경(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사항 포함)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서울역 고가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0.3	특수 도로	810	남대문로5가 281	만리동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변경	소로	1		10.3	특수 도로	810	남대문로5가 281	만리동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광장~고가 연결시설물 선형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변경없음)

○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16.10.12)인 서울역광장~고가 연결시설물 설치방안 변경(E/V
→E/V+계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변경

2) 도시계획시설(도로) - 퇴계로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광장) - 만리동광장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광장)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36-2 ~ 만리동1가 62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① 서울역고가도로(보행자전용도로) : 폭 10.3m, 연장 810m
- ② 퇴계로 : 보행길 폭 8.6m ~ 10.3m, 연장 214m
- ③ 만리동광장 : 10,353.1㎡ (전체 면적 : 24,15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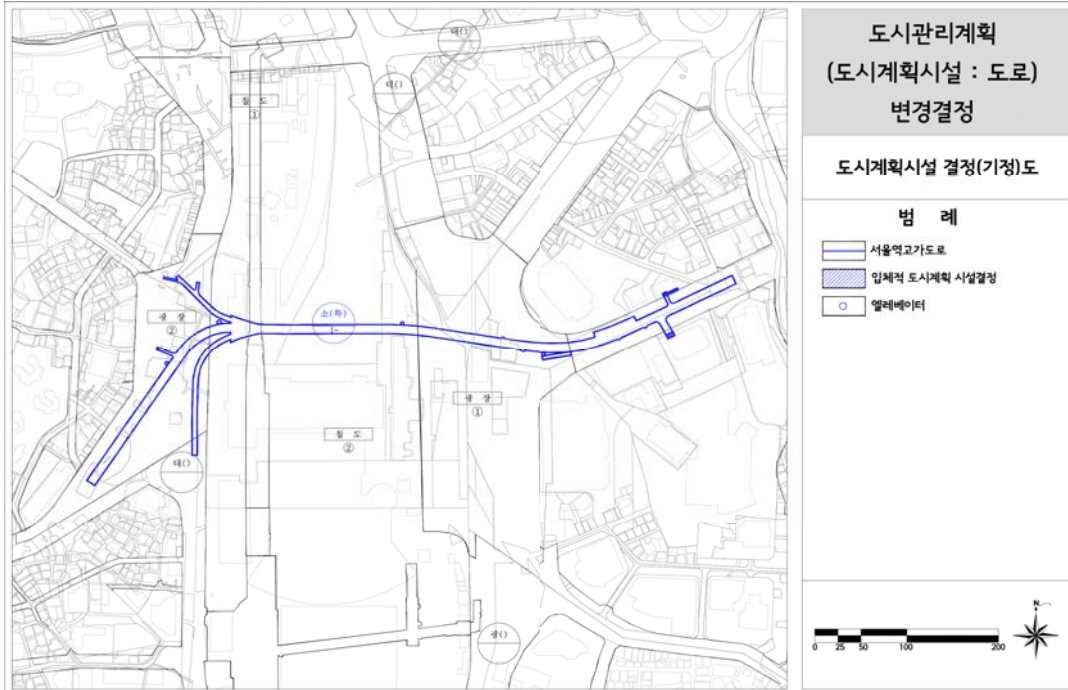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 참조

7) 건축 허가,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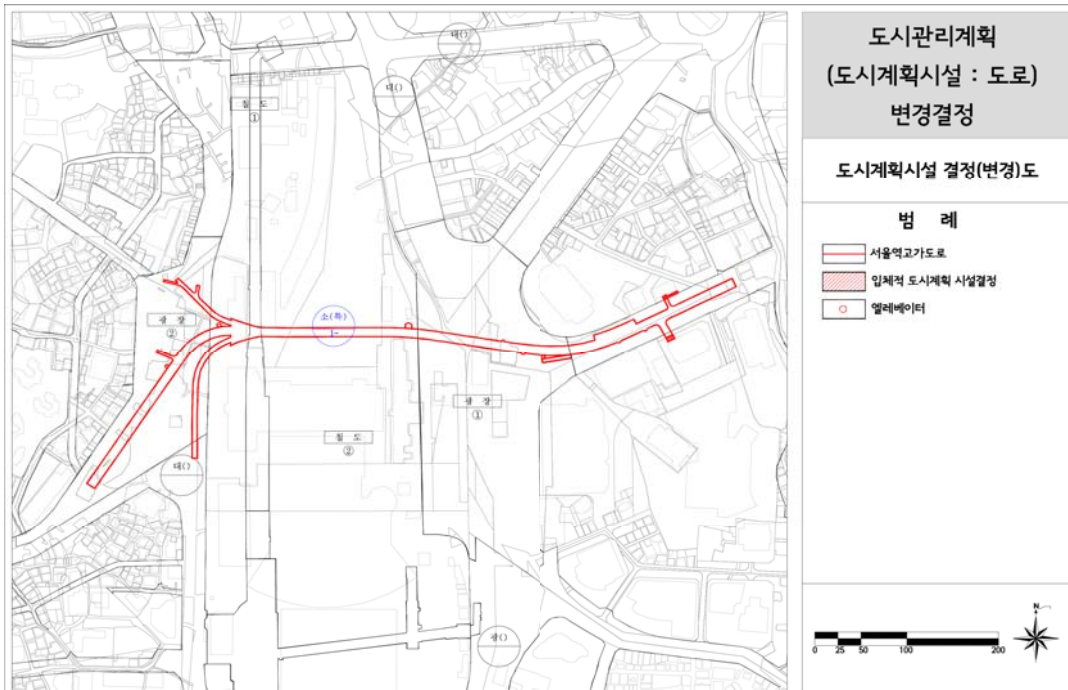
다.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도면 및 서류 등은 서울특별시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신청사 10층)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생사업반(☎ 02-2133-866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 서울역고가도로) 변경결정 도면

○ 기정



○ 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서울역 고가도로)

○ 토지조서(사용)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사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구	행정동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 계					128,843.1	10,691.0	증) 54.3	10,745.3							
1	중구	남대문로 5가	67-4	도로	1,312.4	156.2	-	156.2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	중구	남대문로 5가	73-2	도로	477.6	196.6	-	196.6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중구	남대문로 5가	74-1	도로	419.8	158.7	-	158.7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중구	남대문로 5가	75-1	도로	142.1	4.0	-	4.0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중구	남대문로 5가	280	도로	482.6	205.0	-	205.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중구	남대문로 5가	281	도로	409.9	91.6	-	91.6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	중구	만리동 1가	5	도로	412.6	1.9	-	1.9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	중구	만리동 1가	5-1	도로	376.9	165.7	-	165.7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9	중구	만리동 1가	12-2	도로	832.4	215.9	-	215.9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0	중구	만리동 1가	12-3	도로	506.1	96.8	-	96.8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중구	만리동 1가	12-4	도로	100.2	11.1	-	11.1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2	중구	만리동 1가	15-3	도로	56.2	0.8	-	0.8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3	중구	만리동 1가	17-2	도로	145.5	6.9	-	6.9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4	중구	만리동 1가	22-32	도로	15.9	15.9	-	15.9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5	중구	만리동 1가	22-37	철도	20.8	12.6	-	12.6	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계속>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사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구	행정동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6	중구	만리동1가	22-43	도로	5.0	1.9	-	1.9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7	중구	만리동1가	22-44	철도	74.4	44.5	-	44.5	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18	중구	만리동1가	83	도로	534.8	123.1	-	123.1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9	중구	봉래동2가	122	철도	4,696.9	54.5	-	54.5	한국철도 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0	중구	봉래동2가	122-15	철도	20,897.5	319.5	-	319.5	한국철도 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1	중구	봉래동2가	122-14	철도	3,589.8	161.7	-	161.7	한국철도 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2	중구	봉래동2가	122-16	철도	19,570.7	1,026.5	-	1,026.5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3	중구	봉래동2가	124	도로	1,894.2	4.4	-	4.4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4	중구	봉래동2가	124-1	도로	613.1	142.5	-	142.5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5	중구	만리동1가	22-36	철도	16.5	14.7	-	14.7	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26	중구	중림동	106-4	도로	931.9	183.3	-	183.3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7	중구	중림동	106-3	도로	589.8	68.2	-	68.2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8	중구	중림동	106-6	도로	1,632.6	62.1	-	62.1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9	용산 구	서계동	217-2	도로	2,648.9	109.2	-	109.2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0	중구	남대문로 5가	84-15	도로	15,607.4	2,529.7		2,529.7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연결통로 (호텔마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31	중구	남대문로 5가	520	도로	3,769.70	581.8		581.8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연결통로 (대우재단)
32	중구	남대문로 5가	526-1	도로	559.4	26.6		26.6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연결통로 (대우재단)
33	중구	만리동1가	1	도로	11,043.8	1,153.2	-	1,153.2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4	중구	만리동1가	22-1	도로	6,942.6	1002.1	-	1002.1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엘리베이터
35	중구	봉래동2가	122-11	철도	10,063.0	956.3	-	956.3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엘리베이터
36	중구	봉래동2가	122-17	철도	10,420.6	741.7	증) 29.4	771.1	한국철도 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엘리베이터 변경
37	중구	남대문로 5가	526	대지	3,081.1	18.9	-	18.9	재단법인 대우재단 외 1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구분 지상권	연결통로 (대우재단)
30	중구	남대문로 5가	84-16	대지	667.8	-	증) 24.9	24.9	호텔마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84-16			구분 지상권	연결통로 변경 (호텔마누)

○ 물건조서(무상귀속)

연번	주소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 연면적(㎡)			층수	개발행위자(행정청)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합 계			62.04	감) 62.04	-	143.22	감) 143.22	-				
1	중구 봉래동2가 122-17	서울역전파출소	62.04	감) 62.04	-	143.22	감) 143.22	-	지하1층 지상2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철거

연번	주소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 연면적(㎡)			층수	관리청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합 계			-	증) 100	100	-	증) 350	350				
1	공사 완료후 신규지번 부여	서울역 파출소	-	증) 100	100	-	증) 350	350	지하2층 지상2층	경찰청	서대문구 통일로 97	신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에 의거 기존 파출소는 서울특별시, 신축 파출소는 경찰청에 각각 무상귀속되며, 신축 서울역파출소 건축(연)면적은 설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② 도시계획시설(도로) - 퇴계로

○ 토지조서(사용)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구	행정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 계					22,778.2	1,843.2						
1	중구	남대문로 5가	281	도로	409.9	70.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	중구	남대문로 5가	282	도로	79.3	0.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중구	남대문로 5가	288	도로	125.6	112.0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4	중구	남대문로 5가	290	도로	710.7	278.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중구	남대문로 5가	292	도로	1,072.4	114.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엘리베이터 위치변경
6	중구	남창동	235-1	도로	2,488.6	182.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	중구	남창동	236-2	도로	757.8	239.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	중구	남창동	239-1	도로	297.5	53.1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9	중구	남창동	64-1	도로	16,836.4	792.0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엘리베이터

③ 도시계획시설(광장) - 만리동광장

○ 토지조서(사용) (변경없음)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6-112	(사)용산구의정회 (대표 한성방)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81길 14	○ 소외계층 대상 식품 지원	70 (현금)	전국	'17.1.1. ~'17.12.31.
						'17.2.1. ~'17.12.31.
2016-113	(재)한국의료지원재단 (대표 유승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1201호	○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200 (현금)	국내및 국외	'17.1.1. ~'17.12.31.
						'17.1.1. ~'18.3.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1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6-114	(사)굿피플인터내셔널 (대표 이영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0, 굿피플빌딩	○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및 국외 긴급구호	990 (현금 및 물품)	전국	'17.1.1. ~'17.12.31. '17.1.1. ~'18.12.31.
2016-115	(사)생명의숲국민운동 (대표 이돈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1길 5, 숲센터 5층	○ 나무심기 활동 및 건강한 숲 조성	60 (현금)	인천	'17.1.1. ~'17.12.31. '17.1.1. ~'18.12.31.
2016-100-1	사단법인 위드햄 (대표 김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298 한미빌딩 4층	○ 동물매개활동가 교육 및 양성 / 유기동물 치료, 보호, 입양행사	90 (현금 및 물품)	서울 및 경기	'16.11.8. ~'17.11.7. '16.11.8. ~'18.12.31.
※ 변경내용 : 모집목표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변경 - 모집목표액 : (당초) 금 10,000,000원 (변경) 금 90,000,000원 - 모집기한 : (당초) '16.12.31. (변경) '17.11.7. - 사용기한 : (당초) '17.12.31. (변경) '18.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2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6-116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17길 1-77	○ 동물복지증진 캠페인, 피학대동물 구 조 및 보호사업	990 (현금 및 물품)	국내 및 국외	'17.1.1. ~'17.12.31.
						'17.1.1. ~'19.12.31.
2014-100-2	사단법인 글로벌비전 (대표 이정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다길 46, 3층	○ 강원도 도계 관광촌 저소득 아동 IT 교육지원 및 지역발전 도모	41 (현금)	전국	'14.12.22. ~'15.1.31.
						'14.12.22. ~'17.12.31.
						※ 변경내용 : 사용기간 변경 - 사용기한 : (당초) '16.12.31. (변경) '17.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8호
남산2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 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6호(2016.9.13)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예장동 2-1번지 일원 남산2근린공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남산2근린공원
2. 위 치 : 중구 예장동 2-1번지 일원
3. 면 적 : 74,411.00㎡
4. 조성계획 변경(안)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부지면적(㎡)	시설면적(㎡)	
계	74,411.00	15,411.90	74,411.00	16,528.14	시설면적 (증) 1,116.24㎡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부지면적(㎡)	시설면적(㎡)	
기 반 시 설	소 계	6,560.22	6,560.22	7,676.46	7,676.46	시설면적 (증) 1,116.24㎡
	도 로	6,428.00	6,428.00	7,544.24	7,544.24	시설면적 (증) 1,116.24㎡
	광 장	65.22	65.22	65.22	65.22	
조 경 시 설		159.00	159.00	159.00	159.00	
휴 양 시 설		517.92	517.92	517.92	517.92	
교 양 시 설		3,072.81	3,072.81	3,072.81	3,072.81	
운 동 시 설		114.17	114.17	114.17	114.17	
편 익 시 설		5,054.78	5,054.78	5,054.78	5,054.78	"
녹지 및 기타		58,999.10		57,882.86		(감) 1,116.24㎡
시 설 율 (법정 40%)		$(15,411.90 / 74,411.00) \times 100 = 20.71\%$		$(16,528.14 / 74,411.00) \times 100 = 22.21\%$		증)1.50%
건 폐 율 (법정 15%)		$(2,270.82 / 74,411.00) \times 100 = 3.05\%$		$(2,270.82 / 74,411.00) \times 100 = 3.05\%$		변경없음

○. 세부 변경내용

- 도 로 : 0.㎡ → 1,116.24㎡ (증 1,116.24㎡)
 - 보행교(신설, 925.15㎡)
 - 산책로(기존, 271.22㎡)
- 녹 지 : 58,999.10㎡ → 57,882.86㎡(감 1,116.24㎡)

5.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02-3783-5966)
8. 본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 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사유

- 2012. 9. 28. 字 조직개편이후 부서 회계직인 추가 사용

2. 직인명 및 등록일자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창제당시 의 자체		'17.01.11	'12.9.28. 字 조직개편 이후 부서 회계직인 추가 사용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17-5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1. 중구고시 제2016-100(2016.11.10.)호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되고 중구고시 제2016-115호(2016.12. 8.)호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중구 신당동 132-10번지 일대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63)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19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32-10번지 일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다. 대지면적 : 379.4㎡(변경없음)

라. 사업의 규모와 내용(변경없음)

- 규모 : 지하1층/지상4층
- 내용 : 소규모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건립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 인가일로부터 2018년 4월(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물건의 종류 : 불입(토지·물건·영업권조서 등)

아. 게재방법 : 시보,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자. 관계서류비치 : 서울특별시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63)

※ 변경사항 : 건물조서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6	대지	160.8	160.8	이병*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1	근저당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종로6가지점)	
2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9	대지	28	28	김창*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5				

국 공 유 지 조 서(토지)

● 사 업 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8	대	18.2	18.2	국				
2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10	대	153.8	153.8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3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21	대	18.6	18.6	국				

국 공 유 지 조 서(건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사 업 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용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 소	종류	성명	주 소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10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층	29.93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층	71.26						
			2층	60.76						
			3층	41.64						

건 물 조 서

● 사 업 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종 류	성명	주소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6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층	100.71	이병*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1(신당동)	근저당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종로6가지점)
			1층	86.05					
			2층	86.53					
			3층	72.25					
			4층	72.25					
			옥탑층	9.36					
2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8, -9	시멘트 블록조	1층	48.6	김창*	서울시 중구 다산로42길 55(신당동)			
			2층	48.6					
3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21	시멘트 블록조	1층	18.9	이원*	서울시 중구 퇴계로84길 24-10(신당동)			
			2층	18.9					

영 업 권 조 서

● 사 업 명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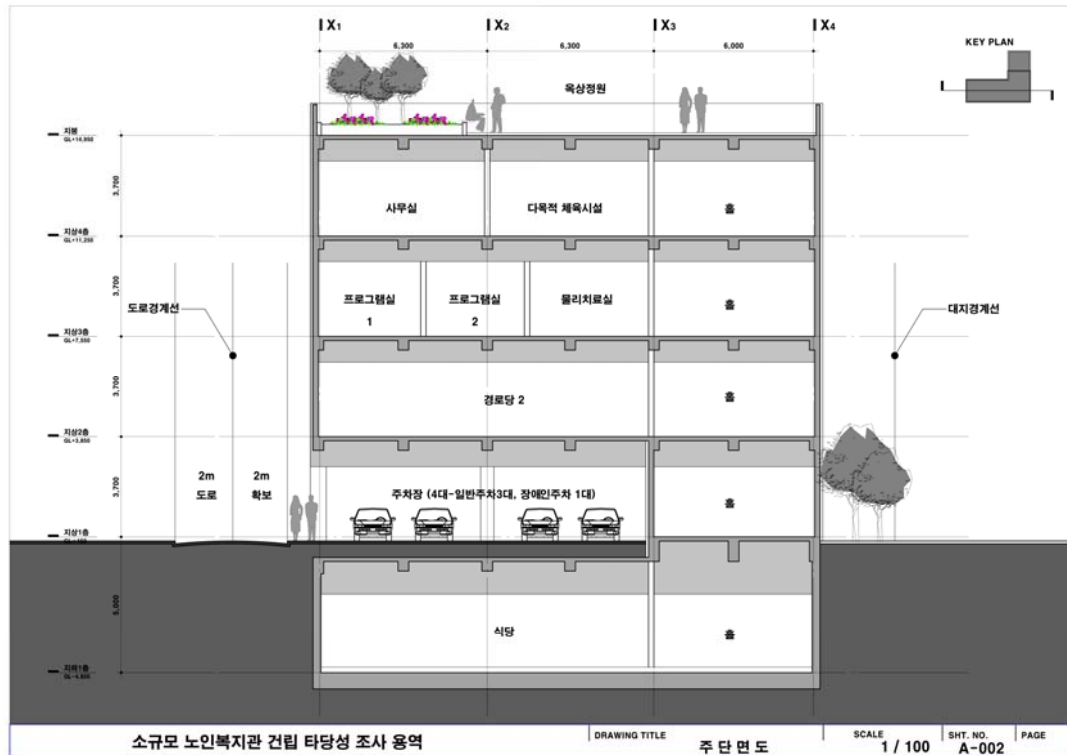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연번	소재지	영업의 종류	상 호 명	수량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6	의료임가공	미주패션	1식	이승*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94가길 20, 206동 802호(상계동)				
2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2-6	기타사업 지원서비스업	한고(GO)	1식	천덕*	서울시 중구 디산로36가길 23, 501호(신당동, 신영빌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용산구고시 제2017-6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6호(200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20호(2009.12.1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1호(2013.3.28)로 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3-48호(2013.5.24)로 실시계획 인가된 우리구 용산동3가 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394)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

2017년 1월 19일

용 산 구 청 장

가. 변경인가 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국방부 공공청사 건립사업(00부대 종교센터 리모델링)

2)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외 28필지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 분	기 정	변 경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방시설본부장
소재지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4) 사업기간

○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2018. 6. 30.

5)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면적(㎡)	시설계획			비 고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시설명	
기 정	276,970.9	51,006.14 (18.42%)	337,165.29 (72.96%)	기존 본관동 포함 55동	지상층 연면적 202,082.40㎡
변 경	276,970.9	49,646.04 (17.92%)	336,459.48 (72.61%)	기존 본관동 포함 52동	지상층 연면적 201,097.95㎡

※ 주요 변경내용

○ 금회 사업내용

- 국군중앙교회 별동증축 : 1동(지상2층), 건축면적 211.33㎡, 연면적 371.79㎡
- 국군중앙성당 수평증축 : 지하1층/지상4층, 건축면적 554.77㎡(증 159.83㎡)
연면적 1,940.93㎡(증 502.28㎡)

- 국군중앙성당 부속건물(유대철집) 철거 : 지상1층, 건축면적 198.0㎡, 연면적 198.0㎡

○ 기타 변경내용

- 용산사업단 제2동, 탄약고, 육군회관 말소 내용 반영

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계				384,064.9	276,970.9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	대지	63,718.0	63,718.0	국방부장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92	도로	2,891.3	782.9	국방부장관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93	도로	543.1	543.1	국방부장관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1	대지	23,655.2	23,655.2	국방부장관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3	대지	2,756.0	2,756.0	국방부장관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4	대지	1,901.5	1,901.5	국방부장관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5	대지	2,199.7	2,199.7	국방부장관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5-1	대지	33,588.9	32,141.6	국방부장관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6	대지	15,299.7	15,259.4	국방부장관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6-4	도로	17,070.3	13,455.4	국방부장관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9	대지	30,476.0	30,476.0	국방부장관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1	대지	17,300.2	7,851.8	국방부장관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2	대지	13,255.2	13,255.2	국방부장관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3	대지	1,510.7	1,510.7	국방부장관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1	대지	58,021.3	3,452.3	국방부장관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4	대지	10,145.4	10,145.4	국방부장관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5	대지	3,071.1	3,071.1	국방부장관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6	대지	416.5	416.5	국방부장관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5	대지	1,471.1	109.6	국방부장관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65	대지	4,393.5	3,418.0	국방부장관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3-1	대지	39,661.0	14,956.5	국방부장관	
2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3-2	대지	4,934.0	4,934.0	국방부장관	
2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4	대지	7,206.6	7,206.6	국방부장관	
2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5-1	대지	859.7	859.7	국방부장관	
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6-1	대지	10,637.0	10,637.0	국방부장관	
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6	대지	6,576.2	2,114.7	국방부장관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7-2	대지	284.9	284.9	국방부장관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7	대지	7,083.7	2,721.0	국방부장관	
2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19-781	도로	3,137.1	3,137.1	국방부장관	

◆ 용산구고시 제2017-7호

동자동구역 및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80호(1978. 11. 30.)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건설부고시 제347호(1979. 9. 28.)로 사업계획 결정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37호(2006. 1. 5.) 및 제2011-279호(2011. 9. 22.), 용산구고시 제2015-1호(2015. 1. 8.), 용산구고시 제2015-13호(2015. 2. 5.)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동자동 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역 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용 산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동자동 및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없음)

1) 동자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동자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산구 동자동 14, 35번지 일대	44,484.0	-	44,484.0	-

2)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동자동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	10,533.0	-	10,533.0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533.0	－	10,533.0	100.0	－
정비기반 시설등	소계	2,588.8	－	2,588.8	24.6	－
	도로	1,671.8	－	1,671.8	15.9	－
	공원	917.0	－	917.0	8.7	－
획지	소계	7,944.2	－	7,944.2	75.4	－
	획지	7,944.2	－	7,944.2	75.4	－

※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름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533.0	-	10,533.0	100.0	-
일반상업지역	10,533.0	-	10,533.0	100.0	-

3)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광로	3	9	45	주간선	4,000	서울역앞 광장	한강제1인도교 북단	-	일반도로	총고757 (1939.9.18)	-
기정	중로	2	197	15	집산	362	동자동2-1	동자동5-82	-	일반도로	건고347 (1979.9.28)	-
기정	중로	2	198	15	집산	106	동자동17-4	동자동14-85	-	일반도로	건고347 (1979.9.28)	-

나) 공원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동자동 18-32 일대	2,623.1 (917.0)	-	2,623.1 (917.0)	건고제347호 (1979.9.28)	

※ ()는 대상지내 면적,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름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동자동 제2구역	10,533.0	획지	7,944.2	동자동 15-1번지일대	4	-	-	-	4	-

5) 건축시설계획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동자동 제2구역	10,533.0	획지1	7,944.2	동자동 15-1 번지 일대	숙박시설	60.00 이하	1,100 이하	135.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변경	■ 건립세대 수 : 70세대 ■ 건립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를 전체 세대수의 60%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연면적의 50%이상 건설(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8조 제3항)							
심의완화사항		■ 공공기여시설 : 용적률 = 200%								
		목적				인센티브대상		요건		완화량
		도심 활성화		가로활성화용도 (저층부상업용도)			1,2층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1층 1/2설치 의무)			50%p
		관광인프라구축		호텔(관광숙박시설)			관광진흥법상 3급이상 호텔 40%이상			100%p
		공공기여시설 설치		지하보행통로 (지하철 연결통로)			건축계획 반영			50%p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공공시설부지 및 공개공지 초과 제공								
		• 용적률 = 306.53%(기정)								
		• 용적률 = 308.25%(변경)								
		①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 [1.3×(2,588.8-282.8/7,944.2)]×800% = 301.89%								
		② 공개공지 추가 제공시 인센티브 = [(840.50-794.42)/7,944.2]×800% = 4.64%(기정) = [(857.61-794.42)/7,944.2]×800% = 6.36%(변경)								

2. 변경사유

- 사업계획변경(용도변경)에 따른 계획용적률(1,100%) 범위 내 주용도인 숙박시설(43.59%)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타용도 중 일부인 공동주택 용도 70세대(9.93%)를 변경

(신설)하고자 용도별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 건축(교통)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라 일부 변경된 공개공지 면적을 반영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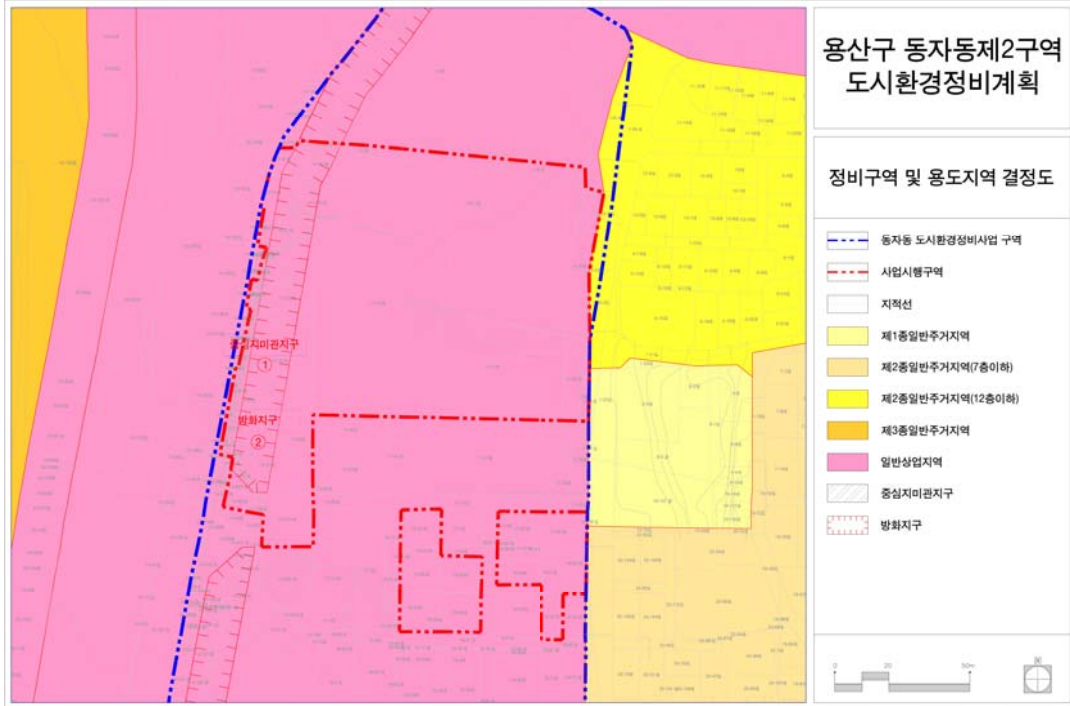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결정도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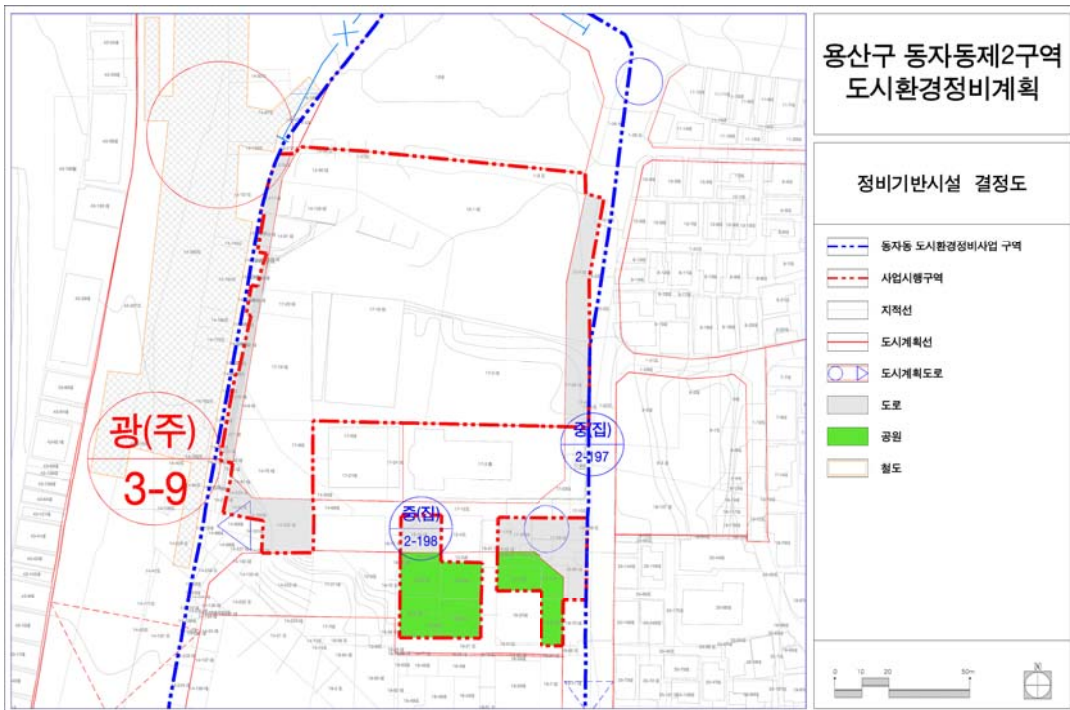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 도시계획과(☎2199-7413)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지역·지구결정도 (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 정비계획 종합결정도(변경없음)



◆ 성북구고시 제2017-1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67.12.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56호(2006.7.27)로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성북구고시 제2016-163호(2016.1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성북구 성북동 226-65번지 일대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사업(2차)』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6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19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변경없음)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 사업의명칭 :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2차)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6-65번지 일대
- 사 업 면 적 : 101,059㎡ 중 5,772㎡

나.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6. 12. 1. ~ 2017.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조서(변경) : 별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2241-3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변경)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2차

연번	기정				변경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동명	지번				동명	지번								
1	성북	226-33	대	364	364	성북	226-33	대	364	364	국 (재정경제원)				
2	성북	226-36	대	400	400	성북	226-36	대	400	400	국 (재정경제원)				
3	성북	226-65	대	482	482	성북	226-65	대	482	482	유상수				
4	성북	226-68	대	353	353	성북	226-68	대	353	353	국(재무부)				
5	성북	226-69	대	1,028	1,028	성북	226-69	대	1,028	1,028	국(재무부)				
6	성북	226-109	임	734	734	성북	226-109	임	734	734	송파구 백제고분로23길 26,503호(삼전동)	김영노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삼선교지점)	농협 동조합 중앙회	근저당권 지상권
7	성북	226-122	임	50	50	성북	226-122	임	50	50	광주광역시 남구 서오층석탑1길 7-1(서동)	재단법인라인 문화재단			
8	성북	226-234	대	2,000	2,000	성북	226-234	대	2,000	2,000		서울시			

토 지 조 서(변경)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2차

연번	기정				변경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관리종류 및 내용
	동명	지번				동명	지번									
9	성북	226-242	대	30	30	성북	226-242	대	30	30		성북구				
10	성북	226-251	대	2	2	성북	226-251	대	2	2	송파구 잠실동 19 아파트 63동 403호	이종원				
											관악구 남부순환로248길 29(봉천동)	이복성				
11	성북	226-252	도로	18	18	성북	226-252	도로	18	18		국(재무부)				
12	성북	226-266	임	3,475	183	성북	226-316	임	183	183	부산 서구 시약로 122.1001호 (서대신동3가, 화인아트빌리지)	박경미				
13	성북	226-300	임	26	26	성북	226-300	임	26	26	송파구 백제 고분로23길 26,503호 (삼전동)	김영노				

토 지 조 서(변경)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2차

연번	기정				변경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동명	지번				동명	지번							
14	성북	226-301	대	16	16	성북	226-301	대	16	16		국(재무부)		
15	성북	226-302	대	14	14	성북	226-302	대	14	14		국(재무부)		
16	성북	226-303	대	1	1	성북	226-303	대	1	1		국(재무부)		
17	성북	226-304	대	56	56	성북	226-304	대	56	56		국(재무부)		
18	성북	226-305	임	5	5	성북	226-305	임	5	5		박경미		
19	성북	226-306	임	10	10	성북	226-306	임	10	10	부산 서구 시약로 122. 1001호 (서대신동3가, 화인아트빌리지)	박경미		

별첨 2 제 3 서(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2차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 적	측 량 면 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성북동 226-65 226-270	건 물 (주택 및 부수시설)	세멘조	59.306052	54	주거	성북구 성북로 31길 135 (성북동)	유상수				기존무허가
			조립식		92	주거						기존무허가
					-	보일러실						신발생무허가
2	성북동 226-33 226-109	건물 (주택)	세멘조	39.6696	74	주거	성북구 하월곡동 60-160	최태양				기존무허가
3	성북동 226-33 226-122	건물 (주택)	세멘조	49.587	118	주거	성북구 성북동 226-33	백정자				기존무허가
4	성북동 226-36	건물 (주택)	세멘조 조립식 등	-	45	주거		미상				신발생무허가
			세멘조 조립식 등	-	81	주거		미상				신발생무허가

◆ 마포구고시 제2017-7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4호(1987.01.14.)로 시설 결정되고, 마포구고시 제1997-20호(1997.04.17.)로 변경 결정 및 마포구고시 제2016-44호(2016.04.21.)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마포구 합정동 55-17번지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 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54)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19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55-17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 2) 명 칭 : 합정관리소 증설공사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1) 사업시행 면적 : 8,264.0㎡(변경없음)
- 2) 사업내역(변경내용)
 - 건축물 2동 철거 : 연면적 88.04㎡ 감소(변경없음)
 - 방산탑 이설(A:7.5m × B:7.5m × H:25.0m) : 금회 미설치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한국가스공사 대표 이승훈
- 2)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120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17-37호

도시관리계획(군자역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1호(2012.5.3) 및 제2015-190호(2015.7.2.)로 결정(변경) 고시된 우리구 군자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군자역 1,2번 출입구와 중곡동 649-6호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충연결로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 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9일

광진구청장

- 1) 열람기간 : 2017. 1. 19(공고일로부터 15일간)
- 2)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5)
- 3) 열람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	6.5	특수도로	6.5	중곡동 672	중곡동 649-6	지하도로 (지하층 연결로)	• 천호대로 지하부 일부 중복결정 •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 입체적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입체적 결정규모				비고
			폭(m)	연장(m)	높이(m)	면적(㎡)	
신설	도로 (지하도로)	중곡동 649-6	6.5	1.4	11.0~16.0 (해수면기준)	9.1	

■ 도로 결정 사유서

구분	기점	종점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중곡동 672	중곡동 649-6	· 천호대로(광로1-5호) 하부에 지하도로 신설 - 지하도로(지하층연결로) B=6.5m, L=6.5m - 일부구간 입체적결정 B=6.5m, L=1.4m, A=9.1m ²	·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대상지내 침상형 공시계획을 반영하여 (서울시고시 제2012-111호, 2012.05.03.) · 군자역 1,2번 출입구와 본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층연결로를 신규 설치하는 사항 임.

4) 관련도서 : 생략(광진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도서와 같음).

◆ 은평구공고 제2017-5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고양삼송·지축·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중인 고양지축 지구와 도시계획시설(도로)와 관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9일
은 평 구 청 장

가. 공 고 일 : 2017. 1. 19.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22일간

다. 도시관리계획(안)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대로	3류	2	25-31	주간선 도로	1,178	대로3-1	동축 지구계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1-464호 (2011.08.22.)	
변경	대로	3류	2	25-31	주간선 도로	1,937	대로3-1	대로3-55	일반 도로			· 창릉천과 중복결정 · 서울특별시 구간:27m(신설)
기정	대로	3류	55	20-35	보조간선 도로	5,000	불광동 (대1-12)	진관동 299	일반 도로		건고2493호 (66.6.21.)	
변경	대로	3류	55	20-35	보조간선 도로	5,000	불광동 (대1-12)	진관동 299	일반 도로			· 가감속차선 설치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 3-2	-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내 대로3-2호선 연장 변경 (L=1,178m→1,937m, 증 759m) · 고양시 구간 L=1,190m, B=25~31m · 서울시 구간 L=27m, B=25~31m - 창릉천(하천2)과 중복결정(L=43m) · 고양시 구간 L=21m · 서울시 구간 L=22m	- 광역교통계획을 반영한 지구외 연결도로(대로3-2호선) 조성을 위한 서울시 구간 도로 신설
변경	대로 3-55	- 고양시 도로(대로3-2호선) 접속에 따른 서울시 도로(대로3-55호선) 가감속 차선 설치	- 가감속 차선 설치에 따른 선형변경

라.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마.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03)

◆ 마포구공고 제2017-48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4호(1987.01.14.)로 시설 결정되고, 마포구고시 제1997-20호(1997.04.17.)로 변경 결정 및 마포구고시 제2017-7호(2017.01.19.)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마포구 합정동 55-17번지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55-17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 2) 명 칭 : 합정관리소 증설공사

다. 금회 공사완료(준공) 내역

- 1) 사업시행 면적 : 8,264.0㎡(변경없음)
- 2) 사업내역
 - 건축물 2동 철거 : 연면적 88.04㎡ 감소(기존 818.58㎡ → 당초 730.54㎡)
 - 다동(화학실험실) 철거(연면적 20.0㎡ 감소)
 - 라동(차양막동) 철거(연면적 68.04㎡ 감소)

3) 사업기간 : 2016. 04. 21. ~ 2016. 12. 29.

4) 공사완료일 : 2016. 12. 2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한국가스공사 대표 이승훈

- 2)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120번지
 마. 관계도서 : 생략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포구공고 제2017-55호

도시계획시설(철도:공덕정거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82호(2006.9.20.)로 결정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18호(2010.1.6.)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4호(2013.10.10.)로 도시관리계획(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이 결정,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4-75호(2014.4.24)로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5-177호(2015.10.15)로 실시계획변경(경미한사항)인가 고시된 마포구 도화동 25-1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공덕정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5-13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공덕정거장)
- 2) 명 칭 : 경의선 공덕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다. 공사완료(준공) 내역

- 1) 사업시행 면적 : 16,741.8㎡(건축부지면적:15,867.8㎡)
- 2) 규 모 :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용도
신축	A블럭	2,739.22	37,581.19	지하2,지상24	109.9	숙박,업무,근생
신축	B블럭가	3,880.7	21,727.59	지하2층지상8	34.8	근생,문화및집회
	B블럭나	104.04	3,847.67	지하2층	4	주차장
합계		6,723.96	63,156.45	-	-	

3) 사업기간 : 2014. 4. 24. ~ 2016. 12. 31.

4) 공사완료일 : 2016. 12. 1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공덕경우개발(주) 대표이사 최현태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11(도화동, 16층)

마. 관계도서 : 생략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청 제2017-97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시 고시 제41호(1978.2.11.)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141호(1978.4.7.)로 지적승인되고, 강남구 고시 제59호(2016.5.4.) 및 강남구 고시 제159호(2016.12.8.)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강남구 대치동 27-1번지외 3필지상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에 대한 가스배관·정압기 성능검사실 설치 및 업무·교육동 증축공사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강 남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가스배관·정압기 성능검사실 설치 및 업무·교육동 증축공사
3. 사업의 위치 : 강남구 대치동 27-1번지외 3필지
4.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가. 대지 면적 : 50,660㎡ 중 46,117㎡
 - 나. 건축 면적
 - 2,010.62㎡ (금회 증축 공사)
 - 204.01㎡ (경미한 사항으로 미인가된 사항 반영)
5. 사업시행자 :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대표 조용우
6. 사업기간 : 2016. 5. 4. ~ 2016. 12. 31.
7. 공사완료일 : 2016. 12. 14
8. 관련도서 : 생략

【강남구청 도시계획과(☎3423-6103) 비치도서와 같음】

◆ 송파구청 제2017-99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올림픽공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정정)

서울시보 제3390호(2017.1.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43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올림픽공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내용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송 파 구 청 장

1. 세부 시설 결정(정정)

시설명	세부시설명	정정 전[면 적(㎡)]			정정 후[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운동장	합계	1,976,370	—	1,962,867.8	1,976,370.0	감)13,502.2	1,962,867.8
	계	1,512,130.3		1,498,597.0	1,512,130.3	감)13,533.3	1,498,597.0
	관리,업무,관 광사업,유스호 스텔시설	123,492.3	—	123,492.3	123,492.3	—	123,492.3
	운동시설	565,958.6	—	565,958.6	580,852.8	—	580,852.8
	전시,관람집회 시설	75,326.0	—	75,326.0	75,326.0	—	75,326.0
	사적지	747,353.4	증)1,360.9	733,820.1	732,459.2	증)1,360.9	718,925.9
			감)14,894.2			감)14,894.2	
	계	464,239.7		464,270.8	464,239.7	증)31.1	464,270.8
	유보지	464,239.7	감)1,360.9	464,270.8	464,239.7	감)1,360.9	464,270.8
		—	증)1,392.0			증)1,392.0	

2. 기타 내용 : 종전 공고와 같음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서울시계 내 한강 (마곡대교 ~ 양화대교)	선박 3척 (기선1척,부선2척)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2017.1.11. ~ 2017.12.31.	2017. 1.1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프라임해운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36	서울시계 내 한강 (아라 한강감문~ 동작대교 남단)	선박 1척 (기선 1척)	안양 열병합 발전소 중량물 해상운송	2017.1.12. ~ 2017.3.31.	2017. 1.12.

사업소공고

◆ 구로소방서공고 제2017-1호

소방시설관리업등록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구로소방서장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시설관리업	제서울(구로) -2017-0001호	지양소방산업㈜ (110111-6262408)	김영호 (1967.7.27.)	서울 구로구 경인로54길 4, 에이동 지하1층 6호(구로동, 구로유통상가)	02-2645- 711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소방서 예방과(2682-50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12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727-24번지등 10필지
 - 면 적 : <당초>영구 9,398㎡, 일시 13,972㎡
 <변경>영구 10,263㎡, 일시 13,24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장안교(구교) 성능 개선공사에 따른 교량 철거 및 신설
 - 내 역 :

당 초	변 경
- 장안교 성능개선공사	- 장안교 성능개선공사 - 장안교 하부구간 (별자리마당 526㎡, 운동기구 18개소, 벤치 17개소, 행성쉼터 7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당초>영구(2015.08.04.~2016.12.15.)
 <변경>영구(2015.08.04.~2017.09.30.)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